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062-01

#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지원체제 개편 방안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최혜선(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성혜영(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책임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육 아 정 책 연 구 소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지원 체제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머리말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종일제 운영 취지에 따라 12시간을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고, 또한 보육료 지원도 12시간 운영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영유아보육법 상에도 보육시설 운영시간은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 기준에 대한 조항은 없다.

그런데 최근 들어 수요자들의 이용시간 다양화 요구와 합리적인 보육료 책정 및 지원 체계화 등을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시간과 이용시간은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운영자 중심의 획일적인 제도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도 반 운영을 준비할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부 보육시설에서는 임의로 반일반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보육료 전액 지원이 확대되면서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이른 귀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 보육시설 이용시간 분포를 보면 12시간을 이용하는 아동은 소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 관련 공무원 및 학계의 의견을 파악하고,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보육시설 이용 부모 각각의 입장과 의견을 분석하여, 보육시설 운영시간과 이용시간을 구분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용시간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 시행 및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부족하나마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보육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보육 비용지원 체제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행정적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학계와 보육전문가 여러분, 보육시설 원장과 보육교사, 그리고 보고서를 읽고 좋은 의견을 주신 검토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2010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 목 차

요 약 .....	1
<b>I. 서론 .....</b>	<b>1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2. 연구내용 .....	12
3. 연구방법 .....	13
4. 국내 관련 연구동향 .....	17
5. 용어의 정의 .....	21
<b>II. 영유아 보육시간 관련 현황 및 요구 .....</b>	<b>22</b>
1. 보육시설 운영시간과 운영일반 .....	22
2. 보육시설 이용시간과 보육료 .....	43
3. 보육시설 이용시간 실태와 요구 .....	50
4. 전자바우처 지원 방식 .....	64
5. 정책시사점 .....	67
<b>III. 영유아 보육시간 정책 방안 탐색 .....</b>	<b>69</b>
1. 보육시설 운영시간 .....	69
2. 종일제 보육 이용 기준시간 .....	72
3. 단축형 보육 이용 기준시간 .....	82
4. 보육료 지원 .....	95
5. 교사의 근무와 배치 .....	107
6. 요약 및 시사점 .....	114
<b>IV. 외국 사례 .....</b>	<b>116</b>
1. 스웨덴 .....	116
2. 호주 .....	134
3. 정책시사점 .....	145

V. 보육시간에 따른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방안 .....	147
1. 정책의 당위성과 기본원칙 .....	147
2. 보육시설 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	150
3. 보육료 기준 .....	152
4. 일과 운영 및 프로그램 .....	163
5. 보육료 지원체계개편 모형 및 비용 추정 .....	166
6. 보육료 지원마우처 적용 방안 .....	178
VI. 맺는 말 .....	186
참고문헌 .....	189
부    록 .....	193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	193



## 표 목 차

〈표 I-3-1〉	심층면접 내용 .....	14
〈표 I-3-2〉	심층면접 시설장 특성 .....	15
〈표 I-3-3〉	심층면접 교사 특성 .....	15
〈표 I-3-4〉	심층면접 대상자의 제 특성 .....	16
〈표 II-1-1〉	평일 아동에 적용하는 보육시간 유형 .....	23
〈표 II-1-2〉	평일 아동에 적용하는 보육시간 유형별 아동 분포 .....	27
〈표 II-1-3〉	보육시설 특성별 평일 단축형 아동 분포 .....	27
〈표 II-1-4〉	단축형 I 미적용 이유 .....	28
〈표 II-1-5〉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	33
〈표 II-1-6〉	연령혼합 학급 수 .....	37
〈표 II-1-7〉	특별활동 운영 시간대 .....	40
〈표 II-1-8〉	특별활동 미참여 영유아의 활동 .....	41
〈표 II-2-1〉	종일제와 2-3시 귀가 아동간 보육료 차등을 두는 시설 비율: 2008 ..	44
〈표 II-2-2〉	이용 시간에 따른 보육료 징수 여부: 2009 .....	45
〈표 II-2-3〉	종일제와 4-5시 귀가 아동간 보육료에 차등을 두는 시설 비율 .....	45
〈표 II-2-4〉	연령별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료 .....	46
〈표 II-2-5〉	종일제와 2-3시 귀가 아동간 보육료 차액 .....	47
〈표 II-2-6〉	종일제와 4-5시 귀가 아동간 보육료 차액 .....	47
〈표 II-2-7〉	연령별 월평균 보육료 .....	48
〈표 II-3-1〉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	50
〈표 II-3-2〉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	51
〈표 II-3-3〉	제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시간 .....	52
〈표 II-3-4〉	아동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시간 .....	53
〈표 II-3-5〉	제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시간 .....	54
〈표 II-3-6〉	보육시설 운영주체별 이용시간 .....	55
〈표 II-3-7〉	기관 이용 영유아의 기관별 이용시간 초과 빈도 .....	55
〈표 II-3-8〉	평일 보육시설 이용시간(중복응답) .....	56
〈표 II-3-9〉	가구 특성별 보육시간 요구 .....	57
〈표 II-3-10〉	아동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시간 관련 의견 .....	59

〈표 II-3-11〉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희망 등원시각	60
〈표 II-3-12〉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희망 하원시각	61
〈표 II-3-13〉	보육시설 오전 운영시간을 공식화할 경우 이용 의향	63
〈표 II-4-1〉	2009년 12월 종일(야간·24시간 포함)보육료 결제현황	67
〈표 II-4-2〉	2009년 12월 이용시간별 시간연장보육료 결제현황	67
〈표 III-1-1〉	운영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71
〈표 III-1-2〉	적절한 운영 시작 시각에 대한 의견	71
〈표 III-1-3〉	적절한 운영 종료 시각에 대한 의견	72
〈표 III-1-4〉	적절한 총 운영시간에 대한 의견	72
〈표 III-2-1〉	이용 기준시간 명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74
〈표 III-2-2〉	종일제 보육 시작 시각에 대한 의견	76
〈표 III-2-3〉	종일제 보육 종료 시각에 대한 의견	76
〈표 III-2-4〉	종일제 총 보육시간에 대한 의견	76
〈표 III-2-5〉	야간연장보육 시작 및 종료 시각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77
〈표 III-2-6〉	기준 시간 이외 보육비용 부담의 대상 의견	80
〈표 III-3-1〉	단축형 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84
〈표 III-3-2〉	단축형 보육 시작시각에 대한 의견	86
〈표 III-3-3〉	단축형 보육 종료시각에 대한 의견	87
〈표 III-3-4〉	단축형 총 보육시간에 대한 의견	87
〈표 III-3-5〉	단축형 종료 기준 활동에 대한 의견	87
〈표 III-3-6〉	단축형과 종일제 보육 이동 반 구성 의견	90
〈표 III-3-7〉	단축형 보육과정(단축형/종일제 오후)	91
〈표 III-4-1〉	취업여부에 따라 보육료 지원 차등화 적절성	98
〈표 III-4-2〉	취업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에 대한 의견	101
〈표 III-4-3〉	영유아 구분한 차등 지원에 대한 의견	102
〈표 III-4-4〉	전체 시간제 바우처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106
〈표 III-4-5〉	기준 이외 추가 보육시간 바우처 적용 적절성에 대한 의견	107
〈표 III-4-6〉	보육교사 적정 출근 시간에 대한 의견	109
〈표 III-4-7〉	보육교사 적정 퇴근 시간에 대한 의견	109
〈표 III-4-8〉	보육교사 적정 근무시간에 대한 의견	110
〈표 III-4-9〉	보육교사 적정 보육시간에 대한 의견	110

〈표 III-4-10〉	단시간 근무 교사 배치에 대한 의견 .....	112
〈표 III-4-11〉	단축형 교사대 아동 비율에 대한 의견 .....	113
〈표 IV-1-1〉	연령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	118
〈표 IV-1-2〉	스웨덴 보육 비용 .....	122
〈표 IV-1-3〉	월 보육 비용 상한선 .....	123
〈표 IV-1-4〉	2004년도 나카 지자체의 부모부담 월보육료 .....	124
〈표 IV-1-5〉	예테보리 지자체 피르스콜라 일과시간표 예 .....	128
〈표 IV-1-6〉	교사 유형별 양성과정 .....	132
〈표 IV-2-1〉	0~12세 영유아 연령별 보육서비스 이용률(2008) .....	136
〈표 IV-2-2〉	0~12세 주당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2008) .....	136
〈표 IV-2-3〉	0~12세 주당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2008) .....	137
〈표 IV-2-4〉	주당 보육시설 보육료 백분율 분포: 2004 .....	138
〈표 IV-2-5〉	보육지원금 수입 한도액 및 지원금 최고액 .....	140
〈표 IV-2-6〉	호주의 보육지원금 기본식 .....	140
〈표 IV-2-7〉	호주의 보육지원금(CCB) 요건 .....	141
〈표 IV-2-8〉	교사대 아동비율 .....	144
〈표 IV-2-9〉	혼합연령 시 교사 비율 .....	144
〈표 V-2-1〉	종일제 보육 지원 기준(안) .....	151
〈표 V-3-1〉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아동 비율 추정(2010) .....	153
〈표 V-3-2〉	비용 산출에 적용한 보육시설 이용시간 유형별 교사배치와 교사 1인당 아동수 .....	155
〈표 V-3-3〉	종일제 보육비용(2010) .....	158
〈표 V-3-4〉	단축형 보육비용(2010) .....	160
〈표 V-3-5〉	종일제 대비 단축형 보육비용 차이(2010) .....	160
〈표 V-3-6〉	12시간 종일제 보육비용(2008) .....	162
〈표 V-3-7〉	종일제 대비 12시간 종일제 보육비용 차이(2010) .....	163
〈표 V-4-1〉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 일과 운영 사례(만4세) .....	164
〈표 V-4-2〉	이용시간 유형별 운영 .....	166
〈표 V-5-1〉	종일제 대비 단축형 보육지원금 월 절감 효과(2010) .....	169
〈표 V-5-2〉	종일제 대비 단축형 보육비용 차이(2010) .....	169
〈표 V-5-3〉	종일제 대비 12시간 종일제 보육비용 차이(2010) .....	170

<표 V-5-4> 종일제 대비 12시간 종일제 보육지원금 월 추가 (2010) .....	170
<표 V-5-5> 종일제 대비 단축형 보육지원금 추가 1(2010) .....	174
<표 V-5-6> 단축형 이후 6시까지 시간 연장시 추가 보육료 기준 .....	177
<표 V-5-7> 단축형 이후 연장시 일일 추가 보육료(인건비 포함) .....	177

## 그 립 목 차

[그림 II-3-1] 연령별 영유아의 하원시각 유형 .....	51
[그림 II-3-2] 보육시설 평일 이용시간(2004년, 2009년 비교) .....	57
[그림 II-3-3] 가족유형별 보육시간대 요구 .....	58
[그림 II-3-4] 취업모 영유아의 현재 및 희망 등원시각 .....	61
[그림 II-3-5] 미취업모의 영유아의 현재 및 희망 등원시각 .....	62
[그림 II-3-6] 취업모용 영유아의 현재 및 희망 하원시각 .....	62
[그림 II-3-7] 미취업모의 영유아의 현재 및 희망 하원시각 .....	63
[그림 II-4-1] 종일보육료 이용현황 확정 예 .....	65
[그림 II-4-2] 시간연장보육료 이용현황 확정 예 .....	66
[그림 II-4-3] 휴일보육료 이용현황 확정 예 .....	66
[그림 IV-2-1] 인가보육시설 주당 보육료(2009) .....	138
[그림 V-6-1] 서비스등록 화면 .....	180
[그림 V-6-2] 서비스별 단가 입력 화면 .....	181
[그림 V-6-3] 아동관리 변경 .....	182
[그림 V-6-4] 이용현황 관리 .....	183

# 요 약

## 1. 서론

### 가. 연구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보육시설 이용시간 유형을 다양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이용하는 서비스 시간에 부합되도록 책정하며, 소요 비용을 부모와 정부가 적정하게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 구체적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육시설 운영시간, 아동 이용시간 유형 및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료를 파악하였음.
  - 보육시설 운영시간, 아동 이용시간 유형, 이에 따른 교사 배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시설장, 교사, 부모 및 전문가의 의견을 파악하였음.
  - 외국의 이용 기본시간 설정 사례 및 기준, 지원 시간 차별화를 위한 보호자의 조건, 반 아동 연령구성, 교사 배치 기준, 보육시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파악하였음.
  - 보육시설 운영시간, 이용시간 원칙을 설정하고, 이용시간별 적정 보육료를 추정하며 이에 대한 정부와 부모의 비용 부담 방안을 마련하고, 소요재정을 추정하였음.
  - 이용시간 및 비용 차이를 아이사랑카드 바우처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제도 정착방안을 제안하였음.

### 나. 연구방법

- 선행연구, 문헌 및 해외자료를 고찰하였음.
-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 제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시간 실태 및 요구를 분석하였고, 동 보육시설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보육시설 유형, 지역 등 특성별 보육시설 운영시간 실태 및 운영자 요구를 분석

하였음.

- 시설장 21명, 보육교사 11명, 부모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 보육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운영시간, 보육시간, 보육교사 고용 및 근무 형태, 반편성, 프로그램, 보육료 책정, 비용 지원 단위 및 방식 등 관련 현황과 문제,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음.

## 2. 영유아 보육시간 관련 현황 및 시사점

□ 영유아의 보편적인 보육 이용 실태와 요구도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용시간의 다양화 추진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음.

- 첫째,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 없어 운영시간과 이용시간을 동일시하는 혼선이 존재하므로, 이용시간의 다양화 및 이에 대한 개념화가 요구됨.
- 둘째, 수요자의 이용시간 다양화와 함께 보육 종사자의 법정근로시간의 적용도 이행되어야 하며, 8시간 근무 준수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연장근무 수당, 중장기적으로 종일제 또는 단시간 근로 교사제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직접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보육시간과 일과 준비 및 사무를 위한 업무시간,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으로 구분하여 각 시간대의 확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이용시간에 의한 보육 서비스 유형이 구체화됨에 따라 반 구성과 표준보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공용 지침의 마련이 요구됨.
  - 아동의 다양한 귀가시간에 따라 오후 시간 연령통합의 반 구성과 특별활동 운영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관성 있는 기준 제시가 요망됨.
- 넷째, 차등 보육료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요구되며, 단축형 및 종일제 유형에서 부모와 정부의 비용 분담 기준이 필요함.
  - 2009년 보육시설 실태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 수납에 차등을 두는 시설은 전체 18.7%이고, 차등 액수는 보육시설과 아동 연령에 따라 편차가 있음.

- 다섯째, 12시간 운영방침에 따른 종일 보육의 대세적 흐름 속에서도 단축형 등 다양한 이용시간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와 선호도는 존재하므로, 아동의 연령과 모의 취업 등의 요건에 따른 수요자에의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됨.
- 200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오후 2시경에 귀가하는 단축형 적용이 보편적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장시간 보육은 일면 종일제 중심의 보육정책과 비용지원체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실제 보육이용 시간, 즉 등원 및 하원시간은 크게 오후 4시 이전 36.5%, 오후 4~6시 45.2%, 오후 6시 이후 18.4%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 대체로 미취업모 보다는 취업모의 경우가, 양부모 가정 보다는 한부모 가정 이 오후 6시 이후의 늦은 하원시간에 대한 선호도와 이용도가 높음.
- 영아의 경우 10~11시간 이상의 종일 보육의 비율이 유아보다 높게 나타나는 한편, 단시간 이용자도 많은 이용시간 양극화가 나타남.

### 3. 영유아 보육시간 정책 방안 탐색

-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부모 심층면접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살펴본 영유아 보육시간에 대한 정책 방안을 탐색하였음.
- 보육시설 운영시간에 대해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부모는 취업모 중심 종일제 보육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종일 운영 원칙에 공감하며, 전문가는 이용시간과 맞추려는 경향이 있음.
- 종일제 보육 이용시간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부모 전문가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5~6시를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으나,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았음.
  - 종일제 기준 시간을 현재보다 줄여서 명시하는 것은 운영의 수월성,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지역별 탄력적 운영 등의 장점이 있으나, 실제 적용의 어려움, 부모 반발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음.
  - 부모는 종일제 기준시간이 짧아지는 것에 대해 반대 및 비용 추가를 우려함.
- 종일제를 보육시설 이용 기본으로 하되, 종일제 보다 짧은 단축형을 둘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음.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였음.

- 단축형 하원시간은, 특히 전문가는, 오후 2시를 선호하였고, 일과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낮잠 이전 귀가를 선호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현재의 종일제 비용이 단축형 비용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운영상 편의를 위해 단축형만 운영하려는 보육시설 등장, 일찍 하원시 오전 특별활동 실시, 보육시설 수익구조상 운영의 어려움, 보육시설 시간 이원화에 따른 관리의 번거로움 등을 우려하였음.
- 단축형을 둘 경우 시설장과 교사는 단축형과 종일제를 따로 반구성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나, 부모와 전문가는 다양한 입장을 보였음.
- 단축형도 보육시설 특별활동 실시 및 표준보육과정 탄력적 운영 의견이 많았음.
  - 종일제 오후반의 경우 특별활동을 실시하여야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일부 부모의 경우 특별활동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보육료 지원은 모의 취업 등을 반영하여 시간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나, 취업여부를 가리는 기준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우려하였음.
  - 모 취업여부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도 제시됨.
- 전체 시간제 바우처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의 운영이나 아동관리, 우리나라의 정서 측면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하였으며, 기본 이용시간 이외 전후 시간 바우처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추진되면 적절하지만 아직은 시행하기 이르다는 의견임.
- 교사 근무시간은 보육시설 운영시간과 상관없이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함.
  -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단시간 근무교사와 같은 보조교사 배치에 대해 시설장, 교사, 전문가 모두 긍정적이거나, 단시간 교사의 책임감 부재, 낮은 업무 분담 및 기여도 등에 대한 문제도 일부 제기되었음.

#### 4. 외국 사례

- 외국 사례로 스웨덴과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았음. 두 나라 모두 다양한 서비스, 합리적 이용시간 및 지원체계를 갖춘.



- 스웨덴은 실제 이용시간대는 반일제에서 시간연장, 야간보육까지 부모의 근로 시간에 맞춰 다양하게 분포하고, 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취업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당 15시간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그 이후는 취업모 등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주당 40시간까지 지원함.
- 호주 역시 보육서비스의 유형을 매우 다양하고, 부모 취업 등 요건에 따라 주당 24시간까지 기본으로 지원하고, 이외는 가정 사정을 고려하여 50시간까지 지원함.
- 다양한 서비스, 합리적 이용시간 및 지원체계에 따라 비용, 반 배치, 프로그램이나 교사 배치 등이 매우 유연하게 적용됨.

## 5. 보육시간 모형 및 적용방안

### 가. 기본원칙

-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시간과 이용시간 유형별로 보육료를 차등화하는 정책대안 마련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음.
  - 첫째, 부모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 다양성을 보장함.
  - 둘째,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편 발생을 최소화함.
  - 셋째, 보육시설의 운영상 사정을 반영하여 탄력성 보장이 필요함.
  - 넷째, 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보육시설의 운영 부담을 반영함.
  - 다섯째, 부모들에게 보육의 원칙적인 이용시간을 알려주고 그 이상은 연장보육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정부 재정 소요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부모와 국가의 부담 능력을 고려한 정책적 선택을 필요로 함.

### 나. 운영 및 이용시간 기준 설정

-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보육시설에 인도되는 시간부터 다시 부모에 인도되는 시간까지로 명시하고, 기준 이용시간을 종일제와 단축형으로 구분하여 명시함.

- 종일제 보육은 영유아보육법으로 오전 7:30부터 오후 7:30분까지 이용을 의미함.
  - 모의 취업 이외에도 구직, 직업훈련 등 취업 관련 사유와 한부모 가정, 보호자의 질병, 노인 등 간호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 가정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자녀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의 이용을 원칙으로 함.
  - 시설장이나 교사 등의 의견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등 8시간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종일제 보육시간 12시간 기준이 축소 조정되는 데 대한 우려를 반영함.
- 단축형 보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으로 명시하고, 일하지 않는 부모 대상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다. 보육료 기준

### 1) 유형

- 보육료는 평균 오후 6시 정도의 귀가 기준의 8시간 종일제를 중심으로 3시간 정도 일찍 오후 3시 이전에 귀가하는 단축형과 1시간 30분 정도가 늘어나서 7시 30분까지 보육하는 12시간 종일제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눔.
  - 모의 취업 등 조건을 기준으로 종일제 이용 자격 기준을 부여함.
  - 오후 6시 이후 보육을 연장보육에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함.
- 대상아동 규모는 아동의 하원시간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 12시간 종일제 이용아동 비율은 18.4%로 추정하였는데, 특히 0세아는 41.3%가 12시간제 보육으로 조사되었음.

### 2) 교사 배치

- 교사 배치는 교사대 아동 비율이 정하는 교사의 기본 인원을 정규교사로 하고, 근무시간은 평일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기본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함.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봄.
- 6시 이후 귀가하는 아동 보육을 위해서는 탄력근무, 연장근무 수당, 인력의 추가

배치를 고려함.

- 중장기적으로는 정규교사 추가 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함. 추가교사 배치는 우선 6시 이후에 적용하고 추후에 단축형 보육 이후 보육에 적용함.

□ 교사대 아동 비율은 보육시설의 경우 오후 3시 이전에 귀가하는 보육유형과 기본적인 8시간형 종일제 유형의 교사대 아동 비율은 현재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오후에는 만3세 유아가 만4, 5세 유아와의 혼합반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하여 1:20으로 조정함.

### 3) 비용

□ 설정한 가정에 따라 연령별로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산출함. 현실반영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근함.

- 8시간 종일제 아동 1인당 보육비용 추정치는 50인 시설은 0세아 755,000원, 만1세아 537,700원, 만2세아 436,400원, 만3세아 318,200원, 만4세 이상아 306,200원임.
- 시간단축형 보육비용은 8시간 종일제 보육단가에서 오후 간식비와 관리운영비 일부를 제외하면 다소 낮아지는데, 최대치는 만4세 이상아로 22,200원 정도임.
- 12시간 종일제 보육비용은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보육료는 50인 시설을 기준으로 보면 8시간제 보육료에 비하여 0세아는 12만8천원, 1세아는 9만2천원, 2세아는 6만3천원, 유아는 약 5만원이 추가되고, 단시간 교사를 둘 경우에는 0세아 31만원에서 4세이상아 7만8천원 정도까지 증가함.

### 라. 일과 운영 및 프로그램

□ 기본 종일제와 단축형, 12시간 종일제는 각각 하원시간에 따라 오후 6시, 오후 3시, 오후 7시 30분까지의 일과로 구성되며, 모두 표준보육과정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짐.

- 종일제는 현재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나, 부모와 영유아의 요구를 반영하여 단축형 이용 영유아도 연령에 따라 특별활동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종일제는 오후 6시까지로 구성됨. 단축형 이용 영유아 하원 후의 오후 프로그램은 소집단이나 개별활동 중심의 심화·확장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1~2개의 특

별활동을 할 수 있음. 단축형 이용 영유아 하원 후 시설에 따라 연령혼합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령혼합 프로그램을 계획·실시하여야 함.

- 단축형은 기본 종일제의 오후 간식 전까지의 오후 3시까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단축형은 유아에 한하여 1개의 특별활동으로 제한함.
- 12시간 종일제는 오후 6까지의 기본 종일제 이용 영유아 하원 후, 저녁식사와 통합보육이 추가로 구성됨.

## 마.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모형 및 비용 추정

### 1) 제1안

- 원칙적으로 감축형과 7시 30분 보육 소요비용 증감분을 보육료 지원 단가에 적용하여 소득계층별 지원 비율을 적용함.
  - 6시 이후 연장보육 적용도 가능
- 비용은 감축 대비 증가 비용 규모가 작아서 추가 소요예산 없음.
  - 단축형의 경우, 다소 낮아진 보육료를 지원단가에 반영하면 감축되는 비용은 월 51억 9639만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623억원이 됨.
  - 12시간 종일제는 저녁식사비와 관리운영비 증가분만 보육료 지원단가에 반영하여 정부와 부모가 부담하면, 2009년 기준으로 추가비용은 35억 6810억원으로 추정되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430억원임.
- 이용자가 취업모이므로 보육료 미지원 부모를 고려하여 6시 이후 12시간 종일제 추가 비용을 모두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 경우 부담액은 월 44억원, 연 528억원임.
- 교사 처우 및 보육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 보육시설도 저녁식사 등 운영 부담이 있음.

### 2) 제2안

- 교사 연장근무 수당 또는 단시간 교사 배치를 고려하면 최소 월 100억원 이상의 소요예산의 증가요인이 발생함.

- 단축형의 경우, 다소 낮아진 보육료를 지원단가에 반영하면 감축되는 비용은 월 51억 9639만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623억원이 됨.
- 12시간 종일제는 저녁식사비와 관리운영비 증가분만 보육료 지원단가에 반영하고, 이외 인건비 증가분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처리함.
  - 1차로 교사대 아동수가 5명 정도임을 고려하여 만1세아 보육료 시간당 단가, 22일간 1.5시간 연장보육, 근로기준법 상 1.5배를 적용하면 추가 소요비용은 월 137억, 연간 1643억원임. 2차로 단시간 교사 배치시 전체 보육시설 70%에 단시간 교사 1인 배정시 월 215억 4200만원, 연간 2585억원이 소요됨.
  - 저녁식사와 운영관리비 증가분은 제1안과 동일하게 보육료 지원 상태에 따라 정부와 부모가 분담함. 추가비용은 35억 6810억원으로 추정되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430억원임.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교사 채우는 개선되며, 보육시설 재정운영도 개선됨.

### 3) 제3안

- 단축형 이후 시간제 바우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오후 간식 비용, 저녁식사 비용, 시간당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산정하여 오후 3시 이후 시간 단위별로 비용을 적용함.
  - 인건비 반영 여부 및 조정이 필요함.
- 미취업모는 추가 이용시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취업모는 시간 단위별로 다른 단가를 보육료 차등 지원 기준으로 적용함.

### 바.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의 바우처 적용

-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바우처 시스템도 수정되어야 함.
- 1안 및 2안은 기본 사항은 동일하고 단지 지원단가에서만 차이가 있음.
  - 보육통합시스템에서 단축형 이용아동과 종일제, 12시간 종일제 이용아동을 구분하여, 서비스목록에 이를 등록하고 단가를 입력함. 두자녀이상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등도 같은 방식임.
  - 아동관리 화면에서 아동유형을 구분하고 저장하여야 함.

- 종일제나 12시간 종일제 대상이 되는 아동의 기준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항목을 개발하고 어린이집 원장이나 시·군·구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함.

□ 제3안은 서비스의 변경은 제1안 및 제2안과 동일함.

- 단지 현재 오후 7시 30분 이후부터 자정까지의 시간연장 서비스와 구별되게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시간제 서비스를 별도 서비스로 등록하고 지원단가도 별도 입력하여야 함.

□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아동별로 이용서비스를 구분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몇 가지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 있음.

- 아동관리 변경의 권한을 어린이집 원장 또는 시·군·구 담당공무원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결정이 요구됨.
- 월 중 서비스 변경에 따른 보육료 산정 방식을 서비스별 이용일자를 근거로 일할 계산하는 방법, 현행 보육료 지원은 출석일수에 따른 구간별 지원, 최종 이용한 서비스로 이용현황을 확정하게 하여 보육료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야 함.
  -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택할 경우 시간연장 비용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종일제 혜택을 받고 있던 아동 모의 취업상태에 변동이 있더라도 부모가 고지하여 주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함.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시설 운영시간은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시설 이용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한 보육료 산정이나 보육료 지원 여부 및 수준 결정요인은 기본적으로 가구 소득 중심이고, 이외 자녀수 및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부가적으로 반영하며,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보육료 지원 기준은 소득 수준별로 3단계로 차등 지원하며, 두 자녀 이상 자녀 가구는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소득인정액 산정시 어머니가 취업모인 경우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하는 등 소득수준, 아동수, 모의 취업을 반영하지만, 이용시간별로 차등을 두지는 않고, 모두 12시간 종일제 이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2009년 조사 결과 실제 등원부터 하원까지의 시간은 평균 7시간 25분 정도로 파악되어 현실과 괴리를 보이며, 보육시설 운영자, 이용자 및 교사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보육시설은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므로, 아동도 종일제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모의 취업을 전제로 한 조치이나 보육시설 이용의 보편화로 반일제, 시간제, 시간연장 등 다양한 보육 수요가 있으나 시설운영 상 이러한 수요자 요구에 만족을 주는 탄력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유치원과 비교하여 매우 경직된 운영으로 외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치원은 전통적으로 반일제에서 연장제, 종일제로 다양화되면서 지원단가는 반일제 기준이고 이후 이용은 부모 부담이 계속 추가되는 형태이다.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종일제 보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동도 일부 장시간 보육 시설에 머물게 된다. 상당수의 아동은 유치원 연장제 형태로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형태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일찍 귀가하거나 필요 없이 장시간 보육 시설에 머물거나 모두 보육재정 낭비요인이 된다.

보육교사도 12시간 보육을 담당하여야 하므로 법으로 정한 근로기준의 준수는 물론 재교육이나 보육활동 준비를 위한 시간도 확보하기 어렵다.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의 한계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과 연구 시간의 비율은 6:4가 적절하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이 모의 취업 등 보육 요구도에 따라 보육비용 지원 시간에 차이를 두며, 비용 지불이나 정부 지원 단위가 시간인 경우 많다. 영국은 전체 3, 4세 아동이 주당 12.5시간, 연 38주간 무상 보육·교육을 실시한다. 스웨덴도 미취업모는 주당 15시간, 취업모 등 가정에서의 보호가 부적절한 경우는 주당 40시간까지를 교육·보육비용을 지원한다. 호주 미취업모는 주당 24시간, 취업모 등은 주당 50시간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부모비용 부담 및 정부 지원 단위는 시간이다. 캐나다 퀘벡주는 저소득층에 주당 23시간까지 무상보육을 제공한다. 취업모 중심으로 입소하는 일본은 기본시간 전후 추가 보육시간은 시간단위로 비용 부담하고 지원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방식을 소득수준 중심의 12시간 단일 기준에서 탈피하여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 수요자 중심이 보육서비스 이용 차등 요인을 반영,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이용과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보육시간에 대한 제도와 수요자 요구와의 괴리를 해소하고 획일화된 보육비용 지원구조 개선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수요자 선택권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수요자 중심이 보육서비스 이용 차등 요인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이용과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의하여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취업여부, 형제자매 구성 특성, 장애아 보호 가정, 한 부모 등 취약계층 등 가구 특성 반영하여 제 특성별 보육 및 교육 이용시간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한다.

둘째, 외국의 사례를 검토한다. 비용지원의 기본시간 설정 사례 및 기준, 지원 시간 차별화를 위한 보호자의 조건, 반 아동 연령구성, 교사 배치 기준, 보육시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다.

셋째, 이용시간 다양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운영시간, 이용시간 유형 및 기준, 반 편성, 교사 배치 기준, 단시간 교사 문제,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시설장, 교사, 부모 및 전문가의 의견을 파악한다.



넷째, 보육시설 운영 및 이용시간 유형을 설정하고, 각 보육비용을 추정하며, 비용에 대한 정부와 부모의 비용 분담 방안을 제시하고,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한다. 아울러 각 대안별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정책 추진시 문제 및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보육시설 이용비용 지원 방식에 따라 바우처 구성 방식을 제시한다.

### 3. 연구방법

#### 가. 선행연구 및 문헌 및 해외자료 고찰

보육·유아교육 관련된 국내 문헌 및 기존 연구 자료를 수집,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인터넷으로 해외 문헌을 검색하여 호주와 스웨덴 보육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 나. 2009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및 시설조사 자료 분석

2009년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 계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시간 실태 및 요구를 분석하였고, 시설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보육시설 유형, 지역 등 특성별 보육시설 운영시간 실태 및 운영자 요구를 분석하였다.

#### 다. 심층 면접조사

시설장 21명, 보육교사 11명, 부모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내용은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운영시간, 보육시간, 보육교사 고용 및 근무 형태, 반편성, 프로그램, 보육료 책정, 비용 지원 단위 및 방식 등 관련 현황과 문제, 정책방향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1-3-1〉 심층면접 내용

구분	질문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시간별로 운영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i> <li>- 구분하지 말고 종일제로만 운영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li> <li>-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li> <li>- 운영시간을 구분한다면, 어떻게 시간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오후반(12-4시, 2시-6시) 별도 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i> <li>- 이용시간별 운영시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문제점)은 무엇입니까?</li> </ul>
반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의 반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혼합연령반 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i> <li>- 혼합연령반 구성에 찬성하는,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li> <li>- 오전, 오후 등 반구성시, 교사대 아동 비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li> <li>- 혼합연령반 구성시, 교사대 아동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i> </ul>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 기본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기본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운영시간에 따라 구분할 경우, 반별(반일제, 종일제 등) 교사 근무시간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li> <li>- 혼합연령반 구성시, 담당교사는 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연장제의 경우, 담당교사는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반구성과 연계)</li> <li>- 연장제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초과근무 대신 교사 별도 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i> <li>- 반일제 및 연장제(초과근무)를 위한 단시간 근로 교사를 양성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li> </ul>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시간별 운영시,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종일제 오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혼합연령반 구성시,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연장제의 경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오후반 구성시,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li> </ul>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시간별 운영이 공식화될 경우, 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li> </ul>

면접 대상 시설장, 교사 및 부모의 제 특성은 <표 1-3-2>, <표 1-3-3>, <표 1-3-4>와 같다.

〈표 1-3-2〉 심층면접 시설장 특성

구분	시설유형	지역	시설장 특성		시설규모
			연령	경력	
1	국·공립	서울	46세	15년	104명
2	민간	서울	49세	16년	97명
3	가정	서울	54세	19년	17명
4	민간	서울	56세	5년	72명
5	가정	서울	43세	7년	22명
6	민간	서울	55세	6년	79명
7	민간	경기	52세	16년	99명
8	민간	경기	53세	11년	56명
9	민간	경기	41세	10년	60명
10	가정	강원	50세	15년	18명
11	민간	강원	47세	18년	89명
12	가정	강원	50세	14년	20명
13	민간	강원	48세	3년	62명
14	법인	충북	60세	20년	165명
15	법인	충북	59세	15년	150명
16	민간	충북	43세	9년	120명
17	민간	부산	51세	13년	57명
18	민간	부산	44세	8년	146명
19	가정	부산	49세	11년	18명
20	법인	전남	48세	13년	118명
21	민간	전남	47세	9년	74명

〈표 1-3-3〉 심층면접 교사 특성

구분	시설 유형	지역	연령	학력	경력	시설규모	담당하는 반
1	민간	서울	43세	대졸	8년	5반 56명	3, 4, 5세 통합반
2	민간	경기	32세	대졸	6년	6반 81명	만3세반
3	가정	강원	32세	대졸	1년2개월	3반 13명	만2세반
4	민간	경기	49세	대졸	3년	5반 55명	만1세 반
5	국·공립	부산	35세	대졸	15년	9반 118명	만4세반
6	법인	충북	47세	대졸	17년	10반 160명	만2세 반
7	법인	충북	36세	대졸	13년	8반 165명	1, 2세 혼합반
8	민간	부산	31세	대학원 졸	9년	6반 146명	만4세반
9	가정	부산	29세	대학원 졸	5년	3반 18명	1, 2세 혼합반
10	법인	전남	41세	대졸	20년	10반 123명	만4세반
11	민간	전남	32세	대졸	10년	12반 74명	만5세반

〈표 1-3-4〉 심층면접 대상자의 제 특성

구분	지역	학력	직업	자녀수	시설이용 자녀연령	시설 유형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내외 특별활동
1	서울	초대졸	승무원	2명	5세 2세	민간	-	문화센터, 태권도, 인라인
2	서울	대졸	미취업	2명	5세 2세	민간	-	특별활동 2과목, 공부방 4
3	경기	초대졸	대체교사 관리자	1명	2세	민간	100%	특별활동 1과목
4	경기	대졸	자영업	1명	2세	민간	100%	특별활동 1과목 학습지 1개
5	경기	고졸	미취업	3명	3세	민간	100%	특별활동 2과목
6	경기	고졸	미취업	2명	2세 4세	민간	100%	학습지 5개
7	강원	대졸	기획사	2명	1세 3세	국·공립	-	특별활동 2과목 학원 1과목,
8	강원	대졸	미취업	3명	1세 3세 4세	민간	100%	문화센터, 학원 1과목
9	충북	대졸	미취업	2명	5세	법인	100%	특별활동 5과목, 합기도, 피아노, 학습지
10	충북	대졸	미취업	1명	5살	법인	100%	특별활동 5과목 문화센터
11	부산	대졸	자영업 무급종사자	2명	2세	가정	100%	방과후 프로그램, 특별활동 2과목
12	부산	대학원졸	미취업	3명	5세 2세	민간	-	특별활동 3과목 바우처, 학원
13	전남	고졸	미취업	3명	2세	법인	100%	특별활동 1과목, 학습지 5개
14	전남	고졸	미취업	1명	4세	민간	30%	특별활동 2과목, 학습지 1개

주: 다자녀인 경우 특별활동은 연령이 많은 아동 기준

## 라. 델파이 조사

보육료 지원 시간 단위 및 방식 관련 정책방안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계, 보육정보센터, 공무원 등 보육 전문가 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의뢰하여 78명이 응답하였다. 델파이조사 내용은 심층 면접조사 내용과 유사하게 운영시간, 보육시간, 보육교사 고용 및 근무 형태, 반편성, 프로그램, 보육료 책정, 비용 지원

단위 및 방식 등으로 구성하였다(부록 참조).

#### 마. 보육비용 추정 시뮬레이션

보육시설 이용시간별 적정 보육비용을 추정하였다. 기존의 보육료 산출 연구 결과를 기초로 보육비용은 보육교사 고용조건, 반당 보육아동 수, 기타 인력의 배치 등 여러 요인을 조건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 바. 자문회의 운영 및 전문가 회의

중앙 및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관련학과 교수,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시설장 등과의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 방향 설정과 정책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타진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 4. 국내 관련 연구동향

보육시설 운영 및 이용시간 관련 국내연구는 이러한 주제를 별도로 연구한 결과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이 일반적 보육시설 이용실태의 일부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대부분 정책연구기관에서 수행되었고 그 수도 많지 않다. 이를 보육시설 운영 및 이용시간 파악, 이용시간과 비용, 정책대안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 가. 운영 및 이용 시간 파악

2008년 육아정책개발센터 조사결과(서문희·박수연, 2008)를 보면 개원시각과 폐원 시각으로 산출한 보육시설 평일 하루 운영시간은 평균 11시간 41분으로 나타났다. 분포는 9시간부터 13시간 이상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데, 민간보육시설보다는 가정보육시설 운영시간이 다소 길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소재 보육시설이 읍·면 지역 보육시설에 비하여 운영시간이 약간 길었는데, 사후검증 결과 민간시설은 읍·면과 대도시의 차이가 유의하고, 가정시설에서는 읍·면과 중소도시의 운영시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하루 중 아동에게 적용하는 보육시

1) 구체적인 내용은 제II장에서 상세하게 다루고자 함.

간 유형을 6시 이후에 귀가하는 종일제 이외에 오후 2~3시 정도에 귀가하는 유형인 단축형 I 과 오후 4~5시 경에 귀가하는 단축형 II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된 보육시설의 아동귀가 시간 유형을 보면 21.0%의 보육시설은 기본적인 종일제로만 통일하여 모든 아동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가장 많은 43.2%가 종일제와 오후 4~5시 경에 귀가하는 유형을, 그리고 13.9%는 종일제와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유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8%의 보육시설은 이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관한 전국 대표성이 있는 자료는 2002년, 2004년 및 2009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서문희 외, 각연도) 자료와 2007년도 조사자료(서문희·최혜선, 2007) 등 이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모의 취업여부, 아동 연령에 따라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에 차이가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 2002년도와 2004년 조사 자료 모두 취업모 자녀의 이용시간이 미취업모 자녀에 비하여 1시간 30분 정도 더 길었다. 연령별로 취업모 자녀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용시간은 감소하나, 미취업모 자녀는 연령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유치원의 경우 모의 취업여부별 차이는 30분 정도로 보육시설에 비하여 짧았다.

2007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가 있는 가구조사(서문희·최혜선, 2007)에서도 취업모 자녀의 이용시간은 영아의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이용하는 시간이 길었으나, 미취업모 0세 자녀의 경우는 만1세아와 만2세아 이용시간에 비하여 오히려 짧은 것으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유추된다<sup>2)</sup>.

2009년 조사의 이용시간 특성은 영아가 단시간 이용자와 장시간 이용자로 구분되는 비율이 모두 유아보다 더 높다는 점이다. 표준편차가 영아는 2시간이 넘는다. 영아의 이러한 이용시간 양상은 2004년 보육실태조사 이용시간 조사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기본보조금 등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 아동 8시간 38분, 모부재 아동 9시간 16분이고 미취업모 아동은 6시간 57분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시간 분포로는 6시간까지 이용한 비율이 취업모 11.6%, 미취업모 32.5%이고 9시간 이상은 취업모 39.7%, 미취업모 7.2%이고 모부재 아동은 50.0%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조사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는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이 미취업모의 0세아의 시설 이용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동시에 지원 비용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9년 보육실태조사(유희정·이미화 외, 2009)에서는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평일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8~10시간 미만인 3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8시간 미만 25.0%, 관련학과 교수와 보육시설 시설장, 교사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12시간 미만 24.1%, 12시간 이상 9.4%, 5시간 미만 8.0%로 추정하였다. 또한 시설장이 파악한 귀가시간 요구도 조사에서 취업모들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시간대인 오후 6~8시까지의 경우로 68%이며, 미취업모 가정에서는 오후 4시~6시대에 귀가를 원하는 경우가 5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오후 2시~4시 37.0%이었으며 오후 6시~8시까지의 8.7%로 보고하였다.

## 나. 이용시간과 비용

현재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1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가 제시하는 보육료 상한선이나 정부 지원 단가 모두 획일적으로 종일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08년 연구(서문희·박수연, 2008) 또한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보육료를 종일제 이용 아동과 차별화하는가를 조사하였는데, 오후 6시 이후에 귀가하는 아동과 2~3시에 귀가하는 아동의 보육료에 차등을 둔다는 비율을 0세아와 만1세아는 차이를 둔다는 비율이 35.1%와 38.1%인데 비하여 그 이상은 41% 이상이다. 시설유형별로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보육료에 차이를 둔다는 비율을 보면 0세아는 민간보육시설, 만4세아는 가정보육시설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차등을 두는 경우 금액의 차이는 최저 0세아 3,000원, 최고 만1세아 177,000원으로 시설별 편차가 매우 크다. 평균으로는 민간보육시설은 40,000원 내외이고 가정보육시설은 0세와 만1세는 70,000원 수준이며 2세는 1/2로 감소한다. 만3세는 30,000원 수준이며 만4세 이상은 22,000원 정도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차이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오후 6시 이후에 귀가 하는 아동과 4~5시에 귀가하는 아동의 보육료는 차이를 둔다는 비율은 연령별로 0세아 9.3%, 4세 이상아 4.9%로 소수에 불과하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시설이 최대 만0세아로 5.9%, 최소 4세이상아로 3.4%이며, 가정시설은 최대 0세아 11.8%, 최소 만1세 이상아 7.1%로 민간시설에 비하여 다소 높다. 차등을 두는 경우 보육료 금액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은 만4세 이상아 24,400부터 0세아 39,900이며, 표준편차는 다소 높아서 0세아의 경우 최대 10,000원, 최대 122,000원이고 만4세아는 최대 40,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유형별로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이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2009년 보육시설조사에서는 이용 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다르게 받는다는 시설이 18.7%, 이용시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시설이 81.3%로 응답되었다(유희정·이미화 외, 2009).

#### 다. 정책대안

최근에 들어서 획일적 보육시간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 왔다. 시간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정책 대안으로 육아정책개발센터의 2006년 연구(서문희·나정·최혜선, 2006)와 2008년 연구(서문희·박수연, 2008)에서는 비용 지원 대상을 연장제, 종일제 이용 아동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6년 연구에서는 만2세 이상아동은 이용시간을 종일제와 연장제 이용으로 구분하고, 0세아와 만1세아에게는 취업모 자녀만을 대상으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비용 분담은 기본형은 현재와 같은 보육비용 지원체계를 일부 보완하여 적용하고, 종일제는 추가 배치교사 인건비 지원 등으로 국가부담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연구진은 현재의 지원 단가에 대한 개선 없이는 시설의 운영과 인력의 신분 안정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교사의 처우 개선과 8시간 근무 등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는 환경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2008년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이용시간 유형을 기본형과 12시간 종일제 형으로 이원화하여 적용하고 대상도 모의 취업 등 조건을 두어 이용시간 자격을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본형의 이용시간은 2세 이상 아동의 경우 오후 2~3시에 귀가하고, 0, 1세 영아에 한하여 평일 하루 3시간 보육을 기본으로 하였고, 종일제는 모의 취업이나 직업교육, 또는 가정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구성원이 있어서 아동의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김명순 외(2009)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시간과 관련하여 다양한 수요자의 선택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시간을 제안하였다. 다양화된 보육시간을 유형별로 집중되도록 배치하여 보육운영시간에 따른 교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연장형이나 일시보육형의 효율적 운영 및 선정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어린이집 유형별 구체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형태 검토 후 이에 합리적인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합리적 보육료 산정이 필요하고, 교사의 기본 근로기준이 보장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원이 최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5. 용어의 정의

본 보고서에서 용어의 정의를 필요로 하는 단어는 단축형, 8시간 종일제 및 12시간 종일제 보육이다.

단축형은 오후 2시이후 3시까지 귀가하는 보육을 의미하며, 8시간 종일제는 저녁 6시 경에 귀가하는 보육, 12시간 종일제 보육은 오후 7시 30분까지 보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하원시각을 기준으로 하고 시작 시각과 실제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것은 보육 정규 시간은 9시를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취업모 자녀들은 이른 시간에 등원하게 되는데, 보육시설에서는 교사 당직제도를 두어서 이러한 아이들을 보호하므로 12시간 종일제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 II. 영유아 보육시간 관련 현황 및 요구

제2장에서는 기존 보육시설 이용시간 관련 국내 연구결과와 심층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보육시설 운영 및 이용시간, 그리고 이에 따르는 비용 현황과 요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설문조사 결과의 구체성을 보완하는 자료로 심층면접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 1. 보육시설 운영시간과 운영일반

#### 가. 보육 운영시간

##### 1) 제도

보육사업안내에는 영유아보육법에 기초하여 상세히 보육시설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평일 보육시설 운영시간은 07:30~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토요일 운영시간은 07:30~15:30로 8시간이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다.

토요일에도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나 토요일 휴무제 확대에 따라 보육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달리할 수 있다. 교사들의 토요일 교대 휴무가 가능하다. 특히 주40시간 근무 해당시설은 근로기준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달리 운영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날(5.1)은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 근로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학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고, 청구 비용은 휴일 보육료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실제 보육 운영시간

가) 보육 운영시간 유형

(1) 보육 운영시간 유형 분류

보육시설은 하루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에 따라서 모든 아동에게 종일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도 하지만 유치원과 같이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2008년도 민간과 가정시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하루 중 아동에게 적용하는 보육시간 유형을 6시 이후에 귀가하는 종일제 이외에 오후 2~3시 정도에 귀가하는 유형인 단축형 I 과 오후 4~5시 경에 귀가하는 단축형 II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 여부를 조사하였다.

〈표 II-1-1〉 평일 아동에 적용하는 보육시간 유형

단위: %(개소)

구분	종일제	종일제 + 단축형 II	종일제 + 단축형 I	종일제 + 단축형 I + 단축형 II	계(수)	$\chi^2(df)$
전체	23.0	43.2	13.9	19.8	100.0(715)	
유형						
민간	14.8	41.5	14.0	29.7	100.0(478)	562(3)**
가정	31.1	45.0	13.9	10.0	100.0(237)	
지역별						
민간						
대도시	23.0	36.5	12.2	28.4	100.0(148)	
중소도시	5.7	45.7	15.7	32.9	100.0(140)	18.4(6)**
읍면	17.4	43.2	14.7	24.7	100.0(190)	
가정						
대도시	31.5	37.0	16.4	15.1	100.0( 73)	
중소도시	32.0	50.7	12.0	5.3	100.0( 75)	6.5(6)
읍면	25.8	47.2	13.5	13.5	100.0( 8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서문희·박수연(2008).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별 비용 차등 적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그 결과, 조사된 보육시설의 아동귀가 시간 유형을 보면 21.0%의 보육시설은 기본적인 종일제로만 통일하여 모든 아동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가장 많은 43.2%가 종일제와 오후 4~5시 경에 귀가하는 유형을, 그리고 13.9%는 종일제와 오

후 2~3시에 귀가하는 유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8%의 보육시설은 이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1-1 참조).

시설유형별로는 가정보육시설에서 기본적인 종일제만을 운영하는 비율이 민간보육시설보다 높다. 이는 가정보육시설에 영아가 많고 영아의 경우 모의 취업 비율이 유아보다 높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다시 나누어 보면 민간보육시설은 지역 차이가 유의한 수준으로, 중소도시에서 탄력적으로 귀가 시간을 적용하는 경향이 강하고 대도시가 종일제를 고수하는 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보육시설의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중소도시에서 종일제만을 적용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 (2) 운영시간 유형의 다양성 및 분류의 한계

그런데 심층면접 결과를 보면 이러한 이용시간 유형분류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일반 적용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어린이집마다 종일반 운영시간이 다양성하다. 특히 민간 가정보육시설은 보육시설마다 시설장 재량으로 보육 운영시간을 정하고 있다. 국공립 등 12시간 종일제 운영 원칙을 잘 지키려는 경우, 대체로 오후 5시 정도를 기준으로 종일반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4시경부터 아동들이 귀가하기 시작한다. 미취업모나 취업모의 경우에도 조부모나 보육도우미 등 가정에서 성인이 있어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학원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어머니들의 일상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는 나흠대호 5시 반이라는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시설장 14, 충북)

이러한 운영은 부모에게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아동이 보육시설에 입소할 때 이용시간 자체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편할 때로 자녀를 데리러 오기 때문에 반일반이 되었다 종일반이 되었다 한다는 것이다.

반일반의 용어가 정확히 어떻게 정의되는 거예요? 언니들은 종일반, 반일반 개념이 딱히 없어요. 내가 아이를 좀 일찍 데리러 가고 싶을 때, 굳이 그걸 반일반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인 이유로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어린이집에 맡겨 놓으면 그러면 종일반이 될 수 있겠죠. 그게 5시 반 6시 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부모 10, 충북)

보육시설에서 아동 등하원 차량을 운영할 경우 대부분 운영 기준 시간을 첫차가 나가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시간이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 3시 이후에 첫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솔직히 3시차 첫차타고 나가는 아이들까지는 종일반이라고 봐주세요. 아니고 반일반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점심 먹고, 간식까지 먹고 가는데.....  
(시설장 14, 충북)

차를 타기를 원하는 아이들은 차를 타게 해줘야 해요. 차는 3시경부터 운행  
을 하고 있습니다. 4시까지 하면 40-45%정도 될 겁니다. (시설장 5, 서울)

지금 차량운행이 미스가 계속 나거든요. 시간이 자주 바뀌죠. (교사 2, 경기)

3시에 반일반 차량이 떠나요. (부모 9, 충북)

오후에는 3시부터 1, 2, 3호차가 있더라고요. 3시부터 한번 나가고 4시인가  
5시에 한 번 나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나가는 걸 알고 있어요. 큰애는 학  
원을 가야 하는데 학원차가 3시 3-4분에 어린이집으로 데리러 오거든요. 학  
원에서 집으로 타요. (부모 7, 강원)

차를 3번 운행하는데 4시, 5시, 6시 이래요. 그 시간에 맞춰보니까 5시가 적  
당할 것 같아서 5시에 아이가 타요. (부모 13, 전남)

저는 3시에 왔으면 좋겠는데, 차량운행시간이랑 맞지 않아서, 차시간에 맞추  
다 보니 4시 넘어서 올 수밖에 없어요. (부모 14, 전남)

그러나 저녁을 먹고 가는 아동을 종일반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차량을 이용하  
지 않는 아동을 부모가 와서 자녀를 데려가는 시간까지 보육하여야 한다.

종일반이라고 하면,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집이 모두 종일반이라 기준상으로  
3시다 7시 반이다 이런 게 없지만, 저희 현 운행상은 저녁을 먹고 가는 애들  
을 위주로 종일반이라고 지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설장 16, 충북)

굉장히 낡았어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7시 반 전에 (아이들이) 다 갔다면  
8시 반에 문을 닫지만, 엄마들 오는 것에 따라 들쭉날쭉해요. 시간연장이 아  
니지만 10시까지 하기도 해요.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100%거든요. (교사1, 서  
울)

어머니들이 맡겨놓고 데리고 가지름 많으니까 7시 반 8시 어쩔 때는 9시까지  
 눈이 오고 비오고 그래서 길 막히고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자는 경우도 있  
 어요. (시설장 15, 충북)

둘째, 운영시간의 개념이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보육 프로그램 운영시간으로 보  
 아야 하는 점이다. 자녀가 부모의 손을 떠나서 보육시설에 인계된 순간부터 다시 부  
 모 손에 인계될 때까지를 프로그램 운영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보육시  
 설 현관에 들어서부터 다시 현관을 나갈 때까지 인가하는 문제이다. 이 경우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고려한다면 보육시설 관계자 손에 인계될 때부터 다시 부모 손에 안  
 전하게 인계되었을 때까지를 프로그램 운영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차타는 시간이 많하자면 3시 20분에 나가도 4시 10분까지 애들을 봐줘야 해  
 요. 우리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보육을 봐줘야 해요. (시설장  
 15, 충북)

이렇게 할 경우에 또 다시 봉착하는 문제는 차량 운행과 이용시간과의 관련성이  
 다. 전국적으로 아동이 차량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0분 정도이지만 보  
 육시설 입장에서는 차량운행을 가장 오래 동안 차를 타야하는 아동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모든 아동이 모두 부모 손에 안전하게 인계되어야 그 날의 프로그램  
 이 끝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버스를 한대 가지고 30~40  
 분 간격으로 여러 차례 운행하게 되는데 특히 농어촌의 경우 버스를 타야하는 아동  
 이 많기 때문에 3시경부터는 귀가하기 시작하여야 6시를 전후하여 차량 운행이 끝  
 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준 시간이 3시인가 6인가는 아동의 집과 어린이집 사이의  
 이동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6시에 끝나는데 아빠는 일이 6시 반에 끝나  
 요. 처음에는 7시까지 한다고 해서 했는데 5시 반부터 애들을 챙겨서 차량이  
 돌면 7시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 3, 경기)

#### 나) 종일제와 단축형<sup>3)</sup> 아동 분포

2009년 보육시설조사에 의하면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수의 연령대별 중

3)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조사에는 '반일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유치원 반일제와의  
 혼동 및 보육시설의 종일제 운영 원칙을 반영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단축형'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  
 용하고자 함

일반과 단축형인 반일반 비율은 <표 II-1-2>과 같다. 응답된 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수는 123,332명인데, 그 중에서 75.8%가 종일반이고 24.2%가 반일반으로 조사되었다. 아동 연령별로는 만1세 이하가 16~17%이고 그 이상은 비율이 증가한다. 가구조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표 II-1-2> 평일 아동에 적용하는 보육시간 유형별 아동 분포

단위: %(명)

구분	만1세 미만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계
종일반	83.7	82.4	76.0	71.6	75.1	74.8	75.8
반일반	16.3	17.6	24.0	28.4	24.9	25.2	24.2
전체 (수)	100.0 (5,215)	100.0 (16,176)	100.0 (29,038)	100.0 (28,520)	100.0 (25,115)	100.0 (20,268)	124,332 (100.0)

자료: 유희정·이미화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여성정책연구원. 재구성

다) 단축형 아동 이용 보육시설 특성

2009년 보육시설 실태조사에서 보육아동의 24%인 단축형 이용 영유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민간/법인외/부모협동 시설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연령별로는 차이가 나서 만 1세미만 영아들은 가정보육시설이 64.3%로 가장 높지만, 아동 연령이 많아지면서 감소하고 대신에 민간보육시설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영유아의 이동 아동 규모 분포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크다.

<표 II-1-3> 보육시설 특성별 평일 단축형 아동 분포

단위: %(명), %

구분	만1세 미만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계
국공립	2.0	7.3	7.2	8.1	9.4	10.9	1,882(8.4)
법인	3.0	11.4	17.3	19.6	21.5	21.4	4,191(18.6)
민간/법인외/ 부모협동	30.4	40.4	58.1	66.3	65.3	62.9	13,469(59.9)
가정 직장	64.3	39.3	15.5	3.3	0.7	0.6	2,364(10.5)
	0.3	1.6	1.9	2.7	3.1	4.1	589(2.6)
전체	100.0 (698)	100.0 (2,084)	100.0 (5,482)	100.0 (5,853)	100.0 (4,435)	100.0 (3,732)	100.0 (22,495)

주: 응답은 200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자료: 유희정·이미화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여성정책연구원. 재구성

라) 종일제로만 운영하는 경우 그 이유

단축형을 두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육아정책개발센터 2008년 조사에서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단축형 I 유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로는 이러한 시간 이용을 희망하는 아동이 없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고, 24.1%가 보육료 지원이 종일제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13.9%가 영유아보육법으로 보육시설 운영이 종일제로 명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2.4%는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운영상의 애로 때문에 이러한 시간 적용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표 II-1-4 참조).

시설유형별로 보아도 전반적인 이러한 경향은 유사한데 가정보육시설은 희망 아동이 없다는 응답이 많고, 민간보육시설은 보육시설 12시간 운영 원칙의 명시를 이유로 든 비율이 다소 높다. 지역별로는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 모두 도시보다 읍·면에서 일찍 귀가하기를 희망하는 아동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도시에서는 12시간 운영 법적 규정을 이유로 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1-4〉 단축형 I 미적용 이유

단위: %(개소)

구분	법으로 종일제 명시	지원이 종일제 기준	희망아동 없음	시설 운영 애로	계(수)	$\chi^2(df)$
전체	13.9	24.1	59.5	2.5	100.0(453)	
유형						
민간	19.7	21.4	56.7	2.5	100.0(276)	9.0(3)*
가정	9.9	26.0	61.5	2.6	100.0(17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서문희 박수연(2008).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별 비용 차등 적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최근 1, 2년 사이에 특히 종일제 보육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배경은 종일제 중심의 보육정책, 보육료 지원 확대와 이에 따른 지도 감독 강화, 정부정책 홍보 강화 등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별개가 아니고 상호 영향을 받으면서 연계되어 있고,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부모의 장시간 보육 요구도 증대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종일제 운영 법적 규정 적용의 강화이다. 시설장 심층면접 결과, 대체로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된 2005년도 상반기까지는 종일반 이외에 반일반 개념으로 2시반에 귀가하는 프로그램이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종일반이라고 하어도 7시 30분이라는 개념은 미약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때 당시에 2시에 가는 아이들이..... 60-70% 아이들이 2시에 갔어요. 그 나머지 30-40% 아이들이 아이들도 그 이후에 갔는데도 무척 빨리 갔거든요?(시설장 2, 서울)

그러다가 최근 수년간 보육지원 확대 및 보육정책 강화와 더불어 종일제 원칙이 강조되면서 이용하는 시간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하위소득 50%에게 전액지원이 되면서 올해에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첫 번째 버스 운행 시간을 늦추는 경향을 보였다. 작년까지만 해도 3시 이전에 첫 번째 버스를 운영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 시간을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경우에도 첫 번째 차량이 나가는 시간을 40~50분씩 늦춘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침서에 의해서 어린이 집은 종일방이 원칙이고 2시에 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종일방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2시에 귀가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퇴소를 하시는 수밖에 없다고 했죠.... (시설장 2, 서울)

지침을 따르다 보니 종일제로 운영하여 기본적으로 4시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설장 9, 경기)

종일제 원칙으로 운영과 이용시간 증가에 따라 반일반이라고 보육료를 깎아주던 사례도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된다.

몇 년 전에는 반일방 종일방 따로 있었잖아요. 지금은 종일방으로 다 바뀌었으니까. 제가 취업 안 했을 때는 반일방으로 보내고 싶었는데 종일방으로 다 바뀌었으니까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부모 3, 경기)

둘째, 보육료 지원의 확대와 이에 따른 정원 초과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이다. 과거에 반일반은 대체로 보육료를 깎아주면서 정원 외로 아동을 받아 보육하였던 경향이 있었으나 비용 지원확대와 함께 정원 초과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면서 반일반 이동을 두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이해된다.

좁은 공간에 25명 30명 받았지만, 기본보육료를 지원하면서 정원제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니깐, 우후죽순으로 반일방 받고 시간도 받고 방과후도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된 거지요. (시설장 5, 서울)

이젠 정원제가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죠. 그러다보니 반일방이나 종일방이나 모두 정원에 포함 되니깐 반일방 아동을 받아서는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안 받게 되죠. (시설장 5, 서울)

지금 다 종일제로 돌리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설장 1, 서울)

셋째는, 규정 준수와 비용 지원과의 연장선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부모들의 장시간 보육 요구가 증대되었다. 일부 부모들은 보육료가 종일반 기준이므로 반일반으로 이용하면 보육료를 감면해 달라고 요구하고,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종일반으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반일반으로 이용하여도 보육료를 깎아주기 어렵다고 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종일반으로 보육한다는 것이다.

요즘 정부에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종일반이 얼마나 이쁜 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어머니들이 가정에 있으면서도 의무적으로 종일반을 다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 정도는 몇 시까지 있는 게 적절하다 생각하시는 데, 나머지 분들은 정부의 홍보가 그렇게 되어서 그냥 늦게까지 두는 거죠 (시설장 18, 부산)

지금은 6시 반까지 묶어놓으니까 업따들은 똑같은 돈 내고 자기만 일찍 데려오는게 억울하고, (중략) 운영시간을 교육시간인줄 알고 부모님들이 협조를 안해서.. (시설장 7, 경기)

업따들이 반일제 하면 보육료를 깎아 달라하는데 보육료는 당일차터어 깎아 줄 수 없다 하면 그런 종일제로 한다하죠. (시설장 3, 서울 / 시설장 21, 전남)

특히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100% 지원받는 경우 모의 취업상태와 무관하게 종일제 이용 요구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가가 보육비용을 모두 지원하므로 어린이집은 종일제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부모들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보육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오래 늦게까지 꼭 직장을 안다녀도. 오래 두시고 그러죠. (시설장 3, 서울)

국가가 비용을 다 주는 경우에 더 요구도 많고, 병원 데려가지 등 집에서 안 하는 것들을 다 해주기를 원하니까.. (시설장 4, 서울),

100% 지원 받는 분들이 워낙 많이 늘어났는데 어차피 지원을 받고 비용부담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오래 두려는 경향이 생긴거 같아요. (교사 3, 강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모의 취업 등과 무관하다는 점이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어린이집에서다 해주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보육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즉, 부모의 부담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편의에 의하여 어린이집에 자녀양육을 의지하는 부모들이 증가한다.

예전에는 내 자식을 내가 키워야 한다 생각했지만 요즘은 취업모가 아니더라도 자기 본인 일이 많기 때문에 취업모, 비취업모 상관없이 종일반으로 가는 거 같아요. 종일반이 활동이 다양하기 때문에...저녁까지 체계적으로 활동이 되어있다보니....그렇게 멀고 멀기시는 것 같아요. (교사 5, 부산)

일하지 않는 부모 자녀가 6시 반까지 어린이집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런 교육이 잘 된다 해도 부모님 무릎받침 교육이 어디 있어요....근데 정부가 6시 반을 법으로 정해 놓으니까 어머니도 약간의 방치가 들어간 상태에서 어린이집에서 피아노까지 완벽한 교육을 해 주길 원해요. (시성장 7, 경기)

반일반이 생겨도 어머니들은 돈을 더 내고라도 종일제를 더 많이 이용하거나 생각해요. 지금처럼 3~4만원 차이이면 종일반을 이용하실 것 같은데. (교사 2, 경기 / 교사 5, 부산)

엄마들이 지원이 되니까 늦게까지 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일찍 찾아가도 싫어도 돈 때문에 1~2시간 더 보게 하지 이렇게도 생각해요. (부모 3, 경기)

3시 반에 데리러 오면서 종일반해도 상관없겠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금액이 이 정도면... 2만원 안에서 해결된다면 굳이 보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부모 8, 강원)

넷째, 시간연장 보육의 확대가 연장 보육 이외 일반아동의 보육시설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에는 내 아이만 혼자 보육시설에 남게 될까봐 제시간에 데려갔다면 최근에 시간연장을 하는 보육시설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묻어서 부정기적으로 이용시간을 늘리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시간당 2,400원이라는 시간당 보육료도 부모입장에서는 부담이 안 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5시 쯤 되면 우리 애밖에 없어서 심심해 할까봐 걱정하는데 시간연장을 하니 우리애가 낯아도 시간연장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늦춰지게 되죠. (시성장 11, 강원)

늦게 가는 아이들이 매년 느는 거 같아요. 다른 아이가 늦게 가니까 이 아이도 늦게 가는데 내 아이도 늦게.. 물어가는 거죠. (교사 5, 부산)

이와 같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하여 전체 이동을 대상으로 종일제 프로그램이 이용시간이 정착되는 양상이다.

## 나. 보육교사 근무시간

### 1) 제도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일 근로시간 8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2시간이 원칙이므로 괴리가 발생한다. 이에 보육사업안내에서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시설의 운영시간(07:30~19:30)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근무 현황

#### 가) 근무 시간

2009년도 조사에서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1일 평균 9.5시간으로, 2005년 조사 결과인 1일 평균 근무시간 10시간 19분과 비교하면 약 49분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보면 점심시간을 고려하여도 제시한 것 보다는 초과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법인보육시설이 9.9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가정보육시설이 9.2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표 II-1-5 참조).

교사들이 희망하는 복지요구는 급여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근로시간의 단축'이 많다. 이 요구는 직장,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보육시설의 교사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보육시설의 소재지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1-5〉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2009							2005 년도
	전체	국공립	법인	민간/ 법인외/ 부모협동	가정	직장	F	
근무시간 (수)	9.5 (13,088)	9.6 (1,849)	9.9 (1,882)	9.5 (5,343)	9.2 (2,757)	9.7 (1,257)	101.7(4) <sup>***</sup>	10시간 19분 (30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를 의미함.

자료: 유희정·이미화 외(2009). 2009년도 전국실태조사 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여성정책연구원  
서문희 외(2006).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분석. 여성가족부

나) 근무 양상

종일반이 확대되면서 종일 담당하는 반 아동 전부를 돌보아야 하는 보육교사의 부담이 증가하였고, 이는 부모들도 인식하고 있다.

업자들이 똑같은 돈 내고 더 많이 맡기자 이러니까 종일반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선생님들도 더 힘들어하세요. (부모 4, 경기)

구체적으로 보육교사의 근무양상을 보면, 근무시간과 이용시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탄력적 근무시간은 적용하고 있다. 대체로 아침과 저녁에 당직교사를 두어서 한 명 또는 두 명의 교사가 번갈아 당직을 하는 형태이다.

탄력근무 제안을 잘 지켜서 교사 근무시간을 8시간 근로를 맞추어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대표적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저희는 7시 되면 낱매를 데려다 놓고 출근하는 어머니가 계셔서, 그 때 출근하는 교사는 4시 반에 가고, 8시 출근 교사는 5시에 가고, 8시 반에 오는 교사는 6시에 퇴근하고 그런 식으로 세 차례, 그리고 저녁에 늦게 있는 것은 두 분 교사가 당직을 교대로 하고 있죠. 부모님한테 돈을 못 받아도, 교사한테는 시간당 수당을 주고 있어요. (시성장 17, 부산)

근무체계는 아침 당직이 7시 반에 와서 4시 반에 퇴근해요. 그 다음 8시 출근자가 5시 반에 퇴근하고, 9시 전에는 다 해야 하고. 출근시간은 9시, 9시 반, 10시. 퇴근시간은 5시, 5시 반, 6시, 6시 반, 7시 반. 개인마다 다르고 6주마다 돌아가요. 그리고 업무분담을 촘촘히 짜놓고. 예쁜 들어 아침 일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일과준비를 수업 후에 하는 것은 주로 한 시간도 안 되죠. 5시에 아이들이 일부 가고 나면 남은 아이들 보살피면서 일과 준비를 한다고 봐야 되요. 그 중복된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있고 혼자 남아서 준비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라고 봐야죠. (시성장 2, 서울)

영아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정도의 낮잠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화장실 청소 등을 하고 알집장을 써야 해요. 자기가 맡은 사람이 5-6명 되는데 그걸 다 쓰고 나면 낮잠시간이 다 끝나는 거예요. (교사 1, 서울)

일부 보육교사는 보육시설에서 업무를 모두 끝내지 못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셔도 보육일지 등 서류 작성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업무와 서류 같은 것이 많은 데 그런 건 퇴근하고 집에 가서 세 시간 정도 기본 해요. 보육일지 같은 경우 보육시간 안에 쓸 수 없으니까... 양전교육일지, 소방교육일지 등 각자 업무가 있어요. 또 상담준비 같은 것 있고. (교사 1, 서울)

## 다. 보육시설의 반 편성

### 1) 제도

연령별 반편성은 지침에 따라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sup>4)</sup> 보육시설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sup>5)</sup>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보육시설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반별 정원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sup>6)</sup> 단, 영유아의 전출입등 유동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한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초과보육이 가능한데, 1~2세반

4) 2010년부터 연령 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1, 2월생 중 '08년 상위연령반(전년도 3.1~전년도 12.31 출생아동이 속해 있는 반)에 편성되었던 영유아에 한하여 예외를 적용함. 2004년 2월 1일생은 2004.1.1~2004.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신청이 있을 경우 2003.1.1~2003.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가능함.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임.

6)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1:3 1:5 1:7 1:15 1:20

은 반당 2인, 3세이상반은 반당 3인(단, 0세반은 제외)이다. 초과보육을 운영하는 시설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지침을 주고 있다.

총 정원도 2005. 1. 30. 이후 설치 인가된 시설은 영유아 1인당 면적기준이 2.64m<sup>2</sup>으로 동일하므로 보육시설 인가증에는 총 정원만 표기하고 반별 정원은 별도 표기하지 않고, 2005. 1. 30. 이전 설치 신고된 시설은 영아와 유아의 면적기준이 달라서<sup>7)</sup> 보육시설 신고증에 총 정원 외에 반별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sup>8)</sup> 관리한다. 기존 시설의 반별 정원을 조정할 경우에는 영아반 증원시 면적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총 정원을 증원할 경우에는 모든 조건을 신규인가 시설 요건에 맞춰야 한다.

혼합반은 운영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아는 3~5세 아동 혼합반이 가능하지만, 영아와 유아의 혼합반은 불가능하고 0세아의 2세아의 혼합도 불가능하다. 가정보육시설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고, 정원 21인~39인의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농어촌 특례인정시설 제외)은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다. 한편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 및 발달 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령과 달리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하도록 하였다.

## 2) 반 편성 실제

### 가) 기본적 반 편성

2009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보육시설에서 연령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급은 평균 1.40개로, 법인보육시설이 가장 많은 수의 연령 혼합 학급을 운영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에서 연령 혼합 학급 수가 가장 적었다. 규모에 따라서는 중간 규모의 시설에서 연령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학급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법인보육시설에 연령 혼합 학급이 많은 것은 이들 시설이 농어촌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농어촌은 아동 인구밀도가 희박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7) 2세이하 : 2.64m<sup>2</sup>, 3세이상 : 1.98m<sup>2</sup>

8) 2세미만 : 00명, 2세 : 00명, 3세이상 : 00명



〈표 II-1-6〉 연령혼합 학급 수

단위: 개

구분	사례수	평균	최대	최소	표준편차	통계치(F)
국공립	195	1.35	8	0	1.23	8.9(4) <sup>***</sup>
법인	186	1.83	17	0	2.33	
민간/법인외/부모협동	792	1.42	7	0	0.92	
가정	788	1.34	4	0	0.75	
직장	160	1.23	5	0	0.88	
전체	2,121	1.40	17	0	1.10	

주: \*\*\*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를 의미함.  
 자료: 유희정·이미화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여성정책연구원.

가정어린이집은 아동 연령 구성상 혼합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의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연령혼합반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연령혼합반의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적 수준이 높게 갖추어져야 한다.

가정은 아파트 안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연령이 다양하여 통합보육이 이거든요. (교사 2, 경기)

여기 원장님은 혼잡반을 일부러 하세요. 5, 6, 7세 18명이 한 턱이 되어서 형제 관계를 그 안에서 배울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겠죠. 그런데 구조화 된 곳에서는 이렇게 하면 힘들겠죠. (교사 1, 서울)

나) 정규 프로그램 운영 전 반 편성

오전 정규보육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대체로 통합보육이 이루어진다. 대체로 9시 30분경부터 정규 프로그램이 운영되므로 많게는 2시간까지로, 주로 자유놀이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아침에는 주로 통합보육이 많이 되어있는 편이에요. 통합보육은 8시 반쯤 아이들이 온다고 생각하면 9시 반까지 한 시간 정도 (교사 2, 경기)

다) 일부 아동 귀가 후 반 편성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 아동이 일시에 귀가하지 않으므로 일부 아동이 귀가하기 시작하면서 남아 있는 아동을 보통 혼합하여 보호하고 있다. 당직교사가 일찍 퇴근

해야 하거나 교사 중 일부가 차량에 동승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5시부터는 통합보육을 하죠. 그 전까지는 각반에서 하고(교사 2, 경기)

6시 반 이후에 낀 아이들은 10명 정도인데 다 모아서 선생님 두 분씩 돌아가면서 당직으로 같이 보육하세요. (교사 4, 경기)

오후에 연령통합반은 남아 있는 아동이 유아가 많은가 영아가 많은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며, 편의상 차량 동승 교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차가 1, 2, 3차 나가잖아요. 차가 1차가 나가면 2,3차 나갈 아이들이 있는데 2차 나갈 아이들은 2차 나가는 선생님이 보육하고 있다가 데리고 나가고, 3차 나갈 아이들은 3차 나갈 선생님이 데리고 있다가 나가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시설장 12, 강원)

## 라. 보육 과정 편성·운영

### 1) 제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보육시설의 장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도 및 시·군·구는 표준보육과정을 보육시설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표준보육과정에 맞는 보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계획수립, 보육과정 편성, 보육과정 실시, 보육과정 운영평가, 가정 및 지역사회의 협력의 절차로 구성된다. 보육시설은 보육과정의 영역별 목표와 내용에 따라 연령별 보육 계획을 편성하고, 연간, 월간, 주간 보육 계획을 수립하되 계절이나 지역 내 특별 행사 또는 보육 시설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육과정 편성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 흥미, 장애 등 개인차와 가정환경을 반영하여 수준별 보육 내용을 편성하되, 각 보육 시설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보육 시설은 보육 목표와 보육 내용에 적합한 보육 활동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영역별 경험이나 활동을 균형 있게 제공하여야 하며, 보육 시설은 보육 계획을 문서화하여 보육 내용의 선정과 실시 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시설은 보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부모와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보육과정 운영 시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를 얻어야 한다.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은 여성가족부 고시 제2007-1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및 하루일과 운영 보육프로그램으로 제시되어 있다.

## 2) 보육 프로그램 운영 실제 특별활동

### 가) 현황

표준보육과정에서 오전에는 교육 및 지도 활동으로 구성하고, 점심시간 후 낮잠에 이후 오후 보육프로그램은 자유 선택활동 또는 야외놀이, 신체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저희는 거의 놀이지도 위주인 것 같아요. 나머지 애들은. 반일반까지는 같이 수업을 하고, 낮은 아이들은 이제 놀이를 하고(교사 3, 강원)

종일반 아이들은 오후에는 시간을 좀 더 빼서 놀이를 하거나 수업을 더 해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따르려는 상황은 안되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줘요. 거의 놀이 지도 위주인 것 같아요. (교사 2, 경기 / 교사 6, 충북)

좀 더 친해지고, 좀 폭어준다고 해야겠죠? 아무래도 오후에는 여유로워지지 않나 싫어요. 오전에는 빡빡하게 매어있거든요. 그래서 장난감을 내주거나 다른 것들 하는 것이 더 좋고, 저는 신체적으로 부딪히는 것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사 2, 경기)

야외활동을 많이 해요. 3시부터 1호 차량이 가면 그 아이들 빼고 2,3호차 가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데리고 나가서 텃밭 가꾸기, 모래놀이 등 야외활동을 할 시간 정도 해요. (교사 3, 강원)

그러나 오후 보육프로그램의 경우, 자유놀이나 신체활동 놀이를 할 경우, 부모들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운영하기보다는 아이들끼리 놀거나 단순히 보육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거의 4시 이후에는 그냥 놓고 비디오 틀어주고 그런 식이던데요. 그냥 아이들끼리 놓고. (부모 2, 서울)

특별활동이 오전에 끝나고 이후에 특별활동을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끌어가야 하는데, 오후에는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부모 5, 경기)

그러나 50%가 넘는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을 실시한다. 특별활동은 대부분 외부 업체나 개인 강사가 진행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최근에 일부 지자체는 지역사회 인력을 활용하여 보육시설 특별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요즘은 시(동두천)에서 동화 읽어주는 분이나 외국어 이런 부분이 지원이 나오거든요. 큰 반 같은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같은 같은 도우미분들이 오셔서 동화 읽어주는 분이 계시고, 또 중국어 가르쳐주시는 분도 계시고해요. (교사 2, 경기)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특별활동 운영 시간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 보육시설의 46.8%가 오전 보육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보육시간은 26.5%, 오전과 오후 보육시간 모두 운영하는 경우도 26.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은 이 세 가지 시간대의 응답이 모두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보육시설은 오전 보육시간이 73.5%로 대부분이었으며, 직장보육시설은 오후 보육시간이 50.0%로 가장 많았다(표 II-1-7 참조).

〈표 II-1-7〉 특별활동 운영 시간대

단위: %(명)

구분	오전 보육시간	오후 보육시간	오전오후 보육시간 모두	계(수)	$\chi^2(df)$
전체	46.8	26.5	26.8	100.0(2,558)	
국공립	34.4	35.5	30.1	100.0(299)	
법인	40.2	24.7	35.1	100.0(251)	
민간/법인외/ 부모협동	35.1	31.5	33.5	100.0(1,004)	383.9(8)***
가정	73.5	11.9	14.5	100.0(812)	
직장	22.4	50.0	27.6	100.0(19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를 의미함.  
자료: 유희정·이미화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여성정책연구원, 재구성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오전에 하는 이유는 일찍 가는 아동 등 모든 아동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대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강사가 모든 아동을 다 교육하려면 오후시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일반 종일반 아이들을 모두 할 수 있게 하려고 특별활동을 오전에 해요.

(교사 2, 경기)

특별활동은 오전도 있고, 오후도 있고 그래요. 종일반친구들만 해서 오후에 특기수업으로 뺄레나 음악 이런 신체적인 것들로 하고, 오전에는 영어나 공부를 위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교사 2, 경기)

특별활동을 오후에 하는 이유는 오전에 할 경우 모든 아동이 있기 때문에 모두 의무적으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오후에 남아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방식이다.

오후에 하죠. 오전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을 더 내고 해야 하니까요. (부모 2, 서울)

〈표 II-1-8〉 특별활동 미참여 영유아의 활동

단위: %(명)

구분	프로그램 없이 교사와 자유활동	별도프로그램 따라 활동	특별활동 미참여자 없음	기타	계(수)	$\chi^2(df)$
전체	18.4	20.8	54.8	6.0	100.0(2,538)	
국공립	10.8	11.9	72.5	4.7	100.0(295)	
법인	12.6	23.3	59.7	4.3	100.0(253)	
민간/법인외/ 부모협동	18.7	21.7	53.6	5.9	100.0(994)	74.2(12)***
가정	22.4	23.9	47.0	6.8	100.0(805)	
직장	18.8	13.1	60.7	7.3	100.0(19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를 의미함.  
 자료: 유희정, 이미화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여성정책연구원, 재구성.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들이 그 시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가 없다'가 54.8%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운영한다' 20.8%로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교사와 자유활동을 한다' 18.4%보다 조금 더 많았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국공립과 직장 및 법인보육시설의 경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가 없는 시설이 각각 72.5%, 60.7%, 59.7%로 많고,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은 각각 53.6%, 47.0%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과 민간보육시설은 '별도로 준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운영한다'는 시설이 더 많았으며, 가정보육시설은 별도로 준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운영하거나 프로그램 없이 교사와 자유활동을 하는 경우가 22~2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표 II-1-8 참조).

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를 특별활동에서 소외된 채 지내도록 두기는 어렵다.

우리 아이는 특별활동을 안하겠다고 해서.. 그걸 우리 애한테 안하니까 혼자 멍뚱멍뚱 있을 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3시에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요. (부모 1, 서울)

#### 나) 특별활동 실시 배경

보육시설의 특별활동은 보육시설의 운영에도 이유가 있겠으나 우선은 부모의 요구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크다.

표준보육과정은 6시까지 원이 들어가 있긴한데 그렇게 하면 엄마들이 원에 안 보내요. 표준과정에선 오후에 다 놓리거든요. 자유선택 연장, 놀이, 시청각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마들이 놓래요. (시설장 7, 경기)

부모 요구는 보육시설의 운영 특성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특히 유아의 경우 부적절하게 낮은 보육료를 대신하여 보육시설의 재정적 운영 상태를 보완하는 방안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이다.

부모님들도 의아해 하세요. 유치원처럼 똑같이 돈을 받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래서 간식을 덜 먹지 않는지, 뭐가 부족할지를 걱정하시더라고요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운영형태가 이렇다보니까 필요한 경비제도가 있고.., 그래서 그게 활용해서 6시까지 다 보육을 해 주는거죠... (시설장 7, 경기)

정부의 보육료 지원의 확대도 특별활동이나 학원 이용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 지원으로 줄어든 부모 보육료를 자녀에게 다른 방식으로 다시 투자한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지원 받으니까 낮은 돈으로는 학원 돌리고... 학원비 번  
었어인 나고 하세요. (교사 3, 강원)

어차피 원비로 20만원씩 계속 들어갔고, 그 비용은 교육비로 생각하기 때문  
에, 지원이 되거나 비용이 줄면 예상했던 20만원이 낮으면 피아노도 시키고  
해요. 어차피 교육비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걸 시키죠. (부모 9, 충북)

그러나 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의해 별도의 비용을 충분하게 받지 않으면서도 특  
별활동을 실시하는 기관도 있다.

근데 솔직히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 특별활동비  
를 줄여야 하는 실정이에요. 부모님들이 깎아달라고 하시면, 저희 원장님은  
그냥 안 받아도 특별활동을 시키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적자 나는 거예요.  
(교사 5, 부산)

위의 사례는 도시이지만, 농어촌의 경우, 아동의 제한된 경험 기회를 해소하기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되기도 한다.

## 2. 보육시설 이용시간과 보육료

### 가. 제도

보육료나 지원금액 기준액은 평일 최대 12시간 이용을 전제로 하며, 그 이하 시간  
이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비용책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한 이래 표준보육단가는 1999년까지 산정하  
여 '보육사업지침'으로 제시하다가 그 이후 표준보육단가 고시는 각 시·도에 위임하  
였고, 중앙정부에서는 기존의 표준보육단가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출  
하여 정부의 지원기준 보육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의  
보육료가 된다. 그러므로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는 1999년 표준보육단가체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일정 비율로 증액하였고, 2005  
년도 이후 부분적인 변경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인건비 지원 비율을 시설장 및  
영아반 교사는 90%에서 80%로, 유아반 교사는 45%에서 30%로 조정하고 이에 따  
라 지원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2006년도에는 0세아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을 반영하여 0세아 기준액을 따로 설정하였고, 2007년도에는 만3세아 교사대 아동비율을 반영하여 만4세아 기준을 따로 정하였다.

한편 민간보육시설 보육료는 1999년 이후 시·도 지사가 상한가를 고시한다. 조세연구원에서 표준보육료·교육비를 산출한 바 있는데(박기백 외, 2005),<sup>9)</sup> 이에 의거하여 영아반 기본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영아보육료는 국공립 및 지원단가와 동일해졌다. 그러나 유아 보육료는 조세연구원에서 산출한 표준보육료·교육비에 대한 고려 없이 시·도 지사가 상한가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다.

## 나. 보육료 수납 현황

### 1) 이용시간별 차등여부

2008년 조사에서 오후 6시 이후에 귀가하는 아동과 2~3시에 귀가하는 아동의 보육료에 차등을 둔다는 비율은 시설 유형 및 아동 연령별로 차이를 보인다. 시설유형별로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보육료에 차이를 둔다는 비율을 보면 0세아는 민간보육시설, 만4세아는 가정보육시설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I-2-1〉 종일제와 2-3시 귀가 아동간 보육료 차등을 두는 시설 비율: 2008  
단위: %(개소)

구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민간	37.2	40.0	44.7	43.8	41.3
(수)	(60)	(125)	(179)	(186)	(176)
가정	28.6	33.3	41.7	29.6	33.3
(수)	(28)	(50)	(51)	(21)	(13)

자료: 서문희·박수연(2008).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별 비용 차등 적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서는 이용시간에 따라 비용에 차등을 둔다는 비율이 가정 보육시설은 28% 수준으로 앞의 조사결과와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민간은 18% 수준으로 2008년 조사에 비하여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표 II-2-3〉은 오후 6시 이후에 귀가 하는 아동과 4~5시에 귀가하는 아동의 보육료에 차등을 두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것인데 차이를 둔다는 비율은 연령별로 0세아 9.3%, 4세 이상아 4.9%로 소수에 불과하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시설이 최대 만0세

9) 여기에는 종사자 인건비, 아동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가 포함됨.



아로 5.9%, 최소 4세이상아로 3.4%이며, 가정시설은 최대 0세아 11.8%, 최소 만1세 이상아 7.1%로 민간시설에 비하여 다소 높다.

〈표 II-2-2〉 이용 시간에 따른 보육료 징수 여부: 2009

단위: %(개소)

구분	이용 시간에 따라 다름	이용 시간에 따른 차이 없음	계(수)	$\chi^2(df)$
전체	18.7	81.3	100.0(3,166)	
시설유형				
국공립	4.4	95.6	100.0(315)	
법인	9.0	91.0	100.0(300)	
민간/법인외/ 부모협동	18.3	81.7	100.0(1,190)	159.4(4)***
가정	28.1	71.9	100.0(1,144)	
직장	4.6	95.4	100.0(21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를 의미함.  
 자료: 유희정·이미화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여성정책 연구원, 재구성.

〈표 II-2-3〉 종일제와 4-5시 귀가 아동간 보육료에 차등을 두는 시설 비율

단위: %(개소)

구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전체	9.3	6.1	6.1	5.3	4.9
(수)	(215)	(333)	(409)	(335)	(303)
민간	5.9	5.4	4.1	3.7	3.4
(수)	(342)	(229)	(297)	(292)	(282)
가정	11.8	7.1	7.4	9.3	-
(수)	(13)	(79)	(104)	(112)	(21)

자료: 서문희·박수연(2008).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별 비용 차등 적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2) 이용시간별 차등을 둘 경우 액수

보육시설의 보육료는 연령별로, 그리고 이용하는 시간유형별로 나누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표 II-2-4 참조). 2008년에는 단축형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민간과 가정 보육시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시설조사에서는 종일반과 반일반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2008년에 조사된 결과이다. 0세아 보육료는 종일제로 조사한 보육료는 전체

적으로 평균은 369,300원으로 조사되었고, 오후 2~3시경에 귀가하는 아동의 경우는 343,200원, 오후 4~5시경에 귀가하는 아동은 366,200원으로 조사되어, 종일제와 4~5시에 귀가하는 아동간의 차이는 거의 없고,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아동만 종일제 보육료 대비 26,000원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시설의 보육료 편차는 커서 표준편차가 크다. 특히 종일제는 최소 150,000원부터 최대 558,000원으로 많은 차이를 보였고 오후 2~3시 귀가 아동의 보육료 표준편차는 378,000원에 이른다(표 II-2-4 참조).

〈표 II-2-4〉 연령별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료

단위: 천원(개소)

구분	종일제			단축형 I			단축형 II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보육료	표준 편차	(수)
0세아	369.3	228.4	(365)	343.2	483.3	(96)	366.2	190.3	(231)
최소	150.0			182.0			250.0		
최대	558.0			378.0			378.0		
1세아	320.7	22.8	(529)	302.2	42.6	(195)	320.6	22.0	(369)
최소	150.0			150.0			180.0		
최대	490.0			372.0			400.0		
2세아	269.8	20.5	(625)	254.5	28.9	(246)	269.4	19.7	(448)
최소	167.0			170.0			180.0		
최대	409.0			327.0			400.0		
3세아	224.4	28.9	(483)	211.4	28.9	(223)	222.7	30.2	373
최소	120.0			130.0			150.0		
최대	366.0			296.0			355.0		
4세아	211.6		(422)	196.5		(200)	209.1		(328)
최소	120.0	31.6		110.0	30.9		145.0	32.3	
최대	361.0			292.0			361.0		

자료: 서문희 박수연(2008).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별 비용 차등 적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다르게 내는 경우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체적으로 반일제와 종일제 비용으로 납부되고 있었다. 종일제와 2~3시 귀가 아동간에 차등을 두는 경우 평균 금액은 민간보육시설은 40,000원 내외이고 가정보육시설은 0세와 만1세는 70,000원 수준이며 2세는 1/2로 감소한다. 만3세는 30,000원 수준이며 만4세 이상은 22,000원 정도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차이는 급격하게 감소한다.

〈표 II-2-5〉 종일제와 2-3시 귀가 아동간 보육료 차액

단위: 천원(개소)

구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민간					
평균	34.8	43.1	40.5	38.6	39.4
표준편차	20.9	23.3	21.6	20.8	20.2
(수)	(18)	(42)	(72)	(77)	(72)
가정					
평균	76.9	73.2	36.2	29.7	22.5
표준편차	30.6	44.8	12.1	14.6	17.9
(수)	(7)	(16)	(22)	(9)	(6)

자료: 서문희·박수연(2008).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별 비용 차등 적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표 II-2-6〉 종일제와 4-5시 귀가 아동간 보육료 차액

단위: 천원(개소)

구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전체					
평균	39.9	35.8	26.9	27.2	24.4
표준편차	30.1	24.5	18.2	13.4	10.9
최저	10.0	10.0	8.0	10.0	10.0
최고	122.0	100.0	90.0	50.0	40.0
(수)	(15)	(19)	(24)	(15)	(13)
민간					
평균	29.5	34.9	32.7	27.7	24.2
표준편차	15.7	26.3	21.8	12.2	11.1
(수)	(7)	(12)	(14)	(11)	(12)
가정					
평균	43.9	36.5	22.6	26.7	30.0
표준편차	33.8	24.2	14.4	15.4	0.0
(수)	(8)	(7)	(10)	(4)	(1)

자료: 서문희·박수연(2008).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별 비용 차등 적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종일제와 4~5시 귀가 아동간에 보육료에 차등을 두는 경우 보육료 금액의 차이는 평균은 만4세 이상아 24,400부터 0세아 39,900이며, 표준편차는 다소 높아서 0세아의 경우 최대 10,000원, 최대 122,000원이고 만4세아는 최대 40,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유형별 차이는 아동연령에 따라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이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표 II-2-6 참조).

〈표 II-2-7〉 연령별 월평균 보육료

단위: 개소, 천원

구분	반일제				종일제			
	사례수	평균	최대	최소	사례수	평균	최대	최소
0세아								
국공립	2	351.5	383	320	4	318.5	423	191
법인	8	353.3	383	300	9	393.2	488	330
민간/법인의외	53	339.1	389	230	60	375.0	500	250
부모협동	2	280.0	280	280	2	383.0	383	383
가정	203	311.1	450	130	239	378.0	467	190
직장	1	206.0	206	206	1	258.0	258	258
F		5.562***				7.374***		
1세아								
국공립	6	304.2	337	250	8	306.0	377	168
법인	16	295.9	337	200	18	334.8	582	200
민간/법인의외	98	306.0	370	210	102	367.8	3370	250
부모협동	3	256.7	260	250	3	314.7	337	270
가정	231	275.5	400	130	260	334.2	450	80
직장	2	235.0	297	173	5	312.8	337	216
F		10.259***				816		
2세아								
국공립	11	233.3	278	139	12	257.9	318	139
법인	20	253.7	300	191	21	289.1	388	191
민간/법인의외	145	261.4	430	180	144	294.2	600	200
부모협동	5	253.6	278	220	5	299.0	358	270
가정	211	238.1	350	100	239	279.2	380	80
직장	4	183.5	270	69	9	252.3	300	115
F		11.875***				5.250***		
3세아								
국공립	9	177.0	191	155	9	183.2	231	95
법인	15	192.3	295	101	17	226.3	345	170
민간/법인의외	137	227.5	430	150	139	258.5	600	190
부모협동	3	236.7	250	220	2	270.0	270	270
가정	52	232.5	350	120	71	258.8	380	170
직장	4	158.3	240	57	9	193.3	270	95
F		8.209***				9.181***		
4세이상아								
국공립	8	161.9	172	150	8	166.4	212	86
법인	13	183.2	295	160	14	206.6	345	172
민간/법인의외	123	213.6	430	50	129	248.0	600	170
부모협동	2	230.0	250	210	2	255.0	270	240
가정	15	204.7	280	110	24	241.8	380	160
직장	3	118.0	197	50	8	169.3	238	86
F		6.628***				7.464***		

주: \*  $p < .001$ 

자료: 유희정·이미화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음은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조사 결과이다. 0세아의 경우 반일제, 종일제로 보육료를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차액은 36,000원에서 103,000원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협동보육시설은 차액 103,000원으로 다른 시설유형에 비하여 반일제, 종일제 보육료 차이가 크고 가정보육시설은 67,000원이다(표 II-2-7 참조).

1, 2세아의 월평균 보육료는 직장보육시설에서 반일제와 종일제의 보육료에 차이가 가장 크고 국공립보육시설에서 가장 차이가 적다. 전체적으로 2세아의 경우 반일제, 종일제로 보육료를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차액은 24,000원에서 69,000원에 분포한다.

3세아의 월평균 보육료 전체적으로 3세아는 반일제와 종일제의 보육료 차액이 6,000원에서 35,000원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세 이상의 경우, 반일제와 종일제의 보육료 차액이 5,000원에서 51,000원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들의 인식과도 상통한다. 그런데 비용을 기본 보육료에서 깎아주기도 하였으나 보육료를 반일반 보육료로 받고 종일반 아이들에게 보육료를 추가로 징수한 사례도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일제와 종일제 비용이 한 달에 오만원정도 차이가 나요. (부모 2, 서울)

반일제가 약 오천원에서 2만원 정도 낮았던 것 같아요. (부모 8, 강원)

전신적이고 바쁜 오후 2시쯤 가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그게 기본이고, 종일반 하는 애들이 더 있으면 돈을 더 내는 거죠. 한 5만원 정도. 2시 이후에 더 오래 있으려면 시간당 얼마 아니면 한달에 5만원 이런 식으로 더 냈죠. (부모 2, 서울)

4~5세아 경우 보육료를 덜 받고 비교적 일찍 나가는 아이들 중에는 학원 등 보육시설에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특별활동을 받기 위해서인 아이들이 많고, 이 경우에 보육시설에서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오후반이라고 3시 10분쯤에 차량운행 하면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요구에 따라 4-5세 아이의 경우에는 반일반으로 가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큰 아이들은 특기활동이나 문화센터, 학원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반일반 상황에서 돈을 다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좀 감면을 해드리죠. 지금 약3세 기준 4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교사 2, 경기)

### 3. 보육시설 이용시간 실태와 요구

#### 1) 평일 보육시설 이용 현황

##### 가) 등·하원 시각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평일 보육시설 등원시각을 보면 가장 많은 35.9%의 아동이 8시 31분 이후부터 9시까지 등원하고, 다음이 9시 이후부터 9시 30분까지가 26.5%이며 8시부터 8시 30분이 18.3%이다. 8시 이전 등원 비율은 9.4%이다.

하원시각은 오후 2시에서 3시, 3시에서 4시 사이에 집에 온다는 아동 비율이 각각 15.7%, 17.1%이고 22.4%는 4~5시 사이에 집에 온다. 오후 6시 이후는 18.5%이다.

〈표 II-3-1〉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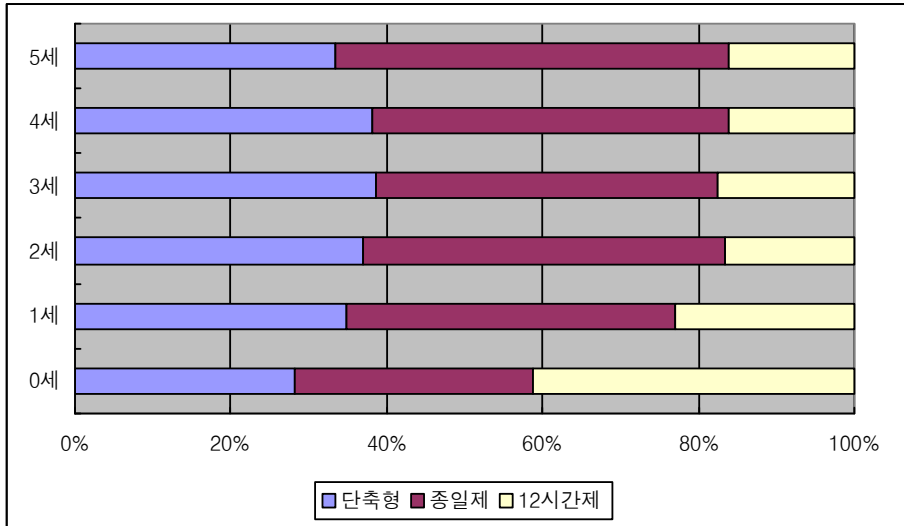
등원		하원	
구 분	전체	구 분	전체
7:30까지	2.1	14:00까지	3.6
7:31~8:00	7.3	14:01~15:00	15.7
8:01~8:30	18.3	15:01~16:00	17.1
8:31~9:00	35.9	16:01~17:00	22.4
9:01~9:30	26.5	17:01~17:30	11.9
9:31~10:00	7.7	17:31~18:00	10.8
10:01 이후	2.2	18:01~19:00	13.1
계(수)	100.0(1,342)	19:01 이후	5.4
		계(수)	100.0(1,342)

자료: 서문희·김은설·최진 안재진·최혜선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기구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특히 아이들의 하원시각을 편의상 세 집단으로 묶어보면, 4시 정도까지가 36.5%이고, 6시 이후는 18.4%이고, 그 중간이 45.2%이다. 이를 편의상 단축형, 8시간 종일제 및 12시간 종일제로 명명할 수 있다.<sup>10)</sup>

이는 아동연령이나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차이가 있다. 특히 영아의 귀가 시간이 상대적으로 늦다.

10) 이 분류 기준은 제5장에서 정책 제안의 기초로 사용.



[그림 II-3-1] 연령별 영유아의 하원시각 유형

<표 II-3-2>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단위: %(명)

구 분	연령구분						모 취업여부			전체
	0	1	2	3	4	5	취업	미취업	모부재	
14:00까지	13.0	6.2	3.7	4.8	0.8	1.0	2.4	4.7	-	3.6
14:01~15:00	13.0	13.5	18.0	16.0	16.9	14.1	7.5	22.7	9.8	15.7
15:01~16:00	2.2	15.2	15.3	17.9	20.5	18.4	9.4	24.4	2.0	17.1
16:01~17:00	13.0	16.3	24.2	20.1	24.0	28.6	19.8	24.9	19.6	22.4
17:01~17:30	6.5	9.6	12.8	14.7	9.1	13.6	11.1	12.0	19.6	11.9
17:31~18:00	10.9	16.3	9.5	8.9	12.6	8.3	18.0	5.4	3.9	10.8
18:01~19:00	23.9	15.2	13.1	11.2	10.6	14.1	21.7	4.6	35.3	13.1
19:01 이후	17.4	7.9	3.4	6.4	5.5	1.9	10.1	1.3	9.8	5.4
계(수)	100.0 (46)	100.0 (178)	100.0 (327)	100.0 (313)	100.0 (254)	100.0 (206)	100.0 (576)	100.0 (714)	100.0 (49)	100.0 (1,342)
X <sup>2</sup> (df)	90.5(35)**						300.0(14)**			

주: \*\*는 p<.01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

## 나) 평일 이용시간

이와 같은 영유아의 집에서 출발하여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으로 이용시간을 산출하였다.11) 산출한 기관 이용시간 분포는 5시간 이하 및 5~6시간이 각각 7.3%, 15.3%이고 9시간 이상은 22.9%이며 11시간 이상도 4.0%이다. 평균은 7시간 45분이고 표준편차는 1시간 59분이다.

<표 II-3-3>은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지역, 아동연령 및 모 취업상태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이를 보면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다. 아동구분별로도 평균시간으로도 영아가 7시간 42분, 유아 7시간 48분으로 조사되어서 영아가 오히려 약간 짧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다.

〈표 II-3-3〉 제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시간

단위: %(명)

구분	지역			아동		모 취업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영아	유아	취업모	미취업	모 부재
5시간까지	8.0	7.1	6.1	12.1	3.9	3.6	10.5	5.9
5~6시간까지	15.1	16.8	12.1	12.8	16.9	8.0	22.0	3.9
6~7시간까지	16.9	17.4	19.4	16.8	18.2	9.9	24.3	9.8
7~8시간까지	16.9	18.3	24.7	16.6	20.6	17.0	21.1	9.8
8~9시간까지	18.2	18.5	16.6	16.5	19.1	21.8	14.9	19.6
9~10시간까지	15.3	10.1	13.8	11.8	13.3	21.7	4.7	21.6
10~11시간까지	6.1	6.8	4.9	8.9	4.3	10.2	1.7	23.5
11시간 이상	3.5	5.0	2.4	4.5	3.7	7.8	0.8	5.9
계(수)	100.0 (490)	100.0 (602)	100.0 (247)	100.0 (553)	100.0 (791)	100.0 (577)	100.0 (717)	100.0 (51)
평균이용시간	7시간 45분	7시간 46분	7시간 44분	7시간 42분	7시간 48분	8시간 38분 <sup>a</sup>	6시간 57분 <sup>bc</sup>	9시간 16분 <sup>d</sup>
표준편차	1시간 55분	2시간 8분	1시간 45분	2시간 8분	1시간 53분	1시간 55분	1시간 31분	3시간 15분
F/t		0.1			-0.9			159.9 <sup>**</sup>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a, b, c, d는 사후검증결과로  $a \neq b$ ,  $c \neq d$ 를 의미함.

자료: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기구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11) 가정 사정 및 이동 거리에 따라서도 등원 및 하원시각이 달라지고, 이동시간이 포함되므로 기관의 운영이나 프로그램 참여 시간에 비해서는 길 것이지만, 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이용시간 분포상으로는 차이를 보인다. 6시간까지 이용한 비율이 영아 24.9%, 유아 20.8%로 영아가 4.1% 포인트가 높다. 또한 9시간이 넘는 비율도 영아는 25.2%, 유아 21.3%로 영아가 다소 높고 10시간 이상은 영아가 5.4%포인트가 높게 차이가 난다. 즉, 영아는 단시간 이용자와 장시간 이용자로 구분되는 비율이 모두 유아보다 더 높다. 표준편차가 영아는 2시간이 넘는다. 영아의 이러한 이용시간 양상은 장시간 이용에 편중되었던 2004년 보육실태조사 이용시간 조사결과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기본보조금 등 정부의 보육료 지원과 이에 따른 지도감독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 아동 8시간 38분, 모부재 아동 9시간 16분이고 미취업모 아동은 6시간 57분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시간 분포로는 6시간까지 이용한 비율이 취업모 11.6%, 미취업모 32.5%이고 9시간 이상은 취업모 39.7%, 미취업모 7.2%이고 모부재 아동은 50.0%이다.

〈표 II-3-4〉 아동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시간

단위: %(명)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b>취업모 아동</b>						
평균이용시간	9시간 49분	9시간 <sup>a</sup>	8시간 19분 <sup>a</sup>	8시간 39분 <sup>a</sup>	8시간 35분	8시간 33분 <sup>a</sup>
표준편차	1시간 45분	2시간 7분	2시간 1분	2시간 4분	1시간 41분	1시간 25분
(수)	(20)	(88)	(149)	(133)	(101)	(84)
<b>미취업모 아동</b>						
평균이용시간	6시간 41분	6시간 39분 <sup>b</sup>	6시간 51분 <sup>bc</sup>	6시간 55분 <sup>bc</sup>	7시간 2분 <sup>bc</sup>	7시간 15분 <sup>bc</sup>
표준편차	2시간 59분	1시간 45분	1시간 28분	1시간 28분	1시간 17분	1시간 15분
(수)	(25)	(83)	(175)	(171)	(140)	(122)
<b>모부재 아동</b>						
평균이용시간	-	7시간 20분	9시간 30분 <sup>d</sup>	9시간 5분 <sup>d</sup>	10시간 24분 <sup>bd</sup>	9시간 1분 <sup>d</sup>
표준편차	-	3시간 1분	39분	1시간 40분	5시간 9분	1시간 38분
(수)	-	(7)	(5)	(12)	(15)	(11)
<b>전체</b>						
평균이용시간	8시간 6분	7시간 51분	7시간 34분	7시간 44분	7시간 50분	7시간 51분
표준편차	2시간 57분	2시간 18분	1시간 53분	1시간 57분	2시간 6분	1시간 30분
(수)	(45)	(178)	(329)	(317)	(256)	(217)
F/t	17.3**	29.6**	31.4**	40.6**	35.1**	27.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a, b, c, d는 사후검증결과로  $a \neq b$ ,  $c \neq d$ 를 의미함.  
 자료: 서문희·김은설·최진 안재진·최혜선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기구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다음 <표 II-3-4>는 아동 각 세별, 모 취업여부별로 이용시간을 산출한 것이다. 취업모의 0세아는 이용시간이 9시간 49분이고, 1세아는 9시간이고 그 이후 연령은 모두 8시간대에 분포하여 이용시간이 감소하는 양상이다.

미취업모의 아동의 이용시간은 대체로 6시간 40분에서 7시간 15분 사이에 분포하여 연령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언급할 사항은 0세아의 표준편차가 거의 3시간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영아 중에서 이용시간이 3시간 정도의 단시간 이용자가 일부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모부재 아동의 이용시간은 연령별 차이가 없이 상당수의 아동이 9시간이 넘게 장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가구유형별로는 한 부모 가족이 평일 이용시간이 8시간 23분으로 다른 유형의 가족에 비하여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길다. 그러나 장애 및 질병아동이나 모가 장애 및 질병인 경우에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일반 아동에 비하여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표 II-3-4 참조).

이용하는 보육시설 운영주체별 차이를 보면 평균시간으로는 직장보육시설이 10시간 22분으로 가장 길고, 다음이 가정보육시설 7시간 57분, 국·공립시설 7시간 51분의 순이고, 법인 및 단체보육시설이 7시간 28~29분으로 비교적 짧다(표 II-3-5 참조).

<표 II-3-5> 제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시간

단위: %(명)

구분	가구유형				아동의 질병·장애			모의 질병·장애		
	핵가족	한부모 가족	확대 가족	조손 가족	장애	질병	건강 양호	질병	장애	건강 양호
평균이용시간	7시간 18분	8시간 23분	7시간 8분	7시간 10분	7시간 32분	7시간 28분	7시간 20분	7시간 32분	7시간 7분	7시간 19분
표준편차	1시간 52분	2시간 39분	1시간 56분	1시간	1시간 33분	1시간 42분	1시간 56분	1시간 39분	1시간 35분	1시간 52분
(수)	(1,660)	(128)	(247)	(11)	(17)	(21)	(2,009)	(19)	(31)	(1,950)
F/t	14.0***				0.13			0.4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a, b, c, d는 사후검증결과로  $a \neq b, c \neq d$ 를 의미함.

자료: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기구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표 II-3-6〉 보육시설 운영주체별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국·공립보 육시설	사회복지 법인보육 시설	기타법인 단체보육 시설	민간보육 시설	가정보육 시설 놀이방	직장보육 시설	부모협동	전체
평균 이용시간	7시간 51분 <sup>a</sup>	7시간 29분 <sup>a</sup>	7시간 28분 <sup>a</sup>	7시간 40분 <sup>a</sup>	7시간 57분 <sup>a</sup>	10시간 22분 <sup>b</sup>	7시간 30분	7시간 45분
표준편차	2시간 7분	1시간 26분	1시간 44분	1시간 53분	2시간 30분	2시간 21분	58분	1시간 59분
계(수)	(216)	(117)	(53)	(801)	(126)	(26)	(4)	(1,343)
F					8.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a, b는 사후검증결과로  $a \neq b$ 를 의미함.

자료: 서문희·김은설·최진 안재진·최혜선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기구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는 큰데, 특히 직장보육시설은 표준편차가 2시간 21분이고 가정보육시설은 2시간 30분으로 편차가 심하다. 이러한 표준편차는 분포를 반영한다. 가정보육시설의 표준편차가 높은 것은 앞에서 제시한 영아의 이용시간의 양극화 현성과도 같은 맥락이다(표 II-3-6 참조).

한편 이러한 평소의 이용과 달리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보육 및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를 질문하였는데 30%가 이러한 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중의 반은 월 1회 미만이고 8.9%는 월 2~4회이며 주 2회 이상이 4.5%이다. 미취업모 자녀보다는 취업모 자녀의 이용시간 초과 빈도가 높다.

〈표 II-3-7〉 기관 이용 영유아의 기관별 이용시간 초과 빈도

단위: %(명)

구분	월1회미만	월 2-4회	주 2회 이상	없음	계(수)
전체	15.8	8.9	4.5	70.8	100.0(1,343)
모 취업	15.6	9.1	6.5	68.7	100.0( 579)
모 미취업	16.5	8.6	3.2	71.7	100.0( 709)
모 부재	5.9	9.8	2.0	82.4	100.0( 51)

자료: 서문희·김은설·최진 안재진·최혜선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기구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한편, 보육시설조사 시설장 응답으로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평일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1일 8-10시간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8시간 미만

25.0%, 10-12시간 미만 24.1%, 12시간 이상 9.4%, 5시간 미만 8.0%로 나타났다(표 II-3-8 참조).

〈표 II-3-8〉 평일 보육시설 이용시간(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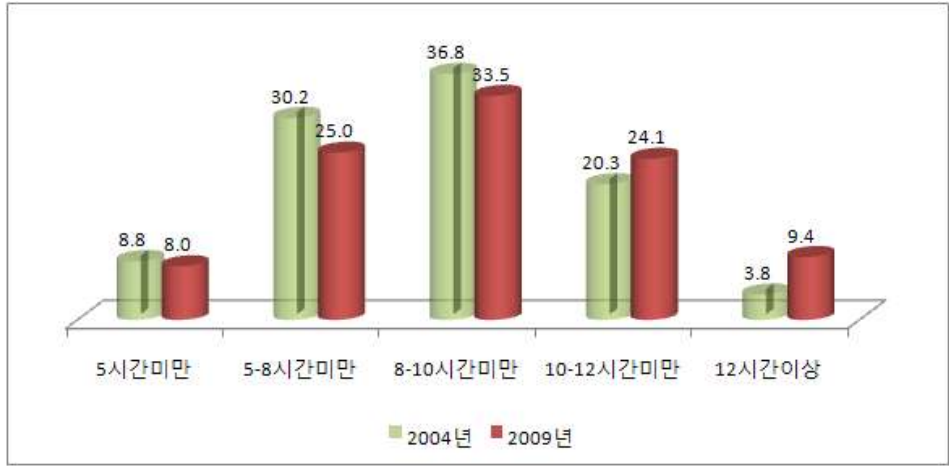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5시간 미만	5-8시간 미만	8-10시간 미만	10-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계(수)
전체	8.0	25.0	33.5	24.1	9.4	100.0(7,522)
시설유형						
국공립	7.6	23.6	32.4	24.6	11.9	100.0(900)
법인	8.3	24.8	34.6	23.9	8.4	100.0(700)
민간/법인의외/ 부모협동	7.4	26.3	34.2	23.5	8.5	100.0(2,771)
가정	8.9	25.8	32.7	23.1	9.5	100.0(2,697)
직장	6.1	15.8	34.3	33.6	10.2	100.0(443)
소재지						
대도시	8.0	24.2	32.6	25.0	10.3	100.0(3,238)
중소도시	7.9	25.6	34.3	23.8	8.5	100.0(3,237)
읍면지역	8.3	26.2	33.8	22.4	9.3	100.0(1,047)
2004년도	8.8	30.2	36.8	20.3	3.8	100.0

자료: 유희정·이미화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체로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들에서 8-10시간 미만 이용이 가장 많았으나, 법인보육시설이 34.6%로 가장 높다. 12시간 이상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들은 국공립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1일 10시간 이상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의 비율이 높았다. 읍면지역의 경우 5시간 미만과 5-8시간 미만의 시간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대도시에서는 10시간 이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지역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를 200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1일 10시간 미만의 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는 2004년에 비해 2009년이 다소 적었으나,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이용 비율은 2009년에 훨씬 높았다. 특히 12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2004년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장보육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II-3-2] 보육시설 평일 이용시간(2004년, 2009년 비교)

한편 보육시설장들은 부모가족유형별로 보육시간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2009년 보육실태조사 시설조사에서는 취업모, 미취업모,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으로 구분하여 귀가 시간대 요구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취업모는 오후 6시~8시까지가 69.8%로 가장 요구가 많은 귀가시간대였으며, 오후 4시~6시까지가 24.1%, 오후 8시~10시까지가 4.4%, 오후 2시~4시까지가 1.2%, 10시 이후가 0.5%의 순이었다. 한편, 미취업모 가정에서는 오후 4시~6시에 귀가를 원하는 경우가 5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오후 2시~4시(37.0%)였으며, 취업모 가정에서 가장 많은 요구가 있었던 시간대인 오후 6시~8시까지는 8.7%에 불과해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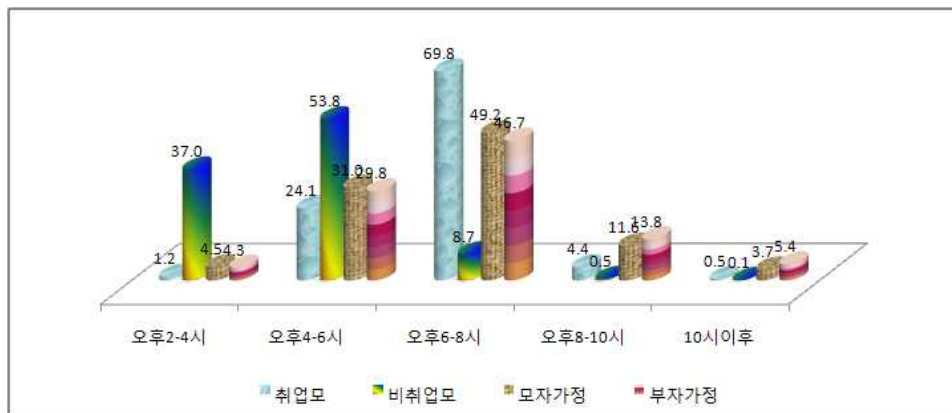
<표 II-3-9> 가구 특성별 보육시간 요구

단위: 개소(%)

구분	오후2~4시까지	오후4시~6시까지	오후6시~8시까지	오후8시~10시까지	10시 이후	계
취업모	36(1.2)	749(24.1)	2,170(69.8)	137(4.4)	17(0.5)	3,109(100.0)
미취업모	1,050(37.0)	1,525(53.8)	246(8.7)	13(0.5)	3(0.1)	2,837(100.0)
모자가정	56(4.5)	387(31.0)	614(49.2)	145(11.6)	46(3.7)	1,248(100.0)
부자가정	38(4.3)	264(29.8)	413(46.7)	122(13.8)	48(5.4)	885(100.0)

자료: 유희정, 이미화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외 모자가정에서는 오후 6시~8시까지 보육시간대를 선호하는 비율이 49.2%로 가장 많았으며, 오후 4시~6시까지가 31.0%, 오후 8시~10시까지가 11.6%로 그 뒤를 이었다. 모자가정이 선호하는 귀가시간대는 취업모 가정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였는데, 모자가정 특성상 보호자가 취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부자가정의 경우에는 오후 6시~8시까지를 요구하는 비율이 46.7%로 가장 높았으며, 오후 4시~6시까지가 29.8%, 오후 8시~10시까지가 13.8%, 10시 이후가 5.4%, 오후 2시~4시까지가 4.3%였다. 전체적으로는 취업모 가정 및 모자 가정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오후 8시 이후의 시간대에 대한 선호가 앞서 살펴본 네 가지 가족 유형 중 가장 많다.



[그림 11-3-3] 가족유형별 보육시간대 요구

이러한 보육시설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인식으로도 일하는 엄마를 위한 이용시간 미충족 요구가 아직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에 맞춘다기 보다 취업한 엄마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애기에 맞추어서 교사의 근무방식을 바꿔서라도 애들한테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부모 4, 경기)

## 2) 이용시간 만족도 및 요구

### 가) 이용시간 만족도

보육시설 이용자의 시설 이용시간 만족도는 등원시각은 전체적으로는 86.4%가 만

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귀가 시간은 71.0%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 등원시각은 너무 이르다가 4.8%이고 너무 늦다는 응답은 8.7%이다. 하원 시각에 대해서는 너무 이르다가 25.8%이고 너무 늦다는 응답은 3.2%이다.

〈표 II-3-10〉 아동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시간 관련 의견

단위: %(명)

보육시간	등원시각			하원시각			계(수)
	만족	이르다	너무 늦다	만족	이르다	너무 늦다	
전체	86.5	4.8	8.7	71.0	25.8	3.2	100.0(1,343)
아동							
영아	83.5	5.4	11.1	68.1	28.8	3.1	100.0( 551)
유아	88.6	4.3	7.1	72.9	23.8	3.3	100.0( 790)
$X^2(df)$		9.8(2)**			5.4(2)		
지역							
대도시	87.0	5.3	7.7	72.6	24.2	3.2	100.0( 492)
중소도시	87.0	5.1	7.8	69.6	27.2	3.2	100.0( 602)
읍면	83.9	2.9	13.3	71.4	25.8	2.8	100.0( 249)
$X^2(df)$		9,6(4)*			1.4(4)		
모취업							
취업	85.8	4.7	9.5	70.1	26.7	3.2	100.0( 576)
미취업	86.9	5.3	7.8	72.3	24.3	3.4	100.0( 717)
모부재	88.0	-	12.0	62.0	36.0	2.0	100.0( 50)
$X^2(df)$		4.5(4)			3.9(4)		
시설유형							
국공립	94.4	1.4	4.2	77.7	20.0	2.3	100.0( 215)
법인	91.4	4.3	4.3	72.6	24.8	2.6	100.0( 116)
법인외	83.0	5.7	11.3	77.4	22.6	-	100.0( 53)
민간	84.8	5.1	10.1	68.8	27.3	3.9	100.0( 801)
직장	80.2	7.9	11.9	66.7	29.3	4.0	100.0( 126)
가정	88.5	7.7	3.8	76.9	23.1	-	100.0( 26)
부모협동	100.0	-	-	100.0	-	-	100.0( 4)
$X^2(df)$		na			na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의미하고, \*\*는  $p<.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귀가 시간은 등원시간과는 달리 너무 이르다는 응답자 25.8%를 정책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12)</sup> 귀가 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

12) 이들이 반드시 가정 사정 상 자녀를 가정에서 적절하게 돌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대부분은 그러할 것으로 추정함.

면, 먼저 아동연령대별로는 유아보다는 영아가 너무 이르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서 약간 비율이 높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과 직장보육시설에서 너무 이르다는 응답이 타 유형의 시설에서 보다 많았다.

#### 나) 희망 이용시간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연령구분과 모의 특성별로 평일 아동의 보육시설에 등원하기를 희망하는 시각 분포를 알아보았다.

평일에 아동이 보육시설에 등원하기를 바라는 시각은 8시 31분 이후부터 9시까지가 38.4%로 가장 많고, 다음이 9시 이후부터 9시 30분까지가 17.8%이며 8시부터 8시 30분이 15.4%이다. 8시 이전에 등원하기를 바라는 아동도 16.7%이다(표 II-3-11 참조).

〈표 II-3-11〉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희망 등원시각

단위: %(명)

구 분	연령구분		지역			모 취업여부			전체
	영아	유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미취업	모부재	
7:30까지	7.4	4.9	4.7	7.8	3.7	10.5	2.0	10.2	5.9
7:31~8:00	12.3	9.6	10.2	11.9	9.5	16.1	6.9	6.1	10.8
8:01~8:30	13.8	16.6	15.3	15.9	14.4	18.7	11.6	32.7	15.4
8:31~9:00	34.7	41.1	37.6	35.4	47.3	32.6	43.2	38.8	38.4
9:01~9:30	17.2	18.3	19.8	17.0	16.0	12.6	23.0	4.1	17.8
9:31~10:00	10.2	9.0	9.8	10.2	7.0	7.2	11.3	8.2	9.4
10:01 이후	4.4	0.5	2.5	1.8	2.1	2.3	2.1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51)	(788)	(489)	(709)	(243)	(571)	(709)	(49)	(1,329)
X <sup>2</sup> (df)	34.1(6)***		19.1(12)			127.0(1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서문희·김은설·최진 안재진·최혜선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기구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영아가 유아보다, 취업모 자녀가 미취업모 자녀보다 일찍 등원하기를 바라는 비율이 높다. 7시 30분까지 집에서 출발하는 아동은 전체적으로 5.9%에 불과한데, 영아가 7.4%로 유아보다 많으며 취업모 자녀가 10.5%이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 자녀가 10.5%이다.



자녀의 희망하원시각은 오후 2시에서 3시, 3시에서 4시 사이가 각각 12.9%, 16.6%이고 20.8%는 4~5시 귀가를 희망한다. 오후 6시 이후는 23.0%이고 7시 이후는 12.2%이다. 6시 이후가 영아 23.8%, 유아 21.0%로 영아가 많고,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취업모 아동 38.8%, 미취업모 아동 10.9%이다(표 II-3-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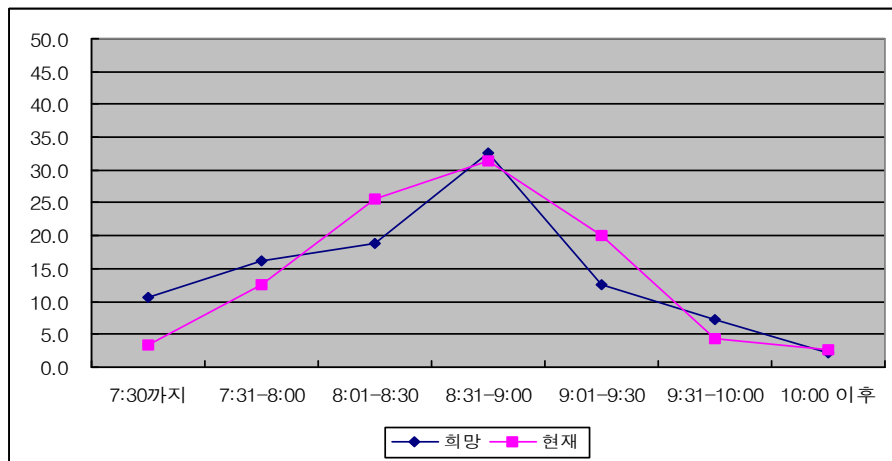
〈표 II-3-12〉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희망 하원시각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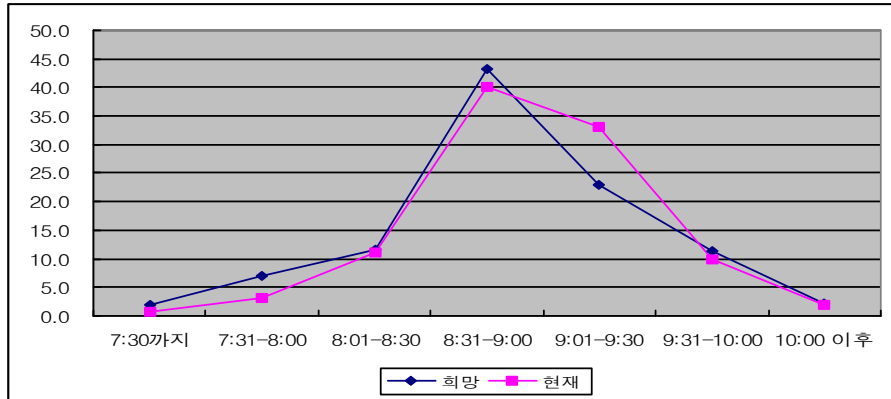
구 분	연령구분		지역			모 취업여부			전체
	영아	유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미취업	모부재	
14:00까지	4.5	2.3	4.1	3.0	2.5	1.9	4.7	-	3.3
14:01~15:00	10.5	14.7	10.7	15.4	11.6	5.4	19.7	2.0	12.9
15:01~16:00	14.9	17.9	18.0	15.7	15.7	9.1	23.7	2.0	16.6
16:01~17:00	19.1	22.0	18.9	19.7	27.3	17.3	23.3	24.0	20.8
17:01~17:30	5.8	7.3	8.4	6.0	4.5	7.7	5.6	10.0	6.7
17:31~18:00	16.9	14.9	14.8	14.7	20.2	19.6	12.1	22.0	15.7
18:01~19:00	14.0	10.3	13.3	10.7	11.6	17.3	6.5	24.0	11.8
19:01 이후	14.3	10.7	11.9	14.7	6.6	21.5	4.4	16.0	1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64)	(1,486)	(782)	(906)	(361)	(858)	(1,124)	(68)	(2,050)
X <sup>2</sup> (df)	24.1(7)**		34.2(4)**			347.1(1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하고, \*\*\*는  $p < .001$ 을 의미함.

자료: 서문희·김은설·최진 안재진·최혜선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기구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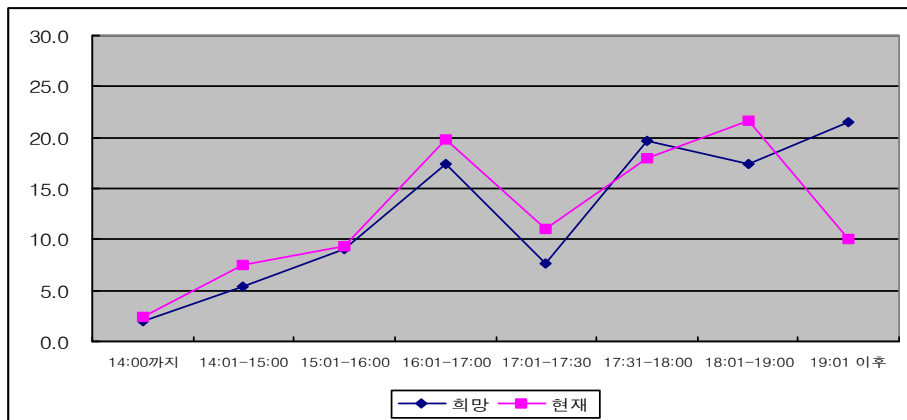
[그림 II-3-4] 취업모 영유아의 현재 및 희망 등원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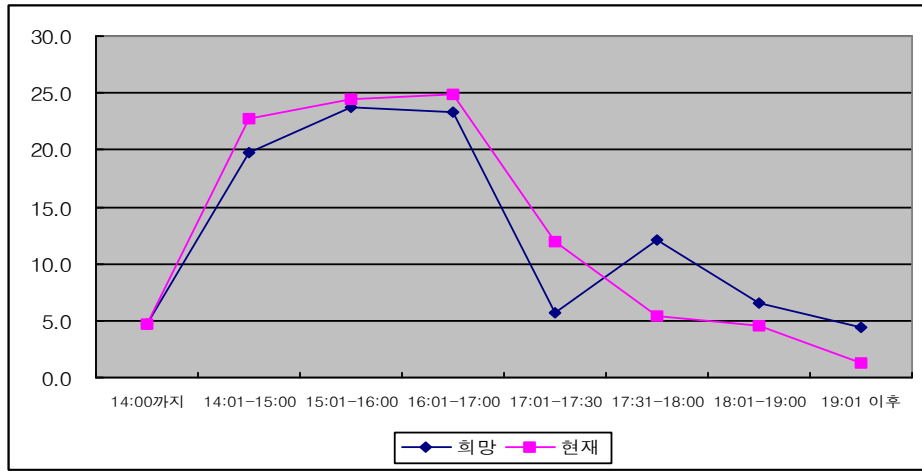
[그림 II-3-5] 미취업모의 영유아의 현재 및 희망 등원시각

모의 취업구분별로 희망등원 시각을 실제 등원시각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취업모의 경우 7시 30분까지가 약 7%, 7시30분 이후 8시까지가 약 5%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그림 II-3-3, II-3-4 참조).

희망등원 시각을 실제 등원시각과 비교해 보면 취업모는 7시 이후 귀가를 희망하는 비율이 실제에 비하여 10% 포인트 이상이 높다. 미취업모의 경우도 5시 반 이전에 자녀 귀가 희망 비율은 실제보다 낮은 반면에 5시 반 이후에 귀가를 희망하는 비율은 실제보다 약간 높다. 이는 심층면접에서도 파악된 내용으로, 부모의 요구에 의하여 최근에 점차 늦어지는 귀가 시간 현상을 반영한다(그림 II-3-5, II-3-6 참조)



[그림 II-3-6] 취업모용 영유아의 현재 및 희망 하원시각



[그림 II-3-7] 미취업모의 영유아의 현재 및 희망 하원시간

다) 단축형 적용시 이용시간 가능성

2008년 조사에서는 반일반인 오전 이용과 유치원의 연장제에 해당하는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시간 이용이 가능할 경우 이를 이용하겠는가를 질문하였다.

<표 II-3-13> 보육시설 오전 운영시간을 공식화할 경우 이용 의향

단위: %(명)

구 분	오전 이용			2-3시까지 이용			전체
	있음	없음	잘 모름	있음	없음	잘 모름	
전체	16.9	79.7	3.4	56.8	39.8	3.5	100.0(3,303)
모취업별							
모취업	10.0	87.2	2.8	46.6	50.3	3.1	100.0(1,113)
미취업	20.8	75.4	3.8	62.2	34.0	3.8	100.0(2,114)
모부재	9.2	90.8	-	54.7	45.3	-	100.0( 76)
$X^2(df)$	72.6(4)**			84.3(4)**			
아동특성별							
영아	22.4	73.6	4.0	62.4	34.4	4.2	100.0(1,743)
유아	10.7	86.6	2.7	50.4	46.9	2.6	100.0(1,559)
$X^2(df)$	88.5(2)**			63.8(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자료: 서문희·김은설·최진 안재진·최혜선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기구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이에 오전 이용에 대해서는 16.9%, 2~3시에 귀가하는 시간 이용에는 56.8%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영아는 오전 이용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22.4%이고 2~3시까지 이용 의사는 62.4%이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는 10% 정도는 오전 이용, 46.6%가 2~3시에 귀가하는 시간 유형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II-3-13 참조).

이러한 의사는 보육시설이 취업모를 위하여 종일제로 운영하지만 많은 취업모라도 부모들은 여건만 되면 자녀를 긴 시간 어린이집에 두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미취업 부모들도 취업 이외의 다른 이유들로 종일제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장들도 오전 이용 요구가 상당수라고 보고 있다.

맛약에 저리가 3시 귀가하면 그래도 60%는 가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요 일하는 여성이 많은 저소득층은 30%로 내려가겠요. 집에 있는 언마들이 많은 신도시쪽으로 갱아보면 60%는 2시, 3시 귀가를 원하시요. (시설장 7, 경기)

#### 4. 전자바우처 지원 방식

현재 보육료 지원은 보육전자바우처를 통해 이루어진다. 보육료가 지원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가 매칭된 총 보육료를 각 시·군·구에서는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리 기관인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 매월 위탁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매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여야 하고 카드사는 보호자가 결제한 금액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은 카드사가 어린이집에 입금한 금액을 카드사에 지불한다.

보육전자바우처의 제공은 개별 어린이집에서 아동별로 보육서비스의 이용현황을 확정하는 것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의 경우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출석일수가 1~5일인 경우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25%를 지원하며 출석일수가 6~10일인 경우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50%,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면 월 정부지원보육료의 100%를 지원하게 된다.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에는 정부지원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종일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에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현재 보육료 지원은 경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12시간 보육을 전제로 이루어지므로 오후 2~3에 귀가하는 아동에 대해 보육료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보육전자바우처 결제를 통해서 불가능하다. 즉 보육료 지원자격이 있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귀가시간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종일(24시간·야간보육료 포함)보육의 이용현황 관리방법은 [그림 II-4-1]과 같다. 개별 어린이집에서는 아동별로 해당 월의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이용현황을 확정하여야 아이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 결제가 가능하다.

시간연장보육은 종일보육 시간 이후인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이다. 시간연장 보육료는 월 최대 60시간까지 지원되며 아래 [그림 II-4-2]와 같이 보육통합시스템에 월별로 이용시간을 입력하고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휴일보육료의 경우도 아래 [그림 II-4-3]과 같이 이용한 휴일일수를 입력하고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용현황은 종일보육,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을 각각 확정하는 방식을 취하나 보육료 결제는 이들 세 가지 확정내용을 토대로 이용료를 계산하여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있다.

No.	아동명	주민등록번호	보육급지원자격	상태	입소일	퇴소일	확정	결제	선택	이용현황	확정일자
1		-3*****	영유아(100%)	현원	2009.04.27		Y	Y	<input type="checkbox"/>	11월이상	2010.03.15
2		-3*****	영유아(100%)	현원	2009.08.31		Y	Y	<input type="checkbox"/>	11월이상	2010.03.15
3		-4*****	영유아(100%)	현원	2009.02.01		Y	Y	<input type="checkbox"/>	11월이상	2010.03.15
4		-3*****	영유아(100%)	현원	2005.02.28		Y	N	<input type="checkbox"/>	11월이상	2010.03.15
5		-4*****	영유아(100%)	현원	2008.03.05		Y	Y	<input type="checkbox"/>	11월이상	2010.03.15
6		-4*****	일반아동	퇴소	2007.11.01	2010.03.07	Y	N	<input type="checkbox"/>	퇴소	2010.03.07
7		-3*****	일반아동	현원	2010.03.04		Y	N	<input type="checkbox"/>	입소	2010.03.15
8		-4*****	일반아동	현원	2009.03.07		Y	N	<input type="checkbox"/>	11월이상	2010.03.15
9		-4*****	영유아(30%)	현원	2008.12.01		Y	Y	<input type="checkbox"/>	11월이상	2010.03.15
10		-3*****	영유아(100%)	현원	2009.04.01		Y	Y	<input type="checkbox"/>	11월이상	2010.03.15
11		-3*****	일반아동	현원	2010.01.04		Y	N	<input type="checkbox"/>	11월이상	2010.03.15
12		-4*****	영유아(100%)	현원	2008.03.01		Y	Y	<input type="checkbox"/>	11월이상	2010.03.15
13		-3*****	일반아동	퇴소	2006.02.20	2010.03.05	Y	N	<input type="checkbox"/>	퇴소	2010.03.05
14		-4*****	영유아(60%)	현원	2008.06.03		Y	Y	<input type="checkbox"/>	11월이상	2010.03.15

[그림 II-4-1] 종일보육료 이용현황 확정 예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어린이집 님

로그아웃 공지사항 업무연락 FAQ 질의응답 I-사랑나눔방 서식공유(법령,지침) 이야기방 가정통신문

이용현황관리

일반 시간연장 휴일보육

작업년월 2010 년 02 월 현원/퇴소아부 전체 반명 전체 검색

담당교사 :

No	아동명	주민등록번호	보육료지원자격	상태	입소일	퇴소일	확정	결제	선택	+이용시간
1		-4*****	영유아(100%)	현원	2008.03.05		Y	Y	<input type="checkbox"/>	47
2		-3*****	일반아동	퇴소	2010.03.10	2010.03.13			<input type="checkbox"/>	
3		-3*****	영유아(100%)	현원	2009.04.01		Y	Y	<input type="checkbox"/>	58
4		-4*****	영유아(100%)	현원	2006.06.12		Y	Y	<input type="checkbox"/>	57
5		-4*****	영유아(100%)	현원	2009.03.01				<input type="checkbox"/>	
6		-3*****	영유아(100%법정)	현원	2008.04.19		Y	Y	<input type="checkbox"/>	60
7		-4*****	영유아(100%)	현원	2005.02.20		Y	Y	<input type="checkbox"/>	59
8		-4*****	영유아(100%)	현원	2007.01.15		Y	Y	<input type="checkbox"/>	58
9		-4*****	영유아(100%)	현원	2007.02.26		Y	Y	<input type="checkbox"/>	60
10		-3*****	일반아동	현원	2009.03.07		Y	Y	<input type="checkbox"/>	53
11		-3*****	영유아(100%)	현원	2010.02.01		Y	N	<input type="checkbox"/>	54
12		-3*****	영유아(100%)	현원	2008.10.06		Y	N	<input type="checkbox"/>	54
13		-4*****	영유아(100%)	현원	2007.02.26		Y	Y	<input type="checkbox"/>	58

[그림 II-4-2] 시간연장보육료 이용현황 확정 예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어린이집 님

로그아웃 공지사항 업무연락 FAQ 질의응답 I-사랑나눔방 서식공유(법령,지침) 이야기방 가정통신문

이용현황관리

일반 시간연장 휴일보육

작업년월 2010 년 03 월 현원/퇴소아부 전체 반명 전체 검색

담당교사 :

No	아동명	주민등록번호	보육료지원자격	상태	입소일	퇴소일	확정	결제	선택	+이용현황
1		-4*****	영유아(100%)	현원	2008.03.05				<input type="checkbox"/>	
2		-3*****	일반아동	퇴소	2010.03.10	2010.03.13	Y	N	<input type="checkbox"/>	0
3		-3*****	영유아(100%)	현원	2009.04.01				<input type="checkbox"/>	
4		-4*****	영유아(100%)	현원	2006.06.12				<input type="checkbox"/>	
5		-3*****	영유아(100%법정)	현원	2008.04.19				<input type="checkbox"/>	
6		-4*****	영유아(100%)	현원	2009.03.01				<input type="checkbox"/>	
7		-4*****	영유아(100%)	현원	2005.02.20				<input type="checkbox"/>	
8		-4*****	영유아(100%)	현원	2007.01.15				<input type="checkbox"/>	
9		-4*****	영유아(100%)	현원	2007.02.26				<input type="checkbox"/>	
10		-3*****	일반아동	현원	2009.03.07				<input type="checkbox"/>	
11		-4*****	일반아동	현원	2008.04.01				<input type="checkbox"/>	
12		-4*****	영유아(100%)	현원	2008.08.01				<input type="checkbox"/>	
13		-3*****	영유아(100%)	현원	2010.02.01				<input type="checkbox"/>	

[그림 II-4-3] 휴일보육료 이용현황 확정 예

2009년 12월분 보육바우처 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종일보육료 <표 II-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의 99.9%가 11일 이상 출석으로 체크하여 보육료를 결제하였으며 6~10일 및 5일이하 출석은 0.06%에 불과하다.

시간연장보육 시간은 종일보육에 비해 골고루 분포되어 있긴 하나 60시간 이상을 이용하였다는 비율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II-4-2 참조).

<표 II-4-1> 2009년 12월 종일(야간·24시간 포함)보육료 결제현황

단위: 건(%)

구분	전체	11일이상	6~10일	1~5일
건수	779,287	778,794	179	314
(비율)	(100)	(99.93)	(0.02)	(0.04)

자료: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2009) 내부자료.

<표 II-4-2> 2009년 12월 이용시간별 시간연장보육료 결제현황

단위: 건(%)

구분	전체	60시간 이상	50~59 시간	40~49 시간	30~39 시간	20~29 시간	10~19 시간	9시간 이하
건수	24,984	7,869	3,155	4,009	2,919	2,750	2,202	2,080
(비율)	(100)	(31.5)	(12.6)	(14.3)	(11.7)	(11.0)	(8.8)	(8.3)

자료: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2009) 내부자료.

## 5. 정책시사점

영유아의 보편적인 보육 이용 실태와 요구도 파악에 근거하여 이용시간의 다양화 추진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 없어 운영시간과 이용시간을 동일 시하는 혼선이 존재하므로, 이용시간의 다양화 및 이에 대한 개념화가 요구된다. 보육시설 운영상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수요자의 보육시간 이용 및 비용에의 선택과 요구도를 반영한 보육유형의 구분이 제시되어야한다.

둘째, 수요자의 이용시간 다양화와 함께 보육 종사자의 법정근로시간의 적용도 이행되어야 하며, 8시간 근무 준수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연장근무 수당, 중장기적으로

종일제, 단시간 근로 교사제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직접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보육시간과 일과 준비 및 사무를 위한 업무시간, 점심 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으로 구분하여 각 시간대의 확보가 구체화하고, 단시간 근로교사제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사의 근로 시간 구성의 지침이 마련됨으로써 보육종사자의 급여 및 수당의 지급이 타당해지고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는 연계성이 확보될 것이다.

셋째, 이용시간에 의한 보육 서비스 유형이 구체화됨에 따라 반 구성과 표준보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공용 지침의 마련이 요구된다. 아동의 다양한 귀가시간에 따라 오후 시간 연령통합의 반 구성과 특별활동 운영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관성 있는 기준 제시가 요망된다.

넷째, 차등 보육료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요구되며, 단축형 및 종일제 유형에서 부모와 정부의 비용 분담 기준이 필요하다. 2009년 보육시설 실태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 수납에 차등을 두는 시설은 전체 18.7%로 2004년 대비 매우 낮아졌는데, 실제 차등 액수에 있어 보육시설과 아동 연령에 따라 편차가 존재한다. 보육시설 입장에서는 운영상의 부담을 안고 수요자 부모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임의로 차액을 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12시간 운영방침에 따른 종일 보육의 대체적 흐름 속에서도 단축형 등 다양한 이용시간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와 선호도는 존재하므로, 아동의 연령과 모의 취업 등의 요건에 따른 수요자에의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실제 보육 이용 시간, 즉 등원 및 하원시간은 크게 오후 4시 이전 36.4%, 오후4~6시 35.1%, 오후 6시 이후 18.5%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조사 결과, 200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오후 2시경에 귀가하는 단축형 적용이 보편적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장시간 보육은 일면 종일제 중심의 보육정책과 비용지원체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영아의 경우 10~11시간 이상의 종일 보육의 비율이 유아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단시간 대 장시간 이용자로의 이용시간 양극화가 나타남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모의 취업 등의 요건에 따른 보육 수요층에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모의 취업, 한부모 가정과 같은 가족 환경과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그 편차가 크다. 대체로 미취업모보다는 취업모의 경우가, 양부모가정 보다는 대부분 취업하는 한부모가정의 경우가 오후 6시 이후의 늦은 하원시각에 대한 선호도와 이용도가 높게 나타나서, 이러한 차이의 반영이 필요하다.



### Ⅲ. 영유아 보육시간 정책 방안 탐색

제3장에서는 시설장과 보육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자료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육시간에 대한 정책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1. 보육시설 운영시간

영유아보육법으로 획일적으로 정한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보육의 장점이나 보육의 기본 원칙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육은 당초 낮 동안에 부모의 보호가 적절하지 못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완적 복지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s)이기 때문에 종일 운영 원칙을 적용하여 왔다. 이러한 원칙은 보육제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도 할 수 있다.

보육시설장, 교사는 이러한 부분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들은 이용시간과 맞추기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가. 시설장·교사 의견

시설장과 보육교사 심층면접에서도 보육시설 운영시간 자체는 현재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다만 이를 강조하다보니 이용시간과 혼동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보육시설의 배경 자체는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교사 1, 서울)

보육시설 기본 운영시간의 조정을 결국 시간을 줄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육이라는 보육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부모들이 교육 쪽으로 자주 갈 것 같고 유치원과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보육이 이겨낼 힘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장 1, 서울)

운영시간이 단축 된다고 하면 빨리 가는 아이 위주로 계획이 되었을 때, 나머지 아동은 어쩌면 계획 없는 상태로 갈수도 있기 때문에..., 일찍 가는 아이들이 원칙인 것처럼 생각하면, 나머지 도리어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피해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시설장 1, 서울)

종일제 운영원칙으로 근무시간이 긴 교사들도 이러한 종일제 보육 운영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근하는 엄마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저희가 그걸 맞춰 드리는 것이 어린이집의 역할이잖아요. 돌아가면서 당직하는 거 힘들지만 일하시는 어머니들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교사 2, 경기 / 교사 4, 경기)

내가 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볼멘 없어요. 내가 하는 일보다는 받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니까 기피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지. 수당이나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선생님들이 더 열의 있게 아이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 4, 경기)

교사나 시설장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종일제 운영은 현재 나름대로 잘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일부 단축형으로 운영되는 시설도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사정에 부모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나. 부모 의견

부모도 대체로 종일제 운영은 현재와 같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취업모는 물론이고 미취업모 역시 자신은 자녀를 일찍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지만 취업모를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오후 7시 이후까지는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나처럼 직장이 없으면 일찍 데리러 가고 그런데, 출퇴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7시 반은 되어야 애를 데리러 가니까.. (부모 2, 서울)

### 다. 전문가 의견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현재와 같은 운영시간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표 III-1-1 참조).

〈표 III-1-1〉 운영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단위: 수, %
구분	적절	부적절	계
수	30	50	80
비율	37.5	62.5	100.0

부적절한 이유로는 실제 필요 이상으로 영유아가 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기관 특성에 따라 12시간 보육이 필요 없는 기관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긴 시간동안 운영이 필요치 않은 기관에서도 운영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이유는 보육시설의 기본 전제가 취업모를 위한 대리 양육기관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본래 목적이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지원이므로 적절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장여성의 양육시간을 지원해 주는 데 의미가 있고, 보육시설의 특수성(종일제 보육)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재의 운영시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경우, 적절한 운영시간을 조사하였다. 시작시간은 오전 9시가 3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8시 30.0%로 나타났다. 오전 7시에 응답한 전문가도 6명 있었다. 운영이 끝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오후 6시가 40.0%로 가장 많았으며, 5시가 16.0%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표 III-1-2, 표 III-1-3 참조).

적절한 보육시설 운영시간은 10시간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26.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8시간과 9시간이 22.0%로 높게 나타났다. 12시간 이상을 응답한 전문가도 18% 있었다(표 III-1-4 참조).

〈표 III-1-2〉 적절한 운영 시작 시각에 대한 의견

						단위: 수, %
구분	7시	7시 30분	8시	8시 30분	9시	계
수	6	4	15	6	19	50
비율	12.0	8.0	30.0	12.0	38.0	100.0

〈표 III-1-3〉 적절한 운영 종료 시각에 대한 의견

단위: 수, %

구분	3시	4시	4시 30분	5시	5시 30분	6시	6시 30분	7시	7시 30분	8시	9시	10시	계
수	1	1	1	8	3	20	4	4	1	4	1	2	50
비율	2.0	2.0	2.0	16.0	6.0	40.0	8.0	8.0	2.0	8.0	2.0	4.0	100.0

〈표 III-1-4〉 적절한 총 운영시간에 대한 의견

단위: 수, %

구분	6시간	8시간	9시간	9시간 30분	10시간	11시간	12시간	13시간	14시간	15시간	계
수	1	11	11	1	13	4	3	3	2	1	50
비율	2.0	22.0	22.0	2.0	26.0	8.0	6.0	6.0	4.0	2.0	100.0

운영시간에 대한 전문가의 답은 시설장이나 보육교사, 부모와의 심층면접에서 나온 응답과 조금 다른 응답 경향이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운영시간을 종일제 보육 이용시간과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3)</sup>

## 2. 종일제 보육 이용 기준시간

### 가. 이용 기준 시간 명시

#### 1) 필요성

##### 가) 시설장·교사 의견

현재 규정이 없이 운영시간과 거의 동일시되고 있는 보육시설 종일제 이용시간을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시설장과 보육교사 대부분 공감하였다.

보육시설장 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보육시간으로 알고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장시간 보육을 희망하는 부모들에게 보육의 원칙적인 이용시간을 알려주고 그 이상은

13) 다음에 살펴본 종일제 보육 이용시간에 대한 전문가의 응답에서도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끝나는 시간을 응답할 비율이 가장 높음. 이는 전문가들의 응답은 운영시간과 종일제 보육 이용시간을 동일시하고 응답한 것임을 알 수 있음.

연장보육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본시간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시간 연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시간 연장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겠지만, 아무튼 기본시간 밖에는 시간 연장으로. 그런데 지금 7시 반이 너무 길어서.. (시설장 11, 강원)

7시 반까지를 5시간까지로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는 시간 연장으로 가면 그러면 부모님들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사들 근무비 추가수당을 지원해주는 것을 지원 안 해주면 거기서 좀 절감이 되겠네요. (시설장 2, 서울)

시간에 대해서 최소한 6시부터 시간 연장을 쳐 주면 하겠어요. (시설장 13, 강원)

또한 교사와 아동 입장에서 12시간 보육시설을 이용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을 있다 보면 아이들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급우일 오후 되면 아이들도 많이 산만해져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서로 힘든 거죠. (교사 2, 경기)

우선은 교사의 입장에서 매일매일 신선한 에너지로 아이들을 대하기 위해서 평온하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관에 오는 것은 사회성도 배우고 학습도 하고 좋은데 그게 너무 장시간이 되었을 때 그게 아이들에게는 문제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교사 6, 충북)

정말 너무 어린 아이들이 너무 긴 시간동안 여기 있으니까, 잠깐 자고 아침에 세수만 하고 나왔어. 왜냐면 아침에 여기에서 죽을 먹이고, 전선 먹이고, 연장보육하면 저녁도 먹으면 그런 아이들은 하루 세끼 중에 언따가 한 끼도 안 챙겨줘요. 그런 아이들 보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짠해요. 애들 딱 차타고 가면 가고 싶어서 딱 내다봐요. 저희 아이들도 종일받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교사 6, 충북)

#### 나) 전문가 의견

전문가도 의견조사 결과 87.0%가 종일제 이용 기준시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여 시설장이나 교사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표 III-2-1 참조).

〈표 III-2-1〉 이용 기준시간 명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수, %			
구분	필요	불필요	계
수	67	10	77
비율	87.0	13.0	100.0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이용시간을 명문화시켜야 부모들도 기본 보육시간을 알고 기관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12시간 보육으로 여기고, 시설과 부모간 갈등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사의 근로를 고려했을 때에도 이용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사자들이 보육이외의 업무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시간과 이용시간은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사의 근로시간 8시간에 맞추어 종일제 시간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무로 간주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소수 이용시간을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의 이유는 이용 근로상황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운영의 융통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으로, 명문화하기보다는 보육시설의 특성이나 지역특성, 보육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보육시간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운영시간과 종일제 이용시간을 일치하는 것도 괜찮을듯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2) 적정 기준시간

### 가) 시설장·교사 의견

그러면 종일제 보육의 기준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겠는가에 대하여 심층면접에서 많은 시설장들은 시작은 8~9시, 끝나는 시간은 5~6시가 가장 많았고, 특히, 9시부터 6시와 9시부터 5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사례가 많았다.

이는 대체로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는 평일 근로시간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시부터 6시는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 것이 라면, 9시부터 5시는 점심식사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달라는 보육교사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하겠다.<sup>14)</sup>

14) 보육교사의 점심식사 시간은 이동 급식시간으로 근무의 연장으로 볼수 있음.

5시정도면, 부모님들이 데려가기도 그렇고, 아침 8시에서 5시까지요. (시설장3, 서울 / 교사 3, 강원)

직장인 부모들은 8시가 낫다고 하고 아님 부모들은 9시가 낫다고 하겠죠. (시설장 3, 서울)

법적으로 노동부까지 하자가 없도록 하려면은 보육시간을 9-5시까지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앞뒤 양쪽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설장 12, 강원)

법적으로 8시 반에서 6시 반 쯤 잡아주고, 먹이고 싶은 애들은 서비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시설장 10, 강원 / 시설장 11, 강원)

시간 연장 시간이 너무 뒤로 가 있어요. (시설장 12, 강원)

#### 나) 부모 의견

부모 심층면접에서도 대부분의 미취업 부모들은 자녀를 오전 9시 정도에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침 9시쯤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 12, 부산)

#### 다)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도 시설장이나 교사, 부모와 마찬가지로 종일제 시작시간으로 가장 좋은 시간을 9시라고 응답한 비율이 51.3%로 가장 높았다. 종일제 끝나는 시간은 오후 6시가 46.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오후 5시를 응답한 비율이 19.2%로 높았다. 종일제 이용 시간도 9시간 35.9%, 8시간 21.8%로 높게 응답하여 시설장이나 교사와 마찬가지로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끝나는 종일제를 가장 바람직하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II-2-2, 3, 4 참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보육시설 운영시간과 종일제 이용시간을 응답한 결과가 유사하게 나왔다.

〈표 III-2-2〉 종일제 보육 시작 시각에 대한 의견

단위: 수, %

구분	6시	7시	7시 30분	8시	8시 30분	9시	10시	계
수	1	4	9	19	4	40	1	78
비율	1.3	5.1	11.5	24.4	5.1	51.3	1.3	100.0

〈표 III-2-3〉 종일제 보육 종료 시각에 대한 의견

단위: 수, %

구분	4시	5시	5시 30분	6시	6시 30분	7시	7시 30분	8시	10시	계
수	3	15	3	36	2	8	7	3	1	78
비율	3.8	19.2	3.8	46.2	2.6	10.3	9.6	3.8	1.3	100.0

〈표 III-2-4〉 종일제 총 보육시간에 대한 의견

단위: 수, %

구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11시간	12시간	13시간	16시간	계
수	1	1	17	28	12	5	12	1	1	78
비율	1.3	1.3	21.8	35.9	15.4	6.4	15.4	1.3	1.3	100.0

한편, 오후 7시 반부터 적용하여 9시 30분을 야간연장보육 지원의 기준시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3배 이상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종일제와 야간연장보육 구분 시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었다(표 III-2-5 참조).

야간연장보육시간이 부적절하다는 경우 그 이유로는 영유아의 저녁식사시간과 보호자의 하원 가능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야간 연장 보육 시작 시간을 오후 6시 전후로 정하여 그 이후는 야간 연장보육에 들어가므로 무조건 저녁식사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과 야간연장은 오후 10시, 11시, 12시 등으로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야간연장반 아동의 하원시간이 일정하지 않은데,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야간연장반 아동의 하원시간을 오후 9시 30분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모순으로 보았다.

즉, 야간연장보육 시작시간은 현재보다 일찍 적용하고 끝나는 시간은 융통성을 두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다.



〈표 III-2-5〉 야간연장보육 시작 및 종료 시각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단위: 수, %

구분	적절	부적절	계
수	18	62	80
비율	22.5	77.5	100.0

### 3) 기준시간 축소의 장단점

#### 가) 시설장·교사 의견

종일제 이용기준 시간을 현재보다 줄여서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 가장 큰 장점은 부모의 인식변화에 따른 운영의 수월성과 교사의 내일 보육 준비시간 확보 등 근무 환경을 들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교사 근무시간의 불일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기본시간만 준다면, 부모도 알고, 이것이 ‘시간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보육을 필요로 하는 시간 외에 또 있는 거라는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설장 1, 서울)

장점은 우선 교사들이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이니까 좀 전문적으로 교육도 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시설장 1, 서울)

수업 준비도 좀 충실해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오늘 ‘가’를 할 것을 생각한다면 좀 더 생각해서 ‘거’까지 하는 자료들이 준비 될 수 있으니까요. (교사 3, 강원)

또한 지역 특성별로 적용시 탄력적이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차량 운행을 여러 차례 하여야 함으로 일찍부터 귀가하기 시작하여야 하고, 또한 계절별로 낮 시간 길이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차이나므로 보육 기준시간도 여기에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7시 반이라는 개념은요. 차량운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고 직장인들이 맡기고 찾아가는 시간에 맞춘 건데, 저희는 농촌이라 차량운행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차량이 한 대니까 똑같이 그 시간에 한꺼번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귀가시간을 일찍 시작해야 하죠. 또 농촌은 해가 뜨고 지는 시간

에 맞추거든요. 여쭙에는 보육을 30분 연장을 해요. 농촌은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더 하거나 덜 하거나 하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설장 12, 강원)

반면에 기존 종일제 보육 기본시간을 12시간에서 축소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실효성에 대한 의문, 실제 적용과정의 어려움과 경쟁력 상실, 가격 조정으로 인한 문제, 부모 반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다. 부모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시간을 줄여서 업무가 줄진 않아요. 평가인증도 생기고..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만 갈 뿐이지 근무시간이 줄진 않아요. (교사 4, 경기)

어느 시간까지는 법적으로 정해놓고 이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면 과연 지금도 아이들이 주는 추세인데 그 부담을 하면서까지 어린이집을 보낼지.... 지금은 보육시설이 7시 반까지 하면서 바드러니까 보내는 거지. (교사 4, 경기)

지금까지 12시간 종일제에 익숙해진 부모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종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7시 반까지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도 계세요... 그건 국가에서 어머님들에게 많이 주시시킨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아요. (교사 4, 경기)

#### 나) 부모 의견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종일제 기준시간이 짧아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경우 현재보다 시간이 짧아지면 이후 시간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이다.

애는 하나 더 낳고 싶은데 일은 해야 하고 애를 맡길 곳은 없고 여기서 시간을 더 줄인다고 하면 저같이 자영업을 하거나 백화점, 마트, 면세점 같은 곳에 다니시는 어머님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부모 4, 경기)

기준 기간 조정에 따른 비용의 증가를 우려하는 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의 이러한 의견은 종일제 기준시간 이후의 연장보육이나 야간보육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보육시설의 기본 운영시간이 이용시간과 동일해 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7시 반까지인데, 만약에 6시가 기준시간이 되면.. 제가 취업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취업을 하게 돼서 일이 6시에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해서 비용을 내게 되는 건데. 그런 지금보다 좋지해지죠. (부모 14, 전남)

## 나. 기준시간 전후 비용

### 1) 시설장·교사 의견

현재 종일제와 야간연장보육의 경계는 저녁 7시 30분이다. 많은 보육시설에서 7시 경에 가는 아동에게도 많은 경우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저녁 연장보육 시작인 7시 30분이 적절한지에 시설장들은 대체로 너무 늦다는 반응이고, 저녁식사나 기준 이외 시간 보육은 비용을 수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도 일부 시설들은 저녁식사 비용을 차량비 등의 명목으로 받고 있다.

법제화가 되어서 5시 이후에 맡길 때마다 시간당 보육료가 얼마가 됩니다 라고 한다면 늦게까지 아이를 맡기는 게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교사 3, 강원)

저는 저녁 먹고 차타고 가는 애들에 대해서는 차량비로 해서 3만원 더 받고 저녁 먹여서 보내는 것으로 하는데 저는 그 기준을 5시 반으로 잡고 있거든요. 5시 반에 저녁식사가 끝나니까요. (시설장 14, 충북)

3시에 간식 먹고 5시면 아이들 배가 고파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시설장 8, 경기)

정부가 저녁 값으로 1,000원으로 가격을 정해 준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못 받던 저녁 식사 값을 받을 수 있게는 되었으나 누구나 쉽게 저녁을 먹겠다고 하면 안줄 수 없게 되어, 기관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 식사가 집보다 맛있다고 이려고 어머니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원장 입장에서 먹음 못하고요. (시설장 14, 충북)

그러나 일부에서는 비용을 1,000원 받고 저녁식사를 주면 취사부의 근무시간도 늘어나야 하고 식단도 다시 짜야하기 때문에 그냥 비공식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한다.

## 2) 전문가 의견

기본 이용시간인 종일제 시작시간보다 더 이르거나 늦은 시간 이용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전문가에게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0%는 이른 시간과 늦은 시간 모두 취업여부에 따라 정부가 차등지원 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모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3% 미만으로 극소수였으며, 부모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1/3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III-2-6 참조). 즉, 기본 이용시간인 종일제 이전이나 이후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업모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필요 이상 보육시설에서 자녀들을 지내게 하지 않고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미취업모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을 하게 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무책임하게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가 발생할 것이므로, 불필요한 시설 이용시간을 줄이고, 시설보육이 필요한 취업모는 정부가 차등보조하여 여성 취업을 활성화시킬 필요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시간 연장에 대한 필요 있을 수 있음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III-2-6〉 기준 시간 이외 보육비용 부담의 대상 의견

단위: 수, %

구분	모두 정부 지원	취업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기본시간 외 이용은 부모 부담	기타	계
수	2	42	24	12	80
비율	2.5	52.5	30.0	15.0	100.0

## 다. 종일제 오후 반 구성과 프로그램

### 1) 시설장·교사 의견

표준보육과정은 오후에 자유선택놀이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오후 프로그램으로 자유놀이 활동만으로는 어렵고 특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자유놀이시간을 더 많이 주면 되지 않을까하지만 외국처럼 한없이.... 근데

우리 학부모들의 정서가 그것도 교육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어린이  
집에서는 놓고만 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어느 사이엔가 과정이 되어  
버렸죠. (시설장 20, 전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학습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7살은  
뽕깡펜 하고, 태권도, 발레 기타 여러 가지 특별활동들을 해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하죠. (교사 3, 강원)

일부 시설장들은 오전이라도 표준보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을 제기하였다. 시설장들은 유치원 당국에서 이를 지침으로 내리고 있음도 알고 있  
었다.

지금 교과부에서는 올해부터 강화하는 게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오전 1  
시 반까지는 무조건 교육과정에 준해 수업을 해라 그 외에는 일체 못 넣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바깥직하다 생각해요. (시설장 20, 전남)

## 2) 부모 의견

부모들은 특별활동을 하기 바라는 부모가 많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특별활동이나  
표준보육과정 이외의 추가 활동에 대해 반대하는 부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  
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특별활동을 이용한다는 부모도 있다.

어차피 오후 시간에는 노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놀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애들도 스트레스 풀고 놀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하니까,  
오후에는 뭐 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부모 2, 서울)

다양한 부모 의견을 고려하여, 특별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아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보육시설이 대부분인 것이 현재 상황이지만 이를 원치 않는 부모도 있다. 따라서 특  
별활동에 대한 수요파악을 하여 특별활동을 원하는 경우와 원하지 않는 경우 모두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3. 단축형 보육 이용 기준시간

#### 가. 필요성

##### 1) 시설장·교사 의견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종일제를 기본으로 하고, 종일제보다 짧은 시간동안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시간단축형인 반일반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부분 동의하였다

시설장 입장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상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원칙에 기초하여 보편성과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

맞벌이를 위주로 해서 사실 종일반을 하는 것인데 많으신 것처럼 반일제와 종일제를 구분지어주시면, 사실 원장입장에서는 말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지침 상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늦게까지 바꾸세요. 이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침 상으로 딱 나누어져 있으면 저희가 말하기가 편하니까. (시설장 16, 충북)

단축형 운영의 가장 큰 장점은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이다. 반 아동 중 일부가 일찍 귀가한다면 남은 아이를 돌보는 것을 좀 더 여유있게 할 수 있으며, 나머지 가용 시간을 내일의 준비를 위하여 보다 더 잘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 아동의 이른 귀가와 무관하게 할 일이 많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교사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반일반이 생기면 교사 분들 근무시간이 줄잖아요. (교사 2, 경기)

교사입장에서는 근무시간 짧아지고 좋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짧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른 것이고... 근무시간은 이 만큼이지라 해야 하는 일의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사 1, 서울)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는 아동의 입장에서 보육시설에 장시간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찍 귀가할 수 있으면 귀가하여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아동에게 가장 좋다는 의견이다.

아이는 적당한 시간에 와서 재밌게 놀고, 집에 가서 얼마나 다른 튜터나 다른 환경에서 재밌게 생활하는 것을.... 학원을 가던지 간에... 환경이 바뀌어서 다른 경험을 하는 게 아이한테 좋지요. 즐거운 것도 한 두 시간이고, 또 배타 노는 것도 한 두 시간이고 선생님과 있는 정서애착도 한 두 시간이지 이렇게 7시 8시에 와서 6, 7시까지 종일 있다는 것은 사실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설장 5, 서울)

아이들만 보면 반일제가 낫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부모님과 함께 지내야 하니까, 지금 아이들이 부모님 보다는 선생님이나 그 밖의 다른 분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교사 2, 경기)

## 2) 부모 의견

부모도 시설장이나 교사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취업에 따라 종일제나 연장보육을 원하는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sup>15)</sup>

종일반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종일반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니깐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맞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전업주부이고 이 시간에 만족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직장을 다녔으면 7시까지 다녔으면 좋겠다 아예 딱 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다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시간에 만족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모 8, 강원)

한편 일부 부모들은 단축형 보육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에 따라 운영기준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단축형이 정식으로 인정되어도 종일반 아동보육에 지장이 없는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반일반 종일반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해요. 그런데 찬성한다고 하면 여건을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나머지 아이들을 잘 보육하도록,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바뀐다면 아이들한테 안 좋을 것 같아요. (부모 14, 전남)

15)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부모들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보육은 오전에는 기관에 가고 2~3시 경에 귀가하여 성인의 보호를 가장 이상적 보육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음(서문희 외, 2008).

### 3) 전문가 의견

전문가도 시설장이나 교사, 부모와 마찬가지로 기본 종일제 이외에 단축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표 III-3-1 참조).

동意하는 이유는 부모의 필요 욕구에 따라 단축형 등 다양한 보육유형을 두어서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하고, 또한 영유아기 가능한 많은 시간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이 아동은 물론 부모역할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다양한 보육시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단축형이 불필요하다고 소수의 응답자들은 대체로 단축형으로 할 경우 유치원과 다른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이는 보육의 전통과 장점의 훼손을 우려한 것이다.

〈표 III-3-1〉 단축형 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수, %

구분	필요	불필요	계
수	62	17	79
비율	78.5	21.5	100.0

## 나. 적정 시간

### 1) 시설장·교사 의견

보육시설을 짧게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을 위하여 단축형을 둔다면, 단축형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이 좋은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시설장과 보육교사 대부분이 하원시간은 2~3시 내외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인한 시설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의 처우 악화가 없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받입제호 갔을 때에 교사의 급여나 근무조건 등이 저하되지 않을 경우에 미  
취업모의 아이들은 세시, 세시 받았전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 6, 충북 /  
교사 7, 충북)

이러한 귀가 시간은 일과활동을 고려했을 때 활동과 연계된다. 어떤 활동을 한 후 까지, 혹은 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가를 보면, 대체로 낮잠 전 후의 시간이다. 낮잠



전이나 후이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낮잠을 안 자고 귀가하는 시간을 선호하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거의 2시 정도를 많하겠죠. 점심 먹고 오후에 바깥놀이 잠깐 하고 그러면 1시 반에서 2시정도 되겠죠. (시설장 3, 서울)

한편 낮잠을 자고 온다는 경우에 의견을 보면, 아동이나 교사가 보육활동을 정리하고 여유를 가지고 귀가하거나 하원시키려면 낮잠을 잔 후가 좋다는 의견이다.

맞약에 종일제 반일제 구분이 된다면 반일제는 낮잠 자고 일어나고 정리하고 항동하고 하면 3시정도... (교사 8, 부산)

애들이 자고 편안하게 오후시간을 보내고 일정한 생활리듬을 가질 수 있는 4시 반. 언마들도 심리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고, 유치원 보내면 밥 먹고 바르 오니까 바쁘대요. (교사 1, 서울)

또한 귀가 시간은 영아와 유아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낮잠을 자는 시간대가 영아가 유아보다 좀 이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2) 부모 의견

부모의 경우 대부분이 귀가시간으로 3시 전후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점심을 먹고 귀가하는 경우 3시 전후가 되기 때문에 3시 전후에 귀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시간을 구분한다면, 한 세 시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낮잠을 자야하니깐요. (부모 1, 서울)

3시 4시 정도에 오면 어린이집에서 뭐 하고 놀았는지 등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저녁 같이 먹고 씻고, 또 집에서 충분히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길지도 적지도 않고 딱 적당한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일반을 맞약에 한다고 하면 그 시간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부모 10, 충북)

제가 집에 있다고 하면 3시 정도까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온. 저도 처음에는 3시까지 왔으면 했어요. 그런데 차량시간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4시 넘어서 올 수밖에 없죠. (부모 14, 전남)

일과활동과 관련하여서 낮잠을 자기 전에 귀가하는 것을 선호하는 부모도 있었다. 오후 3시 이후 귀가하는 경우 점심 먹고 낮잠 잔 후 거의 바로 귀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보육시설에서 낮잠을 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낮잠을 자기 전에 귀가하는 경우 보통 1시 전후를 귀가시간으로 좋다고 생각하였다.

점심 먹고 오는 시간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1시나 2시 정도. 낮잠 자기 전까지. (부모 13, 전남)

어린 애들 점심 먹고 가면 돼요. 낮잠을 1시 반에서 두시 반에 자는데 집에 가면 더 포근한 잠자리에서 자게 되니까. 그런데 양자는 애들이 문제에요. 저는 제가 빨리 데려오는 편이라 집에서 재워요. (부모 6, 경기)

부모들의 의견은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기준이므로 보육시설로 보면 2시 30분경이 된다. 응답자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낮잠 이전 시간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 전문가 의견

동일하게 전문가에게도 단축형 시작시간, 종료시간, 총시간으로 적절한 시간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시작시간으로는 오전 9시가 78.2%로 가장 많았고, 끝나는 시간은 오후 2시가 55.1%로 가장 많았다. 오전 9시부터 하면 5시간이 된다(표 III-3-2, III-3-3, III-3-4 참조).

귀가시간 오후 2시는 낮잠자기 전 시간을 의미하였다. 실제로 낮잠자기 이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73%이다(표 III-3-5 참조).

〈표 III-3-2〉 단축형 보육 시작시각에 대한 의견

단위: 수, %

구분	7시	8시	8시 30분	9시	10시	계
수	1	5	3	61	8	78
비율	1.3	6.40	3.8	78.2	10.3	100.0

〈표 III-3-3〉 단축형 보육 종료시각에 대한 의견

단위: 수, %

구분	12시	1시	1시 30분	2시	2시 30분	3시	3시 30분	4시	계
수	1	20	1	43	1	8	1	3	78
비율	1.3	25.6	1.3	55.1	1.3	10.3	1.3	3.8	100.0

〈표 III-3-4〉 단축형 총 보육시간에 대한 의견

단위: 수, %

구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계
수	1	19	44	11	3	78
비율	1.3	24.4	56.4	14.1	3.8	100.0

〈표 III-3-5〉 단축형 종료 기준 활동에 대한 의견

단위: 수, %

구분	오후 간식 전	오후 간식 후	낮잠 자기 전	낮잠 잔 후	점심 식사 후	계
수	6	6	57	3	6	78
비율	7.7	7.7	73.1	3.8	7.7	100.0

## 다. 반 구성

### 1) 시설장·교사 의견

하나의 보육시설에서 종일제와 단축형을 운영할 경우 반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연령에 따라 종일제 이용아동과 단축형 이용아동을 함께 한 반에 구성하여, 단축형 이용아동이 하원해도 담당 교사는 해당 반을 계속 담당하거나 아니면 단축형 이용아가 하원하면 이후 여러 반 아동을 합하여 연령혼합반을 구성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아니면 처음부터 종일제반과 단축형반을 따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시설장과 보육교사들은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아이를 위해서는 단축형과 종일반을 따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팀 티칭을 제안하는 시설장도 있다.

낮잠을 종일반아이들 반일반아이들 아예 따로 분리해서 재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깐, 종일반 아이들이 남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교사 2, 경기)

저는 만약에 하게 되면 반일반만 따로 하는 것 보다는, 텅텅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일제 선생님이 있고 종일제 선생님이 있다면 같이 계획을 하고, 훨씬 좀 더 질이 높아질 것 같아요. 오래 있는 애들 위주로 구성을 하게 될 것 같고, 근데 반일만 있는 반은 한경도 틀려질 것 같고. 오히려 섞어서 텅텅칭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같은 것을 해도 텅텅칭이 훨씬 덜 힘들거든요. (시설장 1, 서울)

그러나 반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시설의 선택은 보육시설의 규모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시설장의 입장이다.

큰 원에서 반이 여러 개고 반일반이 있으면 괜찮은데 저희처럼 교실이 하나인데는 어느 원도 이 제도가 나와도 활용 못하죠. (시설장 1, 서울)

오후 혼합연령반에 대하여 시설장은 자유선택이나 바깥놀이는 아이가 스스로 수준에 맞게 놀기 때문에 혼합 연령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교사의 측면에서도 연령혼합반을 할 경우 교사 중 일부는 일찍 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꼽기도 하였다.

자유선택이나 바깥놀이는 아이가 스스로 수준에 맞게 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교사가 인지활동 교육 시킬 때, 그럴 때는 선생님이 맞춰서 해줘야겠죠. 지금 혼합 연령이 가능한 연령이 있고 아닌 연령이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 아니면 안 되겠죠. (시설장 2, 서울)

## 2) 부모 의견

부모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단축형과 종일반을 따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단축형 이후 오후 연령혼합반을 찬성하여서,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후 연령혼합반을 찬성하는 경우, 단축형이 끝나고 남은 아이들 수가 많이 남아 남아있는 아이들의 안정을 위해서도 연령을 혼합하여 여러 명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부모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아이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이

나 교사의 근무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반일반 종일반을 섞어 놓으면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안정감이 없을 것 같아요. 중간에 가고 그러니까. (부모 14, 전남)

오후에는 차라니 연령혼합을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얼마 없고 하나까. 선생님도 몇 명 갈 수 있고.. 어차피 오후에는 특별한 활동 같은 건 하지 않고 자유놀이 같은 걸 하나까.. (부모 1, 서울)

### 3) 전문가 의견

전문가의 경우에는 단축형반과 종일제반을 두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종일제와 구분하는 것, 구분 없이 구성하여 늦게 가는 아동을 오후에 담임교사가 계속 담당하는 것, 구분없이 반을 구성하여 늦게 가는 아동을 오후에는 연령혼합반을 하는 것의 세 경우에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났다(표 III-3-6 참조). 이는 부모들의 의견이 다양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반구성은 보육시설의 규모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언급하였다.

단축형과 종일제 구분 없이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의 이유는 종일반 아동을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므로, 아동을 잘 알고 있는 교사가 계속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교사의 업무시간 단축효과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단축형과 종일제 구분하지 않고 오후에는 연령혼합반으로 구성하는 것은 아동들에게 다른 연령과 함께 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혼합연령 구성의 효과도 있고 교사들의 근무시간도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후에 혼합연령을 하는 것은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방임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종일제와 단축형을 따로 구성해야 하는 이유는 독립된 학급을 구성하여 안정된 분위기에서 담당교사가 책임지는 구조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따로 구성해야 일과운영을 충실히 할 수 있고, 영아일수록 교사가 바뀌면 안정애착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한 반에 단축형과 종일반을 같이 구성할 경우, 단축형 이용 영유아가 하원하면 남아 있는 종일제 이용 영유아들이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 III-3-6〉 단축형과 종일제 보육 아동 반 구성 의견

단위: 수, %

구분	구분 없고 담임교사 담당	구분 없고 오후에는 연령혼합	종일제와 구분	기타	계
수	27	23	24	5	79
비율	34.2	29.1	30.4	6.3	100.0

## 라. 프로그램

### 1) 교사 의견

보육 프로그램을 단축형으로 운영할 경우 종일제를 원칙으로 개발한 보육과정에 의거한 프로그램 운영상 애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시설장이나 교사들은 단축형으로 운영하여도 좀 바쁘기는 하겠으나 표준보육과정에 의거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다. 이용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육과정 프로그램의 탄력성과 응용에 대해 언급하였다.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이 꼭 종일반 기준은 아니에요. 하려면 다 하죠. (교사 1, 서울)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져야하는 거죠.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교사 1, 서울)

종일반과 반일반을 지정을 해주시면 그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아이들의 발달에 맞게 개발을 할 수 있겠죠. 지원을 많이 해주면 어떤 교사라도 할 거예요. (교사 5, 부산)

반면에 보육과정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종일반의 시간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지금 현재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입장으론 보면 4-5시까지의 확보가 되어야 현재 표준보육과정을 충분히 운영 할 수 있어요. 종일반 개념으로요. 왜냐하면 부모들의 요구는 같을거거든요. 돈을 내서 보냈으면 받아와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 되던 간에 요구하는 바는 있기 때문에 채워줘야 하는 것은 있어요. (교사 1, 서울)

## 2)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단축형을 둔 경우에도 표준보육과정과 특별활동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종일제 오후는 별도의 표준보육과정이나 단축형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심화·보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단축형은 표준보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종일제 오후에 특별활동을 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의견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표 III-3-7 참조).

이러한 응답은 특별활동에 대한 수요가 많고 보편화된 상황에서 단축형 이용 아동에게는 특별활동 없이 표준보육과정만 운영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다는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표준보육과정 운영이 꼭 종일제 기준이 아닌 보육교사의 의견과 같이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표 III-3-7〉 단축형 보육과정(단축형/종일제 오후)

단위: 수, %

구분	표준과정/특별활동	표준+특별/별도과정, 단축형 심화	기타	계
수	24	38	17	79
비율	30.4	48.1	21.5	100.0

단축형은 표준보육과정에만 기초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는 영유아들의 기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한 표준보육과정을 오전 단축형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단축형 이용 아동은 하원 후 외부 기관에서 특별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단축형 프로그램에 특별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단축형도 표준보육과정과 함께 특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는 특별활동에 대한 수요가 많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종일제만 특별활동 이용이 가능하다면 단축형을 이용하고자 했던 부모나 아동도 특별활동을 하기 위해 종일제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보육시간 연장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단축형 보육과정에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 모두, 단축형이던 종일제이던 시간에 상관없이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일과계획과 프로그램 운영이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

하였다.

## 마. 비용

### 1) 시설장·교사 의견

현재 부모들은 반일제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보육료의 삭감을 요구하고 실제로 일부 시설에서는 보육료를 깎아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육시설 운영자들은 실제로 아동이 일찍 귀가한다고 해서 운영비에 절감요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첫째, 보육시설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나 일의 가지 수는 아이들 수에 상관없다고 한다. 보육시간이 줄었다고 보육에 필요한 기본 세팅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교사의 인건비이다. 교사의 인건비는 반일제로 운영하여도 시간제 교사를 고용하지 않는 한 줄어들지 않는다.

반일제라고 보육료를 낮추는 수는 있어도, 교사는 종일 인건비가 포함 되어야 해요. 자유선택활동 시간만 아이가 일찍 가는 것뿐이거든요. 그렇다고 교사 한 명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장 10, 강원)

2시에 가면 보육료가 더 낮아져야하지 않냐라고 부모들이 말씀은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사들 급여를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시설장 10, 강원)

게다가 대부분 소규모 보육시설의 경우 반일제 아동으로 한 반을 구성하기는 쉽지 않다. 즉, 반일제 이용 아동 일부가 귀가하여도 나머지 아동이 있으므로 교사의 업무 강도는 좀 완화될지 모르지만 역할은 달라지지 않는다.

야간 업무를 줄여달라는 거지 종일제 반일제 구분이 교사에게 큰 의미는 없어요. (교사 5, 부산)

일과 운영에서도 반일제로 아동이 2~3시경 낮잠을 자거나 또는 자지 않고 귀가한다고 할 때,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오후 간식이다.

또 오전 간식과 점심은 먹고 가잖아요. 오후 간식비 정도가 빠지는 거 외에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운영은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시설장 10, 강원)



따라서 비용 수준은 현재 종일제 비용이 그대로 단축형 비용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현재의 보육료도 오후 3시 정도까지의 보육료이고 그 이후는 추가 비용을 못 받고 보육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 종일제 비용이 딱 반일제 비용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시설장 17, 부산)

그리고 보육료는 다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8시간을 해야 하니깐 보육료를 다 받는 입장이구요. 3시까지는 다 받고 3시부터 7시까지는 보육료 추가는 못 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뱉주는 거죠. (시설장 8, 경기)

일부 보육시설에서는 보육료를 반일제로 간주하고 유치원처럼 종일반 비용을 추가로 수납하기도 한다.

## 2) 부모 의견

부모도 시설장이나 교사처럼 단축형 이용 아동들이 하원한다고 하여도 종일제 이용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보육에 필요한 기본 설비나 인력 자체가 바뀌지는 않고, 교사의 인건비는 줄지 않는 데 의견을 일치하였다.

아이들이 3시 밖에 간다고 해서 애들이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몇 명만 갈 뿐이지 뒤에는 거의 애들이 남아 있거든요. (중략) 그런데 비용에 차등을 두면, 선생님들에게 보상할 수가 없잖아요. 오후에 애들이 죽어든다고 월급을 덜 주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 7, 강원)

그러나 종일제와 반일제가 비용을 차등화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오후에 남아 종일제를 이용하는 아동과 단축형을 이용하는 아동은 몇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용 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차등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후에 남은 아이들은 그 다음에 하는 활동이 오전에 하는 애들이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전 비용을 차등화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부모 8, 강원)

저는 종일반이지만, 3시 밖에 가는 애들은 내가 왜 종일반과 똑같은 금액을 내는지 반문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 7, 강원)

## 바. 우려사항

### 1) 시설장·교사 의견

그러나 단축형 보육을 제도로 인정할 경우에 단점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첫째,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단축형으로만 운영하려는 어린이집의 등장이다. 보육이 종일제 원칙임을 천명하여도 현재도 반일 위주로 운영되는 시설이 있는데, 이를 제도로 허용하게 되면 더 더욱 이러한 시설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맛약 오전, 오후 이렇게 선택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일부 원장님들은 오후를 학원개념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보육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비싼 특기활동들을 주로 해서, 나중에는 오후에 부모님들이 특강 좋은 어린이 집으로 다닌다던지 하는 문제도 생길 것 같아요. (시설장 2, 서울)

닫전은 그 지역에 맞는 게 아니라 운영의 편리성을 위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되요. 그리고 수요자 요구를 수용하기 전에 어쩌면 닫전이 드러내면서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원이 정해져 수도 있잖아요, 유건 반일반 한반 종일반 한반 이런 식으로 (시설장 1, 서울)

둘째는 아동에 대한 우려이다. 아동이 일찍 귀가할 경우에 부모들이 가정에 그대로 놔두고 돌보겠냐는 점이다. 이보다는 학원 등에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이다. 이는 보육시설의 특별활동과도 관련이 있어서 남아서 특별활동을 하는 아동도 상당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니면 일찍 귀가하는 아동을 고려하여 특별활동이 오전에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우리 부모들의 인식이 그렇게 좋아서 애들 데리고 놓이터 가서 놓까요? 학원 보내요. 근데 그것을 바꾸려고 준다면 그 돈을 학원에 가서 쓸 것이라고요. 그런 사교육이 더 높아지죠. (시설장 1, 서울)

이렇게 일찍 끝나고 난 이후에 아마 학원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아질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집으로 가서도 요즘은 언니들이 뭔가를 많이 하고자 하세요. (교사 4, 경기 / 교사 5, 부산)

이 후 시간에 사교육 시장은 활성화될 것네요. 애들이 가깝히 집에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가깝히 있게 안두죠, 환경이. (교사 1, 서울)

셋째, 어린이집 수익구조상의 우려이다. 보육료 현실화가 없다면, 현재 비용 중 일부를 삭감하자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재정적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daycare은 원 운영의 수익구조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상태 그대로 두면서 이원화 시킨다고 하면 원의 수익구조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시설장 6, 서울)

영아의 경우 미취업모가 반입제로 이용하고 비용을 받으려 죽인다고 하면 운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그건 너무 부모 편의 중심인 것 같아요. (교사 1, 서울)

넷째, 관리상의 번거로움이다. 보육시설이 이원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관리가 요구된다.

daycare형을 인정할 경우 또 daycare은 아동 등 관리상의 번거로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장 6, 서울)

## 4. 보육료 지원

### 가. 보육의 보편성

#### 1) 부모 의견

대부분의 아동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어머니의 취업과 무관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한다. 핵가족으로 한 두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자녀를 종일 집에서 어머니 혼자 보육하는 것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보육료 지원 정책도 이러한 보편적 보육의 원칙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이용 이유는 부모의 사회활동 이외에 아동의 사회성 발달, 아동의 조기개발 등이 주되고 이외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가 작용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아이가 좀 크니까 새로운 것을 원하고, 놀고 싶고 그러니까.. 애가 요구하는 게 많아지니까 어린이집에 보냈죠. 신신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되면 보내는 게 애도 좋고 나도 좋고 win-win인거죠. (부모 1, 서울)

8살 되면 학교 가듯이 어린이집도 3살 4살 되면 다 가는 것 같아요. 언마가 직장을 다니건 안다니건 떠나서 다 어린이집을 가요. 요즘은. 그것을 가지고 취업모 미취업모를 구분하는 것은 미취업모 보고 너희는 애들 데리고 집에서 놀아라 그거 밖에 안된다고 생각해요. 24개월이 지나면 한계가 있어요. (부모 9, 충북)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이 인사는 또래문화라는 것이 없잖아요. 아파트 놀이터에도 아이들이 없고. 그 아이를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밖에 없으니까. 아이가 어린이집 가고 싶어 나고 해서 보내니까 집에 갈 생각을 안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4,5세가 되면 누구나 다 학교 보내듯이 어린이집에 가기 때문에 그 나이에는 부모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지원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부모 10, 충북)

꼭 보내야하는 것은 아닌데 대세가 많이 가르치고 그런 분위기고, 언마도 집에 있어도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뭐 취업모랑 애를 낳는 것은 아니니까, 미취업모도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애를 자주 낳을 테니까요. (부모 1, 서울)

그래도 분위기가 그런 것도 무시 못 하니까, 애들 사회성도 있고 하니까 (부모 2, 서울)

## 나. 기본시간 차등 지원

### 1) 필요성

#### 가) 시설장·교사 의견

우리나라는 종일제 보육료 지원 기준이나 심지어 야간 보육도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편성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 지원방법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스웨덴이나 호주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육료 지원 기준을 시간 단위로 하여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모 취업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기준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질문하였다

소득계층 이외에 어머니의 취업을 반영한 보육시간 차등 지원에 상당수의 시설장과 교사가 동의하였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때, 무조건 저소득층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서...직장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한다는 거죠. 아니 집에서 놓고 있는 가정을 왜 지원해주냐고..... 차나 지원수당을 주고 집에서 키우도록 하던지... (시설장 2, 서울)

보육정책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저소득이니까 오후에 종일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해야 해인 일하는 여성중심으로..... (시설장 20, 전남)

아주 기본적으로 보육시설의 배경자체는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취업모의 조건을 달아서 취업모의 아이들을 푹타입으로 보육해 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교사 1, 서울)

어린 아이들은 언뜻엔 애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미취업모 어머니들이 힘들어서 아니면 다른 것을 하고 싶어서 늦게까지 내버려두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미취업모의 경우, 반일반을 해서 오후에는 아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교사 2, 경기)

어머니들에게 부담을 시키신다면 가급적이면 그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하실 것 같아요. (교사 4, 경기)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지원을 차등하는 것에 대해 보육시설의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는 교사들의 의견도 있었다.

(미취업모 자녀에 대해) 그렇게 부모 부담으로 돌리면 병설유치원으로 갈 것 같아요. 거기는 무늬니까. 그 쪽으로 가고 대신 학원을 하나 돌리면 보육도 하고 사교육도 하나 더 할 수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보육교 지원을 100% 받았다가 지원이 다운되면 병설유치원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사 4, 경기)

#### 나) 부모 의견

부모들도 취업모와 미취업모는 차등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취업모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만,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의 경우 선택에 의해 보육시설에 보내게 되기 때문에 차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그게 사실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좀 별로겠지만, 사실 어린이집이라는 게 취업모를 위한 시설이니까. (부모 1, 서울)

가정에서 자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엄마하고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쪽은 종일반을 100%지원 받아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반일반을 지원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치상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모 10, 충북)

취업모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상황으로 봤을 때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미취업모 같은 경우는 내 의지에 따라서 볼 수 있지 않겠는 거니까. (부모 4, 경기)

취업 안 했을 때 보면 엄마들이 지원이 되니까 늦게까지 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일찍 찾아가도 싫어도 돈 때문에 1-2시간 더 보게 하지 이럴게도 생각해요. 반일반, 종일반, 시간연장반 이렇게 나뉘지게 되면 취업 안한 엄마들은 경제적으로 좀 더 부담스러워질 거고. (부모 3, 경기)

#### 다) 전문가 의견

전문가도 시설장이나 교사, 부모와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차등화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차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III-4-1 참조).

보육의 본래 목적이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아동에게 지원을 차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소득수준이나 모취업과 같은 가구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취업여부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것이 부적절한 이유로는 취업여부와 소득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취업을 증빙하는 자료가 투명하지 않고 여성의 취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표 III-4-1〉 취업여부에 따라 보육료 지원 차등화 적절성

구분	단위: 수, %		
	적절	부적절	계
수	61	18	79
비율	77.2	22.8	100.0

## 2) 고려사항

시설장들은 모의 취업여부가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데 동의하였으나, 한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양육 환경이 아동 발달을 저해할 요인이 있는 경우 가정보다는 보육시설에서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머니랑 있는 시간보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랑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만큼에 처우가 정책적으로 해주면 좋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루어 질수 없는 상태니까, 서로 힘들죠. (시설장 16, 충북)

저소득층도 마찬가지로요. 사실 저는 이 방인반 제도가 잘 도입되어서 시스템 잘 운영이 된다면은 사실 전 괜찮아요. 바깥쪽해요. 아이를 위해서요.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는 좋은데, 근무하는 교사도 너무 좋겠죠. 좋은데 그 이후의 시간의 케어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이후의 오후 시간의 부모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사회적인 제도 지원은 어떤 것인가가 잘 알아야겠죠. (시설장 5, 서울)

애가 방인이나 방치가 되면 차라리 여기가 나오니까요. 하루 종일 있더라도. (시설장 5, 서울)

## 3) 지원에 차등을 두는 기준

### 가) 교사 의견

종일제 기본시간보다 짧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단축형을 둘 경우, 가능한 보육료 지원 방법들을 생각 할 수 있다. 교사들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둘 경우, 이때에는 취업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취업여부에 의한 차등지원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비취업모는 어떻게라도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알바라도 나간다고 하면 되니까. 저희한테는 알아면서도 한다고 하면 확인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실제한 일하고 있다해도 식당 종업원라 같은 비정규직의 경우 직장의 윤보협도 없고. (교사 3, 강원)

취업을 했다는 것이 업자가 서류상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서류상으로 안 되어 취업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부모 14, 전남)

#### 나) 부모 의견

단축형의 보육료 지원 방법에 대해 부모들은 교사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미취업모는 단축형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취업모는 종일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가 취업 안 했을 때는 반일반으로 보내고 싶었는데 종일반으로 다 바뀌었으니까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미취업모들은 차라리 반일반 식으로 2시까지만 타준다고 해서 예전처럼 15만원만 내라고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은데 종일반이 되니까 40만원 내고 1살짜리 애기 2시에 찾아가라고 하는 면은 쥘 아닌 것 같아요. (부모 3, 경기)

미취업모 업자들은 반일반. 일다니는 업자들은 종일반으로 6시 반 이후에는 시간연장으로 해서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차라리 편하게 나눠져 있으면 취업 안한 업자들도 경제적이고. (부모 3, 경기)

젊은 업자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24개월 미량은 다 지원이 되니까 힘들면 그냥 보내 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있으면서도 딸기는 데가 있고 돈이 안 들어 가니까 편하게. 취업모에게 비중을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부모 5, 경기)

연령에 따라 구분하는 것에 동의하는 부모들도 많았다. 유아는 모두 종일제를 지원하고 영아는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분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유아 구분보다 모의 취업변수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서 지원하는 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하죠. 어린 애들이 늦게까지 업자들 떨어져 있는 것이 쥘 그렇긴 해요. 대략 취업모는 고려해 줘야죠. (부모 1, 서울)

영아는 직장 다니는 업자나 딸기지 안하는 업자는 안 딸길 것 같아요. (부모 13, 전남)

저는 미취업모지만 종일반이 다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일반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직 어린데 너무 업자들 떨어져 있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 2, 서울)



어떤 분들은 유아는 종일반이 낫고 영아는 반일반이 더 낫다고 하시는데, 그게 이상적이긴 해운.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일찍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운. 거의 통 지나면 취업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이 연령보다는 취업모, 비취업모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교사 2, 경기)

#### 다) 전문가 의견

전문가의 경우에도 영아와 유아 구분보다는 취업여부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 같다. 영아와 유아 구분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는 취업유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단축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80% 이상인 대다수가 찬성하였다. 시설장이나 교사, 부모, 전문가 모두 취업여부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 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다(표 III-4-2 참조).

현재는 취업모에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경우에도 부모가 오랜 시간 보육시설에 자녀를 위탁하게 되므로, 제한하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차등지원제도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취업, 미취업 구분이 투명할지는 우려하였다.

한편, 영유아를 구분하여 단축형을 지원하는 데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표 III-4-3 참조). 모든 유아에게 종일제를 지원할 경우, 유아는 종일제로 시설에서 보육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아의 경우 영아보다 양육의 부담이 적는데 취업에 관계없이 모두 종일제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소수이지만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자는 데 찬성하는 이유로는 발달특성상 유아는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기관을 이용한다는 점을 들었다. 유아의 경우 취업유무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점차 무상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III-4-2〉 취업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수, %

구분	매우찬성	조금찬성	보통	조금반대	매우반대	계
수	36	22	5	4	6	73
비율	49.3	30.1	6.8	5.5	8.2	100.0

〈표 III-4-3〉 영유아 구분한 차등 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수, %

구분	매우찬성	조금찬성	보통	조금반대	매우반대	계
수	8	8	8	8	20	52
비율	15.4	15.4	15.4	15.4	38.5	100.0

## 다. 시간제 바우처

### 1) 전체 시간제 바우처

#### 가) 시설장·교사 의견

월간 또는 주당 정부에서 비용 지원이 가능한 이용시간을 바우처로 주고 그 시간 범위까지만을 지원하는 시간제 바우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보육료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시설장과 교사 대부분이 우려를 표명하였다. 우려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근본적으로 전체를 시간제 바우처로 적용하는 것은 아이를 위한 보호와 교육보다는 부모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육을 탁아에 불과하도록 위상을 격하시킨다는 것이다.

저는 반대예요. 무슨 마일리지도 아니고, 이것은 보육의 아니 보육뿐 아니라 유아교육과 영유아기의 교육을 무너뜨리는 생각이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고 봐요. 이것 아이입장이 아니고. 아이들도 어느 낳은 몇 시간 있고 어느 낳은 보내고, 언젠가는 또 시설 바꾸고……. 이건, 부모를 위한 것이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시설장 2, 서울)

시간단위로 비용을 책정하면요..업자들은 파충부나 장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 시간 단위로 하는 거 반대해요. (시설장 21, 전남)

아이와 교사의 관계가 피폐해져요. 관계가 없어요. 깨어있는 시간만 보면 교사들이 부모보다 더 많이 보고 있는데. 좀 각박할 것 같아요. 비인간적인 것 같아요. (교사 1, 서울)

아이들 생각을 해도 시간제하면 그것은 교육도 안 되고, 딱 그대론 탁아

잡아옴. 잠깐 맡겨놔다가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요. (교사 2, 경기)

둘째, 현재 보육시설의 프로그램이 월, 주 및 일일계획에 의하여 반 단위로 이루어지고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시간 중간에 아동을 들고 나면 이러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반의 분위기도, 같이 해야 하는데 중간에 들어오면 멧쩍어하고 수줍어하고 뭐해야하나 고민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영유아 플라자처럼, 실내놀이처럼 놀이기구 넣어주고 무슨 방 무슨 방 막들어서 가는 시스템으로 가야 가능하지 정상적인 보육교실에서는 불가능하죠. (시설장 2, 서울)

교사의 문제죠. 유동성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전달체계 시스템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각각의 시간에 오는 다양한 아이들을 어떻게 포진해서 어떻게 반 구성을 하고 통제할 것인가,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맞게 아이들이 시스템에 적응해서 잘 케어를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독 전 아이를 돌보고 있으면 그 시간에 또 다른 애가 오면 그 전에 온 아이에게 해 준 것처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사와의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서식이나 행정적인 문제도 있겠죠. 아주 많이 달라지겠네요. (시설장 5, 서울)

셋째, 현재의 비용 구조 속에서는 보육시설 운영 면에서 안정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현실성이 낮다고 하겠다. 아동이 보육시설에서 보육 받은 시간이 몇 시간 차이가 난다고 해서 시간 단위로 그 만큼의 비용을 돌려주거나 남겨 줄 수는 없다고 하겠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아동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은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바우처 중심의 지원제도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간제라는 개념이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며칠 안 나왔으니까 낯을 것 아니냐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우처로 한다면 어렵죠. (시설장 14, 충북)

지금에서 시간제로 가면 시간당 보육료가 현재보다는 높아져야 보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턱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받아들여기가 좀 그렇죠.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보육료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 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선택적 제도가 들어서면, 사전적인 여건들이 개선되고 나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지금상

태에서는 안 맞지 않나. (시설장 6, 서울)

넷째, 제도를 도입할 경우 아동시간 관리, 차량운영, 아동관리에서 많은 애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우선 아동이 언제 보육시설로 오고 언제 귀가하는지 시간을 확인하는 일이 보육시설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되며, 이는 기계적 장치 없이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기계를 도입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ID카드를 준다든지 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것지만 대신 일이 하나 더 늘겠죠. 시간연장 같은 경우는 시간을 체크하고 업따가 싸인을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하고, 기계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하자면 싸인 하는 것이 낫죠. (교사 4, 경기 / 교사 5, 부산)

일단 애들이 오는 시간과 가는 시간을 입력을 해야 해요.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하니까, 교사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시설장 5, 서울 / 교사 2, 경기)

시간제 보육은 아동 정원 관리와도 관련이 있어서, 정원 개념은 현시 보육아동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간제로 받으면 정원제는 현시 정원으로 해야죠. (교사 1, 서울)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차 안에 있는 시간을 보육시간으로 볼 경우, 시설이나 차량의 사정으로 차량 운행시간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것을 보육시간에 포함 여부 등이 문제가 된다.

지금 차량운영이, 계속 미스가 나거든은 시간이 바뀌거나, 아이가 제 때 안 나오거나 어머니께서 연락이 안 되거나 시간측면에서 애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운영과 함께) 시간제 적용..이런 것은 좀 힘들어 질 것 같아요. (교사 2, 경기)

#### 나) 부모 의견

부모도 시설장이나 교사와 마찬가지로 시간제 바우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외국 선진국과 같이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비용 책정 및 지원 방법이 시간

제 바우처라고 해도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적 특성이나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보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이와 교사의 관계가 피폐해져요. 관계가 없어요. 깨어있는 시간만 보면 교사들이 부모보다 더 많이 보고 있는데, 쏘 각박할 것 같아요. 비인간적인 것 같아요. (부모 10, 충북)

개인적으로는 향미적으로 원하는 방향이긴 한데, 시간제만 딱딱 끊어서 쓰는 그런 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부모 2, 서울)

부모도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아동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차량운영 시 많은 아동의 각각 요구하는 시간에 맞추어 차량을 운행하기 어렵다.

근데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은 쏘 힘들겠고, 또 그런 게 내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시간을 끊어서 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사소한 것도 전화해서 부탁해요.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오늘은 누구 일찍 갈게요. 누구는 늦게 갈게요. 이거는 힘들 것 같아요. 얼마마다 원하는 게 다르니까, 무슨 인원은 어디서 차량에서 내려주고 오늘은 집에 내려주고 이런 게 복잡하니까, 어린이집은 참 복잡할 것 같아요. (부모 2, 서울)

#### 다) 전문가 의견

전체 시간제 바우처 실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적절하다는 응답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부적절한 이유는 바우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또한 이용하는 부모에게는 좋을 수 있으나 운영하는 시설입장에서는 운영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용 아동 시간 산정 방식이 복잡하여 업무가 과다해지고, 교사채용이나 기타 운영상의 애로점이 클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한편, 전체 시간제 바우처가 적절한 이유로는 모든 가정에서 융통성있게 보육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불필요하게 보육시설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제 바우처가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지금은 시간제 바우처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도 장기적으로는 시간제 바우처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

였다.

전문가 일부는 또한 모든 운영 방식을 시간제로 하기보다는 기본 운영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전후에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보낼 수 있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장기적으로 여러 형태의 시간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표 III-4-4〉 전체 시간제 바우처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단위: 수, %

구분	적절	부적절	계
수	35	42	77
비율	45.5	54.5	100.0

## 2) 기본시간 이외 전 후 바우처

### 가) 시설장·교사 의견

기본 이용시간제보다 더 이른 시간 혹은 더 늦은 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추가 이용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제 바우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시설장과 교사 대부분이 동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현재도 일부 보육시설에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추가 비용을 받기도 한다.

그렇죠. 간식비를 빼더라도 오후에 시간제 교사를 지원을 해주시고 학부모들이 걱정이 부부들 중심으로 정확한 어떤 증거제시 자료가 있는 부모에 대해서는 시간제료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어떤 체계가 세워질 거라 싶어요(시설장 20, 전남)

운영일지에다 귀가시간 쓰고 싸인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부모에게 청구해요. 애들이 자꾸 늦게 가게 돼서 이것을 현금으로 수납하게 했더니 보육료에 묻어서 가는 것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좀 일찍 데려가더라고요. 아까 미천업모는 그렇게 하면 빨리 데려 갖거예요. (교사 1, 서울)

그러나 시간제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서 용어의 변경을 희망한다. 기본시간외 시간제 바우처는 매일 매일 이용시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등 일정 기간 단위로 매일 동일한 보육서비스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되도록 용

어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시간제라는 용어 말고 새로운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제라고 하면 매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생각하니까. (교사 1, 서울)

#### 나) 전문가 의견

추가비용에 대한 시간제 바우처 실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63.8%로 부적절하다는 응답보다 많았다(표 III-45 참조).

추가 비용에 대한 시간제 바우처가 적절하다는 이유로는 종일제 12시간을 기본이 용시간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일정시간 이외 추가 이용시간에 대한 바우처를 맞벌이 가정에 한정함으로써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상대적으로 소수인, 시간제 바우처 적용이 부적절한 이유로는 기본 이용시간 이외 시간에 대한 지원은 이용 인원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서비스 이용 아동별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현재와 같이 시설별로 지원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준 이용시간을 정해 두어야 시설운영시 이를 반영할 수 있고, 영유아들도 안정된 시간리듬에 따라 보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 III-4-5〉 기준 이외 추가 보육시간 바우처 적용 적절성에 대한 의견

단위: 수, %

구분	적절	부적절	계
수	51	29	80
비율	63.8	36.3	100.0

## 5. 교사의 근무와 배치

### 가. 교사 근무

#### 1) 시설장·교사 의견

현재는 보육시설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을 기본으로 운영·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근무시간도 그 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당직교사 교대근무를 통해 12시간 운영에 맞추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운영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등을 고려하여 보육교사의 기본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적당한가를 알아보았다. 교사의 8시간 근무를 기본 근무시간으로 보장해 주기를 원하는 의견이 많았다. 교사의 기본 근무시간 전후의 운영시간에는 다른 교사 투입을 희망하였다.

시간을 6시간 보육을 보장해 주시고, 종일반 교사를 맞들든지, 아니면 연장수당을 줘서 8시간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교사가 투입이 된다든지 그대야할 것 같아요. (시설장 17, 부산)

종일제보다 짧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본인 종일제와 함께 단축형을 둘 경우, 교사 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보육시설 내에서 보조 인력의 활용, 종일제 교사는 단축형 시간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는 추가로 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추가 인력은 배치한 어린이집은 운영이 훨씬 수월하다.

교사 중에 비담임 원감선생님이 계세요. 원장님이 일이 많아서 자리를 채워 주고, 그 덕분에 휴가나 외부에 갈 때 대체를 할 수 있어요. (교사 1, 서울)

그러나 시설장들은 부모들 중에는 교사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 자녀의 안정감, 보육의 연속성 등으로 한 교사가 일관성 있게 보육해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귀가시간이 되어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러 왔을 때 담당교사가 없으면 뭔가 자신의 자녀 보육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한다고 한다.

선생님들이 다른 반 아이들을 흡수해서 하는 걸 꺼려해요. 왜냐하면, 언마들의 연구사항이 많아서 책임을 안 지우려고 하니깐 자기반은 자기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보육시간이 9시간 때론 10시간... (시설장 21, 전남)

애들도 내 담임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후에 가면 없다 이러면 싫어하죠. 언마들도 싫어합니다. (시설장 17, 부산)

## 2) 부모 의견

일부 부모들은 교사의 근무시간이나 교사의 질 등을 고려하여 교대근무나 대체교사를 찬성하는 의견을 많이 나타냈다.



저는 제가 직장을 다녀서 그런지, 한 선생님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는 것은 힘든 것 같아서요. 종일반 끝나고 오후 늦게는 다른 선생님이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모 11, 부산)

부모 입장에서는 저녁시간을 늘렸으면 좋겠지만, 저녁시간을 늘리면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테고.. 선생님을 교대근무를 하면 시간도 늘고 선생님들도 부담도 없고 부모들도 마음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부모 4, 경기)

그러나 시설장들은 교사가 달라질 경우 부모가 싫어할 것을 걱정한 것처럼, 부모들은 또한 연령이 어린 아이들은 교사가 바뀔 경우 아이가 불안해 하거나 안정을 찾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대체교사를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보육아동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입장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린애들은 같은 선생님이어야 덜 불안해해요. 오후에 대체교사 오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큰 아이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부모 12, 부산)

### 3) 전문가 의견

보육교사의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출근은 오전 9시가 76.9%, 퇴근은 오후 6시와 5시가 각각 51.3%, 32.1%로 다수가 응답하였다. 최빈도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 직장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선호한다(표 III-4-6, 표 III-4-7 참조).

〈표 III-4-6〉 보육교사 적정 출근 시간에 대한 의견

단위: 수, %					
구분	7시 30분	8시	8시 30분	9시	계
수	2	9	7	60	78
비율	2.6	11.5	9.0	76.9	100.0

〈표 III-4-7〉 보육교사 적정 퇴근 시간에 대한 의견

단위: 수, %							
구분	3시	4시	4시 30분	5시	5시 30분	6시	계
수	1	4	2	25	6	40	78
비율	1.3	5.1	2.6	32.1	7.7	51.3	100.0

보육교사의 총 근무시간과 보육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은 8시간을 응답한 전문가가 57.5%로 가장 많았고 35.0%는 9시간을 응답하였다. 9시간 응답자는 점심식사 시간에 대한 이해 차이로 볼 수 있다(표 III-4-8 참조).

〈표 III-4-8〉 보육교사 적정 근무시간에 대한 의견

단위: 수, %					
구분	8시간	8시간 30분	9시간	10시간	계
수	46	1	28	5	80
비율	57.5	1.3	35.0	6.3	100.0

〈표 III-4-9〉 보육교사 적정 보육시간에 대한 의견

단위: 수, %							
구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계
수	6	19	33	11	7	3	79
비율	7.63	24.1	41.8	13.9	8.9	3.8	100.0

근무시간 중 아이들을 돌보는 작정 보육시간에 대해서는 6시간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은 교사의 근무시간으로는 8시간이 이상적이며, 이 중 6시간은 아이들을 보육하는 실제 시간으로, 나머지 2시간은 보육활동 준비 및 정리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점심시간은 휴계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표 III-4-9 참조).

## 나. 교사 배치

### 1) 시설장·교사 의견

12시간 보육시설 운영 및 야간보육 등에서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설장과 교사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보조교사 배치에 대한 긍정적 견해가 제시되었다.

저희 보육시설들도 분명하게 오후에 시간제 선생님들이 따르 게셔야 돼요. 그대야 선생님들이 오후에 다음날 자원준비며 수업 준비도 하시고(시설장 20, 전남)

보조교사는 일찍 가고, 나머지는 담임선생님이 계속 바꾸시고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4시까지가 아이들 귀가지도 하고 이런 부분까지가 제일 바쁘거든요. (교사 2, 경기)

보조교사가 교구를 준비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수업준비를 같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수업이 더 풍성해지긴 해요. 선생님의 입무가 확실하게 주어지고 그러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보조교사분들은 책임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적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하찮아하기 나쁜 것 같아요. 제가 함께 해본 결과로는 도움이 되었어요. (교사 2, 경기)

구체적으로 12시간 보육시설 운영 및 야간보육 등에서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단시간 근무 교사로는 6시간 정도를 선호하였다.

부모님 상대하고 뭐 계획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반일제로 한다면 6시간 근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시설장 2, 서울)

그러나 단시간 교사는 책임감 부재와 낮은 업무 분담 및 기여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일부 오전 반일반 교사도 있는데, 이들 단시간 근로자는 대체로 30대 초·중·후반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두고 있다. 이 들은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손이 많이 미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종일 근무는 할 수 없지만, 자격은 있고 자격을 유지는 해야겠고 그래서 급여를 조금 줄여서 받고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퇴근 후 상황에 대한 정보나 이해 부족으로 다른 교사와의 연계가 미숙하고, 책임감 역시 희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반일반일 하고 가시는 분들은 프로그래머나, 그 다음 주 계획하는 과정, 준비물이나 교재교구 만들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소홀하거나 책임의식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준비나 행사 이런 거에 신경을 별로 안 쓰고, 빨리 가려고만 하니까... (시설장 3, 서울 / 시설장 5, 서울)

저희가 예전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니까 야간당직교사를 썼어요. 7시 반에 와서 3~4시간 근무하는 형태였는데 연계가 안됐어요. 특히 영아 같은 경우는 저녁시간이 주는 불안함도 있는데 낯선 사잖... 그래도 늘 그 선생님을 보면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부모와 연계도 안되고... 또 교사의 직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채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낯선 인력들이 반감지 않아요. (교사 1, 서울)

서류적으로 아무 것도 하시는 게 없잖아요. 아이들만 봐주는 거지 업무는 그 대로 인거예요. 아이들 보는 시간이 줄어도 업무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 시간에 와서 근무만 하는 거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가 다쳐도 당일 교사 책임이지 대체교사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없어요. (교사 4, 경기)

그러나 현재 대체교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낮은 업무 부담 및 기여도에 비해 대체교사에 대한 처우가 좋아, 정규교사와 대체교사 간 처우의 비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따라서 대체교사나 단시간 근로교사의 활용보다는 기존교사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주는 금전적 보상이 더 바람직하다는 교사들의 의견이 있었다.

대체교사 선생님에 대한 조건은 좋아졌어요. 저희 보수랑 대체교사 보수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게다가 대체교사는 수당까지 다 드는대요. 대체교사는 사정이 생기면 그 쪽으로 연결해서 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어요. 저 같아도 차라리 자유롭게 대체교사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저희 사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아니다 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 생각하세요. 저희들 처우개선은 잘 안되면서 저희들에 비해서 대체교사 봉급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교사 4, 경기)

있는 예산을 기존교사한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대체교사를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기존교사의 근무조건을 더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인력을 나누시려는 건지. (교사 4, 경기)

## 2) 전문가 의견

정규 단시간 근무 보육교사에 배치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찬성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표 III-4-10 참조).

〈표 III-4-10〉 단시간 근무 교사 배치에 대한 의견

구분	단위: 수, %			
	찬성	반대	기타	계
수	65	10	5	80
비율	81.3	12.5	6.3	100.0

단시간 근무 교사를 배치하면 현재 보육교사의 과다 업무를 해소하여 근무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고, 특히 야간보육의 경우 대부분 돌봄 위주의 보육이 되므로 단시간

근무교사를 배치하여도 무방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단시간 근무 교사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단시간 근무교사의 자격관리, 근무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배치하는 것은 또다른 보육교사 자격 및 전문성 하향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한편, 종일제와 함께 단축형을 둘 경우, 교사대 아동 비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단축형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있더라도 종일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단축형 이용 영유아와 종일제 이용 영유아를 합하여 교사대 아동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 단축형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일찍 하원하므로, 단축형 이용 영유아수를 고려하여 교사대 아동비율을 좀 더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교사대 아동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축형과 종일제 이용 영유아를 합하여 교사대 아동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단축형 이용아동 수를 고려하여 조정해야 한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원칙이 달라지는 것을 우려하였다(표 III-4-11 참조).

단축형과 종일제를 모두 합하여 비율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단축형 유아가 있더라도 그 시간에 필요한 교사대 아동비율은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보육활동의 질이 관리된다는 것이다. 시설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은 단축형 아동이 있어도 영유아 발달관찰, 놀이 계획, 기타 여러 기록 등이 이루어지므로 종일제와 단축형 전체를 합하여 정원으로 보고 비율을 맞추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단축형 이용 아동을 고려하여 교사대 아동비율을 조정하면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단축형 이용 아동을 고려하여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탄력적인 운영시간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교사대 아동 비율을 조정가능하도록 여지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아니면 단축형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있어도 시설 입장에서는 단축형 운영을 기피할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표 III-4-11〉 단축형 교사대 아동 비율에 대한 의견

단위: 수, %

구분	모두 합하여 적용	단축형 이용수를 고려하여 조정	기타	계
수	46	27	7	80
비율	57.5	33.8	8.8	100.0

## 6. 요약 및 시사점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부모, 전문가와의 심층면접 및 의견조사를 통해 살펴본 영유아 보육시간에 대한 정책 방안 탐색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 운영시간에 대해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부모는 아동의 보육이라는 보육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종일 운영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특히, 취업모를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오후 7시 이후까지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종일제로 인해 근무시간이 긴 교사들도 종일제 보육 운영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문가는 상당수가 이용시간과 맞추는 방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현재 운영시간과 거의 동일시 되는 종일제 보육 이용 기준시간에 대해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종일제의 적정 기준시간은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부모 전문가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5~6시를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시설장과 보육교사는 종일제 기준 시간을 현재보다 줄여서 명시하는 것은 운영의 수월성,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지역별 탄력적 운영 등의 장점이 있으나, 실제 적용의 어려움, 부모 반발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부모는 종일제 기준시간이 짧아지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으며, 비용 추가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었다. 종일제는 물론 단축형도 특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전문가는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강조하였다.

셋째, 종일제를 보육시설 이용 기본으로 하되, 종일제 보다 짧은 단축형을 둘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다. 단축형은 부모나 아동의 이용시간 선택권 확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아동발달 측면에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단축형이 정식으로 인정될 경우 그에 대한 운영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축형의 하원시간으로는 시설장과 교사, 부모, 전문가 모두 2~3시경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일과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낮잠 전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낮잠 전을 좀더 선호하였다. 단축형을 둘 경우 시설장과 교사는 단축형과 종일제를 따로 반구성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나, 부모와 전문가는 따로 구성하는 것과 오후 연령 혼합반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보였다. 단축형도 특별활동을 실시하며 표준보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의견이 많았으며, 현재의 종일제 비용이 단축형 비용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단축형이 인정될 경우 시설장과 보육교사는 운영상 편의를 위해 단축형만 운영하려는 보육시설 등장, 일찍 하원시 오전 특별활동 실시, 보육시설 수익구조

상 운영의 어려움, 보육시설 시간 이원화로 관리의 번거로움 등을 우려하였다.

넷째, 시간제 바우처는 우리나라 보육시설 운영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시설장, 교사나 전문가 모두 반대한다. 그러나 일정 시간 이후 보육시간에 대한 시간제 바우처 적용은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행정비용 등 득실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보육료 지원시 어머니의 취업을 반영한 차등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장, 교사, 부모, 전문가 모두 취업모와 미취업모 차등지원에 동의하였으며, 모의 취업여부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적용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전체 시간제 바우처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의 운영이나 아동관리, 우리나라의 정서 측면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하였으며, 기본 이용시간 이외 전후 시간 바우처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추진되면 적절하지만 아직은 시행하기 이르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여섯째, 교사 근무시간은 보육시설 운영시간과 상관없이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단축형을 둘 경우 단축형 이후 시간은 추가 교사 배치를 선호하였으나, 보육의 연속성, 자녀의 안정감, 연령에 따른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나타났다.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단시간 근무 교사와 같은 인력 추가 배치에 대해 시설장, 교사, 전문가 모두 긍정적이거나, 이러한 단시간 교사의 책임감 부재, 낮은 업무 분담 및 기여도 등에 대한 문제도 일부 제기되었다.

## IV. 외국 사례

외국 사례로 스웨덴과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웨덴은 보편적 가족복지 모형으로서의 보육지원정책은 부모의 취업과 이에 근거한 지방정부의 세제수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편적 무상교육으로서의 공보육서비스 수혜 연령을 낮추고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다. 호주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공급이 민간 위주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있어서 정책의 참고 대상으로 삼았던 국가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 모두 보육서비스가 다양하고, 일하는 엄마와 그렇지 않은 엄마를 구별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해외 사례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1. 스웨덴<sup>16)</sup>

#### 가. 보육의 발전 과정 개요

아동양육에 있어 국가와 사회가 '공적 가족(the public family)'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형을 적용하는 스웨덴의 보육정책은 국가가 모든 아동에게 보육을 제공하고 보육비용의 대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편주의 공보육이념에 기반한다. 일하는 권리와 노동력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사회주의 이념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 모두의 공평한 노동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의 실현 과정에서 보육서비스 구축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가족복지정책의 부부취업모델(Dual-earner model)을 통해 부모가 각각 세금을 내어 지방재정수입의 약 70%가 조달되게 함으로써(Ministry of Finance, 2005), 유급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양질의 종일제 공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스웨덴은 노동인구의 절반은 여성으로, 유럽에서 여성 유급노동비율(80%)은 가장 높고 남녀임금격차는 최소수준을 보이며 가족복지정책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양성평등국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OECD, 1999). 이는 남녀 모두 취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일·가정

---

16) SCB (2009). Skolverket(2003/2004/2009), Sverigies officiella statistik (2005/2006), 한유미·오연주·권정윤·강기숙·백석인(2005) 참조.



양립의 원칙과 가사와 양육에 대한 남녀책임 공유의 양성평등이념에 근거한다 (Björnberg & Dahlgren, 2003; Swedish Institute, 2004).

스웨덴은 유아교육의 보편적 적용 욕구에서 1991년 모든 아동의 유아학교 입학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1990년대 경기 후퇴로 실업이 증가하고 부모 소득과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화된 비용이 증가하자 지방정부가 재정부담 완화 수단으로 아동집단의 크기를 늘리고 교사대 아동비율을 줄였으며 입학 아동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미취업모의 자녀에게 유아학교 입학의 불허하는 지방정부가 증가하였고, 휴직 중인 부모들 역시 유아학교 이용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경제가 좋아지면서 1998년에 보육료를 반으로 줄이자는 사회민주당 선거 공약이 탄력을 받아 비용 상한제, 미취업모 자녀를 포함한 보편적인 유아학교, 그리고 4세 이상 무상 정책 등이 개혁정책이 채택된 것이다(Korpi, 2007). 2000년 이전 영유아 서비스는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없는 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여서 지방자치단체 중 약 1/2이 미취업 및 육아휴직 상태에 있는 부모 자녀에게는 이용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2001년 1월부터 취업이나 학업 상태가 아니어도 최대 15시간의 유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고, 2002년부터는 부모가 다른 형제자매 아동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상태에 있는 자녀도 유아학교 입학을 허용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 모든 4~5세 아동에게 연 525시간 무상 교육을 보장하였다.

또한 1998년 8월 일원화된 취학전 교육과정법안(Lpfö 98)의 제정을 통해 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이 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로 이관, 유아교육의 학교교육으로의 편입을 통해 유보통합을 이루고 교육활동과 보육서비스를 아우르는 국가보육서비스를 정립하였다.

## 나. 보육서비스의 유형과 운영시간

스웨덴 공보육제도는 1~5세의 취학전 아동(Pre-school)과 6~12세의 학령기 아동(Child care for school children)에 대한 보육서비스로 구분된다.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종일제 보육시설에 해당하는 피르스콜라(förskola, pre-school)와 시간제 보육시설로 가족지원센터에 가까운 개방형 피르스콜라(öppna förskola, open pre-school), 가정보육(familie daghem, family day-care homes)의 서비스 유형이 있다.

의무교육은 7세에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6세 아동은 무상교육에 해당하는 초등 1학년 준비과정인 유아학급(Pre-school Class)에 다닌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 6세 자녀를 유아학급에 보낼 것인지 7세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종일제 피르스콜라에 계속

다니게 할지 여부를 부모가 결정할 수 있다.

### 1) 피르스콜라

피르스콜라(pre-school)는 스웨덴에서 가장 보편화된 보육시설로, 부모가 취업 또는 학업중이거나 그 외 특별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1~5세의 취학전 아동에게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sup>17)</sup>. 피르스콜라는 대체로 주 5일 오전 6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 매일 11시간 30분 운영시간 기준의 연중 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야간보육서비스 제공도 지자체 책임사항으로 제공된다(Khan, 1984).

그러나 실제 아이들의 종일제 피르스콜라 이용시간은 주당 평균 30시간, 즉 하루 6시간 정도 종일제 피르스콜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과 2002년의 만 1~5세 아동의 주당 평균이용시간을 비교한 분석에 의하면, 이용시간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그리고 동거 및 결혼 부모의 자녀가 한부모 자녀에 비해 이용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8)</sup>

1~5세 아동의 피르스콜라 이용율은 2001년 68%, 2002년 72%로 2000년대 초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전체 아동 평균 8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파른 증가추세는 이후 부모가 실직상태이거나 육아휴직인 경우, 그리고 비취업모 자녀에게도 피르스콜라 이용 기회를 부여한 데에 따른 것이다.

〈표 IV-1-1〉 연령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단위: %

구 분	1세	2-3세	4-5세	6세	6-9세	10-12세
피르스콜라	43%	85%	91%	-	-	-
가정보육	-	6%	-	-	-	-
유아학교	-	-	-	97%	-	-
학령기보육	-	-	-	-	79%	11%

자료: Sverigies officiella statistik(2006)

### 2) 개방형 피르스콜라

개방형 피르스콜라<sup>19)</sup>는 일하지 않는 부모와 가정보육모들과 그 아이들에게 사회

17) 육아휴직의 활성화로 만 1세 미만 아동의 보육률은 0%를 보임.

18) 이는 양부모 가정(two-parent households)의 경우 부모간 양육 분담을 통해 보육 이용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이해됨(Skolverket, 2003).

적으로 어울리고 교육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가정지원센터로, 상대적으로 늦게 보급된<sup>20)</sup> 시간제 보육 유형으로, 비용은 무료이다. 시설마다 일주일 이용횟수와 하루 이용시간 제공이 다양하며, 또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르다. 대개의 경우 아동 보육은 일주일 중 며칠을 시간 단위로 이용하게 된다. 등록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용아동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개방형 피르스콜라의 주된 기능은 부모나 가정보육모와 같은 양육자가 함께 모여 아이를 돌보는 기술을 발전시키며 해당지역 거주 부모들간에 만남과 사회적 네트워킹의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가족지원센터로서의 역할 담당이다. 따라서 종일제 피르스콜라 이용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비취업부모나 육아휴직부모에게 주요한 양육지원체계로 기능해왔다.

1990년대 이후 개방형 피르스콜라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며, 개방형 피르스콜라의 운영시간은 전반적으로 길어지는 추세로, 2003년의 경우 주당 15시간 이하 48.1%, 16~20시간 이하 26.3%, 21시간 이상 25.6%의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Sveriges offciella statistik, 2005).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레저타임센터(fritidshem), 개방형 레저타임센터(öffna fritidshem), 가정보육 등이 제공된다(OECD, 1999).

### 3) 가정보육

가정보육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과 승인을 받은 가정보육모들이 자신의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1~12세의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함께 보육된다. 가정보육은 대체로 공립 피르스콜라의 입소를 기다리는 동안 많이 이용되나, 일부 부모의 경우 소집단의 이웃의 가족같은 친근한 분위기 때문에 자녀를 취학전까지 가정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가정보육에는 12세까지의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보육도 포함되며, 10~12세보다는 6~9세 아동 대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NAE, 2003).

운영시간을 부모의 스케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가능하며, 연중 운영된다. 가정보육아동은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피르스콜라와 같은 방법으로 보육료가 산정된다. 공립가정보육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가정보육모를 고용해서 임금을 주며, 부모는 지자체에 보육비용을 지불한다.

19) 본래 개방형 피르스콜라(open pre-school)는 1991년 공표된 모든 취학전 아동이 피르스콜라에서 보육받을 권리가 있다(förskola för alle barn)는 보편주의 원칙에 의해 종일제 피르스콜라에 자리가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아동이 머무는 임시서비스 시설이었음.

20) 1972년 설립

#### 4) 유아학급

스웨덴 보육사업은 크게 취학전 보육과 학령기 보육으로 나뉘어지나, 만 6세 아동을 위한 무상교육인 유아학급(Pre-school Class)은 학교교육영역에 속한다. 유아학급은 취학전 보육에 해당하던 6세 아동을 학교교육과정(Lpfö 94)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피르스콜라와 초등학교간의 전이단계로서의 교육적 성격이 강한 반일제 프로그램이다. 1998년 이후 각 지자체는 모든 6세 아동에게 연간 최소한 525시간의 유아학급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유아학급은 취학전 무상교육으로 반드시 다녀야하는 의무교육은 아니다. 유아학급의 참여가 자발적 선택사항이지만, 실제 6세 아동의 대부분이 유아학급을 다닌다(표 IV-1-1 참조). 반일제 유아학급 아동중 종일제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은 유아학급의 방과후에 가정보육이나 레저타임센터를 함께 이용한다.

유아학급은 학교교육의 시작으로, 교육법안(The Education Act)과 표준화된 교육과정(Lpfö 98-Curriculum for the Preschool)을 권고하나, 지역별로 지자체 책임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목적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행한다.

#### 5) 기타 사립 보육

스웨덴에서는 공보육이 보편화되어있는 가운데, 대도시지역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들의 사립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수요 또한 적지 않다. 일례로 1988년에 500개에 불과하던 사립 보육시설이 1995년에는 4배정도 증가한 1900개에 이르렀으며, 2003년 피르스콜라 등록 아동의 17%가 사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으로 나타났다. 사립보육시설은 지자체가 허가하며, 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과 보조금을 제공하여(Björnberg & Dahlgren, 2003), 부모 부담 보육료는 공립 보육시설과 차이가 없다(Pestoff & Strandbrink, 2002). 대표적인 사립 보육시설로는 부모협동시설, 자원단체, 직원협동시설, 특수교사조합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대부분 비영리로 운영된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진 부모협동보육이다.

### 다. 보육료 결정 및 지원방식

#### 1) 시간이용에 따른 비용차등의 적용

1999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실제 보육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산출하

였다. 시간제에 따른 보육료 산출방식은 2000년대 약 80%의 지자체가 적용한 방식이었으나, 시간당 보육료 산출방식 시스템하에서 부모들이 보육시간을 개별사정에 맞춰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아동의 보육시간의 편차가 커 피르스콜라의 운영과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시간중심의 보육료 산출은 저소득 가정으로 하여금 실제 필요로 하는 보육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히 보육료가 비싼 지역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더 많았다. 즉 단일한 이용시간 중심의 보육료 지원방식은 아동의 필요와 부모의 수요에 의해서라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이용과 이용시간이 좌우되는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은 주로 한부모 가정이나 시간제 취업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근로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어머니, 그리고 비취업모가 취업하고자 할 때, 보육이용을 어렵게 하여 역으로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보육료 상한제 적용 후 시간제별 보육료를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 2007).

보편적인 보육정책을 추구하는 스웨덴에서도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분하는 정책이 채택되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유아학교 이용과 관련하여 취업, 학업 등의 이유에 따른 제한은 이용하는 시간으로 구분된다. 2006년 현재 부모가 취업, 학업 상태인 경우에 90%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당 40시간, 미취업 및 육아휴직 상태에 있는 부모 자녀는 15시간 이용으로 차이를 두고 있다.

## 2) 보육비용 분담

스웨덴의 보육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sup>21)</sup>, 그리고 부모의 삼자가 분담한다. 1990년 이전에는 국가가 보육보조금을 동일하게 일괄지급하고, 국가-지자체-부모간 보육료 분담 비율을 정하였으나<sup>22)</sup>, 2000년 이후부터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비용의 83%를 부담하는 것으로 부담비율을 다소 완화하고, 1980년 이후 꾸준히 지자체의 보육료 산정 권한을 강화시켜왔다. 1990년대 경기침체와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인해 부모분담비율이 1991년 10%이던 것이 2001년 일시적으로 18%로 증가하기도 했다.

스웨덴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에 대한 재정을 자체 예산과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국가보조금으로 조달한 후, 지자체별로 결정한 보육료 선정방식에 의해 보육료를 부과하고 보육시설을 재정지원 한다. 부모 부담의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과 이용시간에

21) 스웨덴은 290개의 지방정부들로 이루어져 있음.

22) 예: 국가 45%, 지자체 45%, 부모 10%

비례하고 자녀수에 반비례한다. 그러나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은 지자체별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징의 차이로 인해 편차가 큰 편이며, 대개의 경우 지자체는 보육유형, 아동의 연령 및 출생순위, 보육시간, 지자체별 무상보육비용 차감기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1인당 보육비용을 산출한다. 보육 유형별로는 종일제 피르스콜라 보육비용이 가장 높고 레저타임센터가 가장 낮으며, 동일한 보육유형일 경우 아동연령이 어릴수록, 보육시간이 길수록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은 높아진다.

공보육 서비스의 이용은 모든 부모에게 보장되지만, 취학전 보육의 경우 만 3-6세의 아동에게 주당 15시간까지의 보육료가 무상이며, 취업모의 경우 대개 주당 40시간까지 무상보육으로 지원받게 된다.

〈표 IV-1-2〉 스웨덴 보육 비용

단위: SEK 크로나

구 분	아동 1인당 비용	연간 부모부담비율
피르스콜라	105,000 (\$16,200)	8% <sup>23)</sup>
가정보육	84,300 (\$12,600)	10%
학령기보육	32,400 (\$4,900)	16%
모든 형태의 보육 평균	72,500 (\$11,200)	10%

자료: Sverigies officiella statistik(2006).

### 3) 보육료 상한제 도입 및 지자체 자율권의 보장

경기침체로 인해 부모부담 보육료가 오르고, 지자체별로 보육료가 달라 거주지 및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한 보육료를 지불하여 그 편차가 커지자 부모부담 보육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민당 정부는 1999년 9월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를 도입하였다. 2002년부터 정식으로 실시된 보육료 상한제의 기본방향은 자녀가 있는 모든 가족이 가장 저렴한 보육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육료 상한제의 대상은 부모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적용되어 부모의 비용부담이 스웨덴 일반가구 소득의 최대 3% 이내로 부담하도록 한다.<sup>24)</sup> 평균적으로 실제 보육비용의 약 11%정도를 부모가 부담하게 된다.

23) 스웨덴의 경우, GDP의 6.7%가 연간 총 교육비용(피르스콜라, 유아학급, 초중고 대학학제 등)에 투자되고 GDP의 2%가 연간 보육비용에 투자됨. 종일제 어린이집(피르스콜라)의 경우, 아동 1인당 연간 보육비용은 10만5천 크로나(한화 1800만원)에 해당하며, 이 중 부모부담비용은 8%로 연간 한화 약 143만원에 해당됨.

24) <http://utbildning.regereinger.se> 참조

부모비용 상한제 적용은 지역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상한제 적용 이전에는 비용으로 월 6,000크로나를 지불하는 가정도 있었으나 적용 이후 지역간의 격차는 상당 부분 완화되어 2003년 조사에서는 최대 2,280크로나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한제 적용 후 시간제별 보육료를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 2007).

보육료 상한제에서 부모부담 보육료와 지원방식의 결정권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갖는다<sup>25)</sup>. 지자체 중심의 보육정책 변화는 사회서비스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기금을 수령하여 지역적 요구를 민감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에 의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1990년대 이후 보육재정의 부담 증가로 인한 전반적인 보육의 질 저하와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표 IV-1-3〉 월 보육 비용 상한선

단위: SEK 크로나

출생 순위	1~5세	6~12세
첫째아	소득의 3%이내 (최대 1260 크로나, \$195)	소득의 2%이내 (최대 840 크로나, \$130)
둘째아	소득의 2%이내 (최대 840 크로나, \$130)	소득의 1%이내 (최대 420 크로나, \$65)
셋째아	소득의 1%이내 (최대 420 크로나, \$65)	소득의 1%이내 (최대 420 크로나, \$65)
네째아	무료	무료

자료: Sverigies officiella statistik(2005).

지자체의 보육제공 의무와 독자적 재정 권한 및 다양한 고려 요인<sup>26)</sup>에 의한 보육료 결정권에도 보육비용이 어떠한 경우에도 대개 월140유로(한화 약 20만원대)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게 보편적이다. 지자체 보육료는 부모가 보육시설에 직접 납부하지 않고 지자체에 낸다.

보육시간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운영방식의 실례를 살펴보면, 예테보리 지자체는 취학전 보육에 연령별 차등을 두어 3세를 기준으로 보육료 상한액을 다르게 산출하였으며, 아동의 출생순위와 부모의 소득을 동시에 고려하나 보육시간을 고려하지 않

25) 즉 보육료 상한제의 실행으로 상한선 이하에서 보육료를 설정할 것으로 권고되나, 각 지자체는 보육료 상한제 실행여부부터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또한 장애인 무상보육 등 특수보육을 요하는 수요자에 대한 무상 서비스 제공여부도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보육서비스와 교육 행정 전반이 지자체(municipalities)의 자율권한과 책임에 의해 운영됨이 주요 특징임.

26) 부모의 취업, 자체 예산 책정, 자녀출생순위, 보육이용시간, 부모의 소득, 지자체별 시간당 보육서비스 비용 산정 및 무상보육지원액 등임.

는다. 반면 나카 지자체는 연령별 차등 없이 보육시간과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을 적용한다. <표 IV-1-4>에서와 같이 나카 지자체에서는 피르스콜라와 가정보육시설에서 첫째아가 주당 20~25시간 보육을 받으면 850크로나(\$132), 주당 26~35시간은 950 크로나(\$147), 주당 36시간 이상이면 1260크로나(\$ 195)의 보육료를 지불하게 된다.

<표 IV-1-4> 2004년도 나카 지자체의 부모부담 월보육료

단위: SEK 크로나

주당 보육 시간	아동 출생순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취업 및 학업의 경우	20-25시간	850	567	283	0
	26-35시간	950	633	317	0
	36시간 이상	1260	840	420	0
육아휴직 및 실직의 경우	기본 주당 15시간	850	567	283	0

자료: Nacka Kommun(2004), 한유미 외(2005),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재인용.

#### 4) 무상보육의 확대

스웨덴 정부의 2009년 예산안에 의하면, 지금껏 시행해온 보편적 무상교육의 연령을 기존 만 4세에서 만 3세로 낮춰 2010년 7월부터 보다 많은 아동들이 보육시설 교육활동의 수혜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0년 2억 2천만 크로나(한화 375억원), 2011년 이후부터는 연간 4억4천만 크로나(한화 750억원)로 추정되며,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따라서 스웨덴은 부모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만 3세 이상의 모든 아동에게 주당 15시간, 연간 525시간, 즉 1일 3시간 이용 반일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미취업부모의 경우 그 이상의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부모가 부담하게 되며, 취업시에는 종전대로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의 피르스콜라 이용에 있어 부모소득과 이용시간, 그리고 자녀수 등에 따라 부모부담 이용비용과 지원비용이 지자체별로 책정된다.

#### 5) 바우처 제도의 도입 및 보육서비스이용권의 확대

국가와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및 보육료 지원방식에서 보수당과 시민당의 정책적 입장에 차이가 있었다. 보수당이 부모들이 바우처 시스템의 이용을 통해 보육시설을 결정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식을 추진했다면, 시민당은 공보육 체계의 확립을 통해 부모의 선택과 상관없이 공립보육시설에서 균등한 양질의 보육을 받도록 하는 시설



별 지원방식을 추진하여왔다. 오랜 기간 시설별 지원방식을 통한 공보육체계 구축의 토대 위에, 1991년 보수당 집권 이후 지자체는 공·사립 보육시설에 동일한 보조금 지급과 재정지원의 골격을 유지함과 동시에, 바우처 시스템의 도입으로 과거 시설간 균등지원에서 아동별 지원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꾸어 아동수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변화하였다. 2006년 우파 연합의 (재)등장으로 보육서비스와 활동의 선택권과 사립보육의 증가 등 서비스의 다양성을 강화하였으며, 부모들에게 보육 바우처 제도를 통해 어떤 형태의 보육서비스도 선택 가능토록 하여 이를 통해 시설간 경쟁을 유도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 각 가정과 아동에 맞는 최적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꾀하고 있다(Govt. Bill 2008-09: 115).

스웨덴에서의 바우처 제도란 지역주민이 지자체에 납부한 세금을 지자체가 다시 아동에게 바우처로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하며, 바우처 방식을 통한 아동별 지원이란 보육비용이 부모가 선택한 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위해 시설로 직접 지원함을 의미한다. 바우처 지급은 보육유형, 주당 보육시간, 아동의 연령, 가구 순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며, 대상은 1~10세 자녀를 둔 부모로서 취업 또는 학업, 구직 중인 경우에 한한다.

지방분권화와 함께 진행된 가장 큰 보육정책의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부모들의 선택권 강화에 기반한 바우처 제도의 도입으로, 각 지자체 내에서도 어느 지역단위에 속하느냐에 따라 시설유형별로 상이한 지원을 받는 등 각 구역은 서비스 이용의 우선순위기준과 서비스 비용 및 세율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자체는 보다 공보육 유형을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즉 시설 및 비공식적 가정 보육서비스와 가족내 보육원조, 그리고 다른 형태의 학습활동참여에도 그것이 양질의 수준을 유지하고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보육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바우처 제도는 2009년 7월부터 적용되었으며, 연간 2억 2천만 크로나(한화 375억원)의 지자체 예산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균등한 가정보호수당(a flat-rate home care allowance)이 책정되고, 보육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통해 부모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가정보육모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스웨덴 보육의 보편성은 보육유형의 다양성 인정과 수용을 전제로 한다. 일반적인 공공보육시설에 국한된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정보육과 시설 보육, 부모 협동보육, 가정보육모 고용, 혹은 여러 가족들이 자신의 집에서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이른바 세 가족 보육(three-family day care) 등과 같은 비공식적 사적 보육의 형태에 대해서도 동일한 바우처 규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2004년 나카 지자체의 지원을 살펴보면(한유미 외, 2005) 가정보육모의 자녀는 주당 20시간의 피르스콜라 이용권을 지급받으며, 실직 부모는 취학전 자녀의 경우 주당 최대 15시간의 바우처를 지급받는다. 부모가 다시 고용되거나 학업을 시작하면 더 많은 시간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육아휴직중인 부모는 바우처를 받을 수 없으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는 이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요건을 우선순위에 맞게 고려한 지원방식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방식의 변화 역시 모두 지자체의 자율권에 근거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여전히 시설별 지원방식을 고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모부담 보육료가 저렴하며, 교사인건비 등의 비용이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시스템하의 바우처 제도임을 주지해야 한다.

## 라. 보육과정의 운영 프로그램

1996년 보육업무의 교육부 이관에 따라 취학전 교육과정(Lpfö 98)이 제정되었으며, 유아학급이 도입되었다. 이후 스웨덴 보육은 교육법과 학교법에 근거한 교육제도의 일부로서 국가수준에서 만들어진 취학전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으나, 피르스콜라 교육과정은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위한 놀이위주의 교육과정으로, 매일 2~3번의 식사가 제공되는 등 교육활동과 돌봄 기능 모두가 제공되는 보육과정의 특성을 지닌다.

모든 보육활동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취학전 교육과정은 아이들이 스웨덴 사회의 기본 가치를 습득에 도움을 준다는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약자와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연대책임, 양성 평등 및 인간 평등의 가치,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생명의 불가침성 등을 보육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명시하고 있다(한유미 외, 2005).

스웨덴 보육과정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아동이 사회참여와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아동관을 가지고 있어, 피르스콜라 환경내에서 아이들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집단의 가치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보육 과정을 추구한다. 둘째, 아동기를 아동의 호기심과 자발성, 아이디어가 중시되어야 하는 시기로 보고, 다른 나라와 달리 보육과정을 이후 학교생활과 성인기에 대한 준비도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않는다. 따라서 피르스콜라는 상위의 교육목표와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를 추구하나, 프로그램내에서는 개별 아동의 성과를 구조화된 도구나 형식적 평가도구로 측정하지 않고 비형식적 방법을 통해 평가한다. 셋째, 과거 취학전 보육

이 공익 서비스로 개념화되어 국가수준에서 표준화되고 표준화된 시스템을 추구하였다면, 지방분권화의 진행과 함께 지역적 특색과 요구에 따른 다양성의 수용, 보육 유형의 다양성 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장애아를 위한 특수 프로그램과 이주아동을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 외,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몬테소리, 레지오 에밀리아 등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벗어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보육내용의 다양화도 꾀하고 있다. 넷째, 스웨덴의 가치 중심의 보육 목표는 개별 가정과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유관 사회서비스 및 교육 기관과 가정의 참여 및 협조를 필수요건으로 내포하고 있다.

### 1) 종일제 피르스콜라 프로그램

피르스콜라 취학전 교육과정은 종일제 보육과정의 교육 가치, 과제, 교육목표와 지침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취학전 교육과정의 주요 목표는 사회를 위한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덕목의 지향, 놀이 및 창의성 중심의 보육과 교육의 통합과정, 아동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환경에의 영향력 중시, 부모의 연대의식과 참여, 유아학급 및 학교교육 그리고 기타 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 등의 국가수준의 5개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과 같이 구분된 영역별 교육내용과 방법을 기술하기 보다는 아동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 위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피르스콜라에서는 아동을 교육하고 발달을 돕는 과정에 보다 초점을 두며 아동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

각 지자체는 국가수준 취학전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지역만의 특색있는 자체 보육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또한 개별 교육시설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지자체의 학교교육계획(local school plan)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사가 수립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의해 실행한다. 궁극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방법의 선택 및 개발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주어지는, 비구조화된 교육과정의 특징을 지닌다(Skolverket, 2005). 대체로 스웨덴의 종일제 보육 활동의 특징은 비형식적이고 비구조화되어 있으며, 야외 활동 및 자유 놀이 중심의 자연친화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중심(한유미 외, 2005)으로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테보리 지자체의 피르스콜라 일과 운영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교육법에 근거한 교육

과정의 실행이나 돌봄과 놀이위주의 교육활동으로써 보육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을 여전히 많이 띄고 있으며, 교사 재량으로 구체화되고 운용될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표 IV-1-5 참조).

〈표 IV-1-5〉 예테보리 지자체 피르스콜라 일과시간표 예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6:30 - 8:00	등 원	13:00 - 14:30	오후 실외놀이
8:00 - 9:00	아침식사	14:40 - 15:00	오후 간식
9:00 - 10:30	오전 실외놀이	15:00 - 16:00	책읽기 및 조용한 놀이 낮잠자기
10:30 - 11:00	대집단 활동	16:00 - 18:00	귀 가
11:00 - 11:30	자유선택활동		
11:30 - 13:00	점심식사		

자료: Göteborg Kommun(2004). Bilaga 3 Resursfördelning SDV 2004. Göteborg, Sweden. 한유미 외 (2005).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재인용.

## 2) 시간제 개방형 피르스콜라 프로그램

개방형 피르스콜라는 시간단위로 제공되어 비형식적인 특성이 강하며 부모나 가정보육모 등 양육자가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부모와 가정보육모와 아이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부모와 가정보육모가 아이들을 돌보는 양육기술과 지식, 정보를 공유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장소와 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방형 피르스콜라는 해당 지역 거주 부모들에게 긴밀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도와주며, 이를 위해 프로그램내에 아이들을 위한 식사는 물론 부모에게도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모자보호, 보건서비스 기구 등과 연계하여 부모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등, 부모참여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sup>27)</sup>

또한 많은 지역에서 가정보육시설의 교육적 기능의 보완 및 종일제 피르스콜라의 대안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또한 아동이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진학할 때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른 보육기관 및 학교, 즉 종일제 피르스콜라, 레저타임센터, 학교 등과 협력하고 있다.

27) 구체적인 예로 교사의 시범하에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영아를 위한 마사지 프로그램, 외부 미술강사가 방문교육하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미술활동, 교사의 시범에 의해 실시되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운동 프로그램, 부의 퇴근후 아이를 맡기고 참여할 수 있는 모의 저녁시간 운동 프로그램, 직업상담원과 연계하여 부모가 직업을 갖도록 안내하는 프로젝트의 실시 등임.

개방형 피르스콜라는 국가수준의 취학전 교육과정(Lpfö 98)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프로그램 내용이 지자체마다 달라 지역적 특성이 많이 반영되고 다양하다. 국립교육 원으로부터 운영 지침을 권고받는데, 선택적 시간제 운영이 지나치게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같은 연령대의 아동들이 같은 시간대에 오도록 일관된 보육과정을 권고하고 있다.

### 3) 가정보육

가정보육의 경우 피르스콜라와 같은 구체화된 프로그램의 제공 없이 자신의 자녀를 집에서 돌보듯 돌봄 위주의 서비스 제공이 주를 이룬다. 1980년대 이후 많이 줄긴 하였으나, 시골의 경우 적잖은 부모들이 가정보육을 취학전 보육으로 선택하고 있어, 교사자격과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구조적·형식적 개선의 필요성 논의가 활발하다.

### 4) 유아학급

만6세가 되면 초등학교 안에 개설된 무상교육 유아학급(preschool)에 다닐수 있는데, 유아학급은 의무교육은 아니나 국정 의무교육 교육과정(Lpo 94)을 따라야하며 보육이 아닌, 학교 교육의 영역에 포함된다(NAE, 2003). 피르스콜라와 초등학교의 전이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8년 이후 지자체는 모든 6세 아동에게 무상으로 최소한 연간 525시간의 하루 3시간의 반일제 유아학급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유아학급은 피르스콜라와 초등학교의 중간 단계로 유아학급의 교육목표는 아동의 발달과 학급의 자극하고 학교교육의 기초를 제공하는 초등학교 준비과정으로서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아동은 유아학급의 반일제 무상교육과 전후 보육을 병행하여 이용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가 생애초기 유아교육 및 보육의 교육적 기능을 더욱 강조하여 2009-2011 3개년 계획으로 총 6억 크로나의 예산(한화 1,023억원)을 들여 취학전 보육시설의 학습준비도와 교육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The Boost for Preschool』 법안,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09). 교육과정의 내용면에서 스웨덴 중앙정부는 교육과정의 내용에 있어 2010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취학전 보육발전법안을 통해 보육기관에서 언어 및 수과학의 교과교육의 실행과 이에 대한 아동의 구체적인 해당교과지식의 습득을 강조하는 교육력 강화의 커리큘럼으로 변모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을 늘리고 있다.

## 마. 반 구성 및 교사의 배치

### 1) 반 구성

대부분의 종일제 피르스콜라에는 1~4개의 학급이 있으며, 한 학급은 평균 15명, 전체 정원 평균 42명 정도로 학급 수도 평균 2~3개의 비교적 소규모이다. 학급당 아동수는 평균 17.4명이고, 그 평균규모는 1~3세 아동의 경우 14.6명, 3~5세 19.7명, 혼합연령집단은 18.4명으로 적은 비율의 교사대 아동수를 볼 수 있다. 학급규모별로는 15명 이하의 학급크기 이용율이 전체 피르스콜라의 36%, 16~20명 50%, 21명 이상 15%로 나타났다(Sverigies officiella statistik, 2005).

종일제 피르스콜라의 경우, 대개 학급당 3명의 교사가 팀티칭(team teaching)의 형태로 돌보고 가르치며, 시간제 교사 및 대체교사의 활용도가 높다. 첫째, 팀티칭제는 1968년 국가보육위원회의 권고 이래 지속되어온 보육의 질적 기준으로, 교사의 구성은 상황에 맞게 유아교사-보육교사-보조교사 간의 융통성 있는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사 구성방식을 통해 교사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이 다양하게 발휘되고, 서로 다른 인적 특성을 통해 교육활동과 인간관계를 보완하는 장점 외에, 한 교사가 활동을 주도하는 동안, 다른 교사가 다음 활동을 준비하고 보조하는 등의 프로그램의 구성과 역할분담, 활동간 전이과정과 교사의 근무여건의 질이 확보되는 주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둘째, 시간제 교사가 근무시간의 30~50%를 정교사와 함께 하며, 교사들의 병가 및 연수 등으로 인한 근무의 공백을 대체교사를 이용하여 보완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종일제 피르스콜라에서는 대개 1~2명의 보조교사와 특수교사가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는 게 보편적이다

6세 반일제 무상교육 유아학급 이용률이 95%수준에 이르게 됨에 따라, 유아학급 방과 후에 가정보육 또는 레저타임센터를 함께 이용하는 비율 역시 높다. 유아학급은 독립된 학급으로 존재하기도 하나, 초등학교 1, 2학년과 함께 통합 학급으로 운영되기도 한다(한유미 외, 2005).<sup>28)</sup>

개방형 피르스콜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아교사 1인과 보조교사 1인으로 이루어지며, 반 구성은 아동과 부모, 교사의 3자가 함께 하는 부모참여과 가족지원의 형

28) 예를 들어 한 반에 30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1/3은 유아학급 6세아, 1/3은 초등1학년 7세아, 나머지 1/3은 초등 2학년 8세아로, 교실 내 3명의 교사 각각이 해당 연령의 아동에게 요구되는 커리큘럼은 제공함. 즉 유아학급에서 30명의 아동에 3명의 교사(예: 유아교사 1명, 레저타임교사 1명, 초등학교 교사 1명)가 배치되기 때문에 혼합연령의 통합 학급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선택은 교장의 재량으로 되어있음.

태를 띤다. 아동들과 함께 부모나 가정보육모 등 양육자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고, 교사는 부모에게 양육과 아동의 발달 및 학습에 관한 지식을 전해주는 부모교육 및 가족지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아동 반 구성의 또 다른 특징은 연령별 집단 구성보다는 혼합연령 및 장애아 특수반과의 통합 학급 구성이 주를 이룬다는 점으로, 반 구성의 경우 과거 1970~80년대에 적용하던 형제그룹(sibling groups)의 개념에 의해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을 한 집단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것이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연령, 인종 등보다 다양한 기준에 의한 통합집단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개방적이고 비형식화된 놀이중심의 교육활동으로 인해 상호교류와 또래간 관찰과 모방을 통한 학습의 기회가 많이 제공된다.<sup>29)</sup>

## 2) 교사 유형 및 현황

스웨덴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교사는 크게 유아교사, 보조교사, 가정보육모의 세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유아교사(förskollärare)는 최소 3년반에 해당하는 대학교육과정 210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퍼르스콜라, 개방형 퍼르스콜라, 유아학급, 학령기 보육시설인 레저타임센터에서 일할 수 있다(NAE, 2003). 둘째, 보조교사(barnskötare)는 고등학교에서 아동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전공하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성인교육기관에서 1년간 보조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들로, 최소 1년반에 해당하는 대학교육과정 9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취학전 보육시설에서만 일할 수 있다. 셋째, 가정보육모(dagbarnvårdare)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정시간의 훈련을 받고 자신의 집에서 보육을 제공하는 자를 일컫는다. 전반적으로 보육유형별 교사의 비율은 퍼르스콜라 교사가 약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취학아동대상 레저타임센터 약 20%, 개방형 퍼르스콜라 1% 미만, 가정보육 약 8%로 나타났다.

현재 스웨덴 취학전 아동 보육교사의 약 50%는 3, 5년제 대졸 출신이며, 나머지 절반은 고졸에 해당한다. 퍼르스콜라 교사 중 절반이상이 유아교사나 레크리에이션 교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보조교사는 전체 약 1/3 이상에 해당한다. 가정보육(교)사(family day care parents)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고용되며 상당수는 이전에 대학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였거나 고등학교 수준의 직업교육을 이수한 아

29) 이러한 통합적 인적환경의 구성은 과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형제자매 관계의 경험이 적은 스웨덴 아동의 양육환경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과 연대성과 공동체 의식의 가치를 강조하는 스웨덴의 국가이념 및 교육 철학과도 연관됨.

동보조(교)사에 해당한다. 가정보육모의 경우는 일정기간 훈련을 받으면 누구나 될 수 있어, 유아교사가 아니며 보조교사와도 구분된다.

〈표 IV-1-6〉 교사 유형별 양성과정

종 전		변 경 후	
교사 유형	양성 과정	4개 직업학위	양성 과정
유아 교사	3년 6개월(140주)	취학전교육 교사	210학점 이상
보조교사	고졸 전공자 또는 교육기관에서 보조교사과정 이수		90학점 이상
가정보육모	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에서 90~100시간 과정이수	가정보육모	종전과 동일
테크리에이션 교사	3년 6개월(140주)	방과후 돌봄 교사	180학점 이상
초등학교 교사		초등교육 교사	240학점 이상
중등학교 교사		교과교육 교사	270 또는 300학점
		직업교육 교사	90학점 이상

자료: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2009).

대졸출신의 유아교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스웨덴 중앙정부는 2010년 올 하반기부터의 적용을 목표로 2009-2011 3개년 교육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교사자격체계를 강화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09). 이는 지식 기반의 선도적 산업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으로 교사자격의 기준을 높이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학사/석사제 학력연환을 4개의 전문직업 학위로 대체하고 교육연한보다는 학점수에 근거하여 취득기준을 마련하였다. 취학전 아동 보육교사 자격은 최소 3년반 이상의 대학교육과정에 해당하는 21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유아학급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사는 4년 이상에 해당하는 240학점, 방과후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3년의 대학교육과정에 해당하는 180학점을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으로 자격기준의 내용적 측면을 보장하였다.

가정보육모 양성과정에는 보조교사에 준하는 교육과정이 권고되고 있으나, 중앙정부 수준의 공식화된 훈련과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가정보육모에게 약 90~100시간의 교육원 훈련 이수를 제도화하고 연간 30시간 이상의 연수를 권고하고 있다. 가정보육모의 관리·감독에 비해 가정보육모의 양성과 자격, 훈련과정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매년 대학에서 배출해야할 예비교사의 수를 설정하는 등, 교사의 수급을 관리하나, 취학전교육 교사의 자격기준과 배출경로는



다양하다.

### 3) 교사의 지위, 복지 및 근무조건

교사지위에 따른 역할분담에서 유아교사가 보조교사에 비해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매일의 활동 진행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보인다. 원장과 교사들 사이에서도 비교적 동등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sup>30)</sup>

근무여건에 있어 피르스콜라의 운영시간이 하루 11시간 이상의 종일제이지만, 교사들은 교대근무와 시간차 근무를 통해 주당 40시간, 1일 8시간 노동의 기준을 준수한다. 근무시간의 준수를 위해 시간제 교사와 대체교사의 활용을 요구한다.

과거에는 피르스콜라 취학전 교육과정이 따로 없었고 교사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국가수준의 취학전 교육과정(Lpfö 98)의 실행 이후, 보육교사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가정보육모를 포함해 모든 교사들이 지자체에 의해 임명되고 지자체로부터 임금을 받는 공무원 신분의 비교적 안정된 직종에 속한다. 다른 직종에 비해 보육교사의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근무조건이 양호하고 이직율이 낮은 편이며, 유아교사 평균 연령이 47.5세, 보조교사 42세로 경력교사의 비중이 높다.

스웨덴에서는 교사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비교적 강성에 해당하는 교원노조에 가입하여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사들간의 네트워크 조직을 통한 상호 교류와 직무 발달의 기회를 갖는다. 또한 1987년부터 직업안전 및 건강위원회(The National Boar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는 모든 보육교사에게도 작업자 안전 규정(AFS)을 적용한다(이진숙, 박은숙, 한유미, 오연주, 이영환, 2004). 교사의 피로는 보육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개별보육시설의 수준에서도 교사를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등, 교사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을 1층에 위치해야 하고, 작업대 높이는 성인의 신체규격에 맞아야 하며, 소음방지시설을 갖출 것과, 직원용 공간이 확보되고 그 위치와 크기가 따로 정해져야 함에 관한 것이다.

30) 스웨덴 종일제 보육시설에는 원감의 역할이 없으며, 원장 부재시에는 어떤 교사든 원장의 역할을 대신하며, 심지어 예테보리 사립 보육시설의 경우 원장없이 3명의 교사가 설립을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교사의 역할과 책임의 비중은 큼..

## 2. 호주

### 가.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 1) 서비스 현황 및 운영

호주의 보육서비스 유형은 크게 인가보육과 등록보육으로 구분된다. 인가보육은 주 및 연방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기관 중심의 서비스이고, 등록보육은 등록을 하고 인정을 받는 개인에 의한 보육서비스이다. 인가보육은 종일제보육(Long Day Care), 가정보육(Family Day Care), 방과후보육(Outside School Hours Care), 일시보육(Occasional Care), 가정내보육(In-Home Care) 등이 있다. 등록보육은 비동거 부모, 조부모, 친인척 등이 포함된다.

종일제보육은 기관중심의 보육서비스이다.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게 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통 연령에 따라 반이 구성된다. 취학아동도 등교전이나 방과후, 방학기간동안 이용이 가능하다. 연간 최소 48주 동안 평일기준으로 일일 최소 8시간이상 운영한다. 근로 기준에 따라 보통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신의 취업 및 근로 상태에 따라 자년의 보육서비스를 선택하게 된다.

가정보육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적인 보육자가 자신의 집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보육서비스이다. 0세부터 5세까지를 보육할 뿐만 아니라, 종일제보육과 마찬가지로 등교전이나 방과후, 방학에 취학한 아동을 보육하기도 한다. 하루 종일이나 일정 시간동안, 불규칙적이거나 임시적인 보육을 하기도 한다. 많은 주나 연방정부에서는 가정보육센터로 지칭되는 관리기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가정보육 보육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방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가정보육은 종일제보육에 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장점이 있다.

방과후보육은 주로 4세부터 12세까지의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시간 전이나 방과후, 휴일 등에 실시하는 보육서비스이다. 보통 학교 주변에 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학부모연합회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한다.

가정내보육은 가정보육과 유사하나 서비스 제공자(approved carer)가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보육하는 서비스이다. 가정보육과 마찬가지로 가정내보육 조정기구의 관리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아니며, 장애아동처럼 아동이 집밖에서 보육받는 것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일시보육은 일시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종일제는 운영하지 않으며, 짧은 시간이나 응급상황시 이용 가능하다. 일시보육의 보육비용은 이용시간에 따라 부과된다. 일시보육 뿐만 아니라 취학전 아동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일시보육센터는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이나 단체들에 의하여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일정하지 않다.

등록보육은 가족지원사무소(Family Assistance Office; FAO)에 보육제공자로 등록한 조부모, 친인척, 친구, 내니 등에 의한 보육을 말한다. 이들 등록보육 제공자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보육센터 등 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다.

한편, 유아교육 서비스로 유치원은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으며, 학교 교육을 시작하기 전인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유치원 프로그램은 보통 놀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위를 가진 유치원 교사가 실시한다. 유치원은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방학기간 중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지역마다 또는 유치원마다 운영시간, 프로그램, 아동연령 등이 다양하다. 유치원은 취학전 아동을 위한 정규반 이외에도 나이 어린 아동을 위한 준비반(Pre-entry)이나 놀이그룹(Play-group), 일시보육(Occasional Care) 등을 하루 또는 시간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 2)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2008년 기준 인가보육과 유치원 이용 아동수는 인가보육은 830,334명, 유치원은 203,038명으로 인가보육과 유치원 이용 아동수는 총 1,033,372명이다. 인가보육 이용 아동을 보육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종일제보육 494,270명, 가정보육 102,982명, 방과후보육 251,733명이다.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표 III-2-1>과 같다. 2008년 6월 기준 0~12세 아동 중 43%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중 22%는 공식보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29%는 비공식보육을 이용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이용은 연령별로 차이를 나타내며, 특히 공식보육의 경우 두드러진다. 1세 미만의 아동은 9%만이 공식보육을 이용하나 1세 35%, 2세 48%, 3세 50%로 종일제보육 이용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4세가 되면 공식보육 이용률이 36% 수준으로 낮아지고, 비공식보육 이용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는 없으며 30% 전후반 수준으로 이용한다.

〈표 IV-2-1〉 0~12세 영유아 연령별 보육서비스 이용률(2008)

단위: %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8	9~12	전체
전체	29	57	65	66	58	40	39	33	43
공식보육	9	35	48	50	36	20	16	9	22
방과후보육	0	0	0	0	1	15	16	8	7
종일제보육	6	27	41	43	31	4	0	0	12
가정보육	2	6	4	5	4	2	1	1	2
일시보육	0	2	3	3	1	0	0	0	1
기타	1	1	2	1	1	1	0	0	1
비공식보육	23	33	34	32	33	27	28	28	29
조부모	19	26	28	23	25	16	16	15	19
비동거 부모	0	2	4	3	3	4	6	7	5
친인척	3	4	3	3	5	5	5	7	5
기타	3	4	3	5	4	5	4	4	4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9).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June 2008(Reissue).

〈표 IV-2-2〉 0~12세 주당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2008)

단위: %, 시간

구 분	5시간 미만	5-9	10-19	20-29	30-34	35-39	40-44	45	전체	평균시간
								시간 이상		
전체	26	21	23	14	4	2	2	8	100	17
공식보육	21	24	31	15	3	2	3	2	100	14
방과후보육	50	29	19	2	0	0	0	0	100	6
종일보육	2	21	38	24	4	3	4	4	100	19
가정보육	7	29	36	16	4	2	4	2	100	16
비공식보육	37	23	16	10	2	2	1	9	100	15
조부모	44	25	17	8	2	1	1	2	100	9
비동거 가족	10	6	14	22	3	5	3	38	100	39
친인척	56	22	15	4	1	0	1	2	100	9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9).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June 2008(Reissue).

주당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은 <표 IV-2-2>와 같다. 공식보육과 비공식보육 모두 주당 이용시간이 길지 않다. 공식보육은 평균 14시간, 비공식보육은 15시간으로 유사하다. 비공식보육은 비동거 가족이 39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짧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호주 보육료 지원정책은 철저하게 취업모 중심의 정책으로 미취업모에게는 주당 24시간만을 지원하기 때문

이다. 둘째, 호주의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이 50%를 넘지 않고, 이들 취업조차도 시간제가 다수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 III-2-3>은 보육서비스 유형별 주당 이용 비용이다. 전체 0~12세 아동 중 비용을 내지 않는 아동이 47%이며, 이용 비용 평균은 31달러이다.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0~12세 아동 중, 75%의 주당 이용 비용이 40달러 미만으로 나타났다. 9%에 해당하는 아동의 주당 이용 비용은 100달러 이상이다. 공식보육서비스는 평균 53달러이며, 비용이 가장 높은 유형은 종일제보육으로 평균 73달러이다. 비공식보육 이용 아동 대부분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비공식보육을 이용하는 아동 중 7%만이 비용을 지불한다.

<표 IV-2-3> 0~12세 주당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2008)

단위: %

구 분	0	\$1- \$9	\$10- \$19	\$20- \$39	\$40- \$59	\$60- \$79	\$80- \$99	\$100 이상	전체	평균 (\$)
전체	47	6	9	13	7	4	4	9	100	31
공식보육	2	11	17	25	14	8	7	15	100	53
방과후보육	3	19	27	27	14	6	1	1	100	26
종일보육	1	4	11	22	14	10	11	25	100	73
가정보육	5	20	11	29	12	6	7	7	100	36
기타 공식보육	2	29	26	23	6	2	1	5	100	26
비공식보육	93	0	1	2	1	1	0	3	100	7
조부모	98	0	0	1	0	0	0	1	100	1
다른 비공식보육	86	0	1	4	1	2	0	5	100	13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9).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June 2008(Reissue).

## 나. 보육료 결정 및 지원방식

### 1) 보육료

영유아 보육료나 교육비는 학교부설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자율화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전 1년의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보육료를 규제하지 않는데(OECD, 2002), 시설에 따라 보육료 편차가 크다. 그러나 종일제 보육시설의 아동연령별 보육료 차이는 거의 없다.

호주의 조사 결과를 보면 보육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보육서비스 실태조사(survey on child care service) 결과 종일제보육시설 주당 평균 보육료는 공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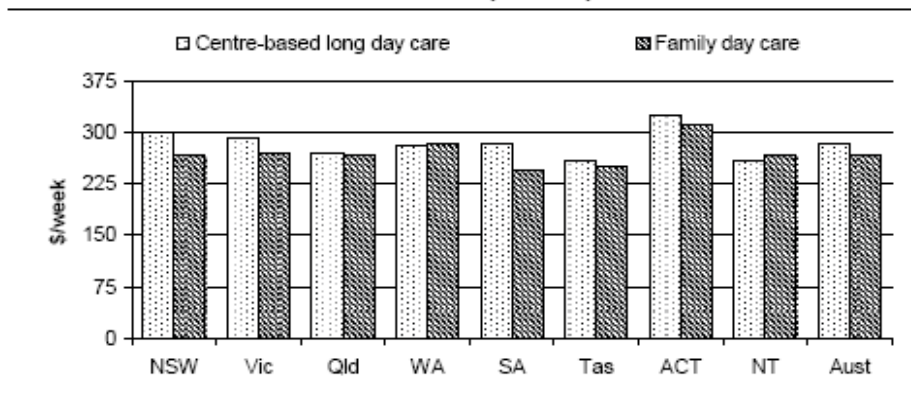
보육시설 211달러, 사립보육시설 208달러로 조사되어, 공립과 사립보육시설의 보육료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시설별 차이는 있어, 170달러 미만에서부터 260달러 이상까지 넓게 분포한다. 2006년에는 평균 233달러로 증가하였다.

〈표 IV-2-4〉 주당 보육시설 보육료 백분율 분포: 2004

단위: AUD, %(개소)

구분	\$170 미만	\$170 ~\$179	\$180 ~\$189	\$190 ~\$199	\$200 ~\$209	\$210 ~\$219	\$220 ~\$229	\$230 ~\$239	\$240 ~\$249	\$250 이상	계 (수)	평균
공립	4	7	14	20	17	11	8	5	3	11	100 (2,515)	211
사립	6	6	12	13	14	12	11	6	6	12	100 (1,217)	208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ous Affairs(2004). Census of Child Care Services.



주: 보육료는 중앙값을 나타냄.  
 자료: Report on Government Service 2010.

[그림 IV-2-1] 인가보육시설 주당 보육료(2009)

2009년 보육서비스 공급자 조사에서 인가보육시설 중, 종일제보육과 가정보육시설의 주당 50시간 이용에 대한 주당 보육료를 조사하였는데, 2009년 50시간 이용 주당 보육료는 종일제보육이 285달러로 증가하였고, 가정보육 267달러에 비하여 더 높다.

## 2) 보육료 지원

호주는 2000년에 보육지원금(CCB) 제도로 보육료 차등지원체계를 정비하였다. 호주는 시간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도 시간당 단가가 적용된다. 가족 지원 사무소(Family Assistance Office)를 통해 가족들이 직장 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보육료 지원은 크게 보육지원금(Child Care Benefot) 제도와 보육비 환급(Child Care Rebate), 취업, 교육 및 직업훈련 보육비 지원(Jobs, Education and Training(JET) child Care fee assistance) 등으로 구분된다.

### 가) 보육지원금(CCB: Child Care Benefit)

모든 소득계층이 보육지원금(CCB)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보호자의 소득수준, 자녀수, 아동의 취학여부,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 보육시간 등에 따라 정해진다. 보육지원금(CCB)은 인가 또는 등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0년 7월부터 종전 자산조사를 통하여 제공되던 보육보조제도(Child Care Assitance: CGA)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족에게 적용되던 보육료 환급제도(Child Care Cash Rebate: CCCR)을 통합하여 보육지원금제도를 만들었다.

#### (1) 지원 수준

보육지원금은 가족에 지원되는 지원금이다. 보육지원금 비율은 가족의 수입,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수, 주당 이용 시간, 보육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2007~2008 회계연도의 CCB 경비는 18억7300만달러이고, 2008~2009년은 19억8400만달러를 계획하였다. 보육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2012~2013 회계연도까지 84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sup>31)</sup>

2007~2008년을 기준으로 보면, 연간소득이 \$37,960 이하이면서 인가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의 경우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정해진 소득 한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가족은 더 이상 보육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보육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소득 한계는 자녀 한 명의 경우 \$131,560, 자녀 두 명의 경우 \$136,375, 세 명의 경우 \$153,995이며, 세 명의 자녀 이후부터는 한 명당 \$29,077씩 증가한다. 2008년 7월부터 수입 한도액 이상의 가족은 보육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31) Australia Budget 2009-2010. Ministerial Statement on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표 IV-2-5〉 보육지원금 수입 한도액 및 지원금 최고액

단위: AUS

아동수	수입 한도액	지원금 최고액			
		인가보육		등록보육	
		주당	시간당	주당	시간당
1명	131,560				
2명	136,375	180.00	3.60		
3명	153,995	376.21	3.76	0.602	30.10
추가 아동당	29,077	587.13	3.91		
		195.71	3.91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09).

지원 수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인가보육의 경우 미취학 자녀 한 명당 지불되는 보육 지원금의 최대한도는 시간당 \$3.60 또는 주당 50시간에 대한 \$180.00이다. 보육지원금은 가족의 소득이 \$37,960 이상이 되면 줄어든다.

〈표 IV-2-6〉 호주의 보육지원금 기본식

소득기준	내용
인가보육	
종일보육, 방과전후 보육	시간당 단가×지원시간×보육수당비율(CCB%)×취학비율
일시보육	시간당 단가×지원시간×보육수당비율(CCB%)×취학비율
가정보육 및 가정내 보육	
- 주당 37.5시간 미만	시간당 단가×1.3333×지원시간×보육수당비율(CCB%)×취학비율
- 주당 37.5~50시간	최고한도(ceiling amount)×보육수당비율(CCB%)×취학비율

주: 1) 종일보육 및 방과전후보육, 가정보육, 가정내보육의 CCB%는 종일보육, 가정보육, 가정내보육, 방과전후보육 이용 자녀수를 기준으로 함.

2) 일시보육의 CCB%는 일시보육을 이용하는 자녀수를 기준으로 함.

3) 취학비율은 미취학 아동은 100%, 취학아동은 85%를 적용함.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09). Child Care Service Handbook 2009-2010.

인가보육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지만 등록보육은 인가보육의 최소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등록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들은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미취학 자녀 한 명당 \$0.602, 주당 50시간에 대해서는 최대 \$30.10를 수령할 수 있다. 인가보육 서비스 지원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설보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비는 인가보육과 마찬가지로 미취학 자녀의 85%이다.

보육지원금은 보육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취학아동은 미취학 아동



에게 지원되는 85%만이 지원된다(표 III-2-6 참조).

(2) 지원 요건

보육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나 뉴질랜드 주민이거나 영주권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자녀가 인가 또는 등록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부모가 보육비 지불 책임이 있는 경우, 자녀가 필수적인 예방접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아동에게 예방접종 기록 제시를 요구한다.

지원 대상 서비스의 유형에는 인가보육과 등록보육이 모두 포함되며, 종일보육, 가정보육, 가정내보육, 방과후보육, 일시보육과 가족지원사무소에 등록된 조부모, 친척, 친구, 이웃, 가정부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육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모는 취업 등 요건에 따라 아동 1인당 1주일에 최고 24시간, 50시간의 비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당 24시간까지 기본으로 보장하고, 그 이상은 취업 등 조건에 따라 50시간까지 지원을 보장한다.

〈표 IV-2-7〉 호주의 보육지원금(CCB) 요건

구분	요건
24시간의 CCB	무조건 1주일에 24시간의 CCB를 받을 수 있음.
50시간의 CCB	보호자 근로 (일주일에 15시간, 2주일에 30시간 이상)
	- 고용자, 고용주, 창업, 교육 및 훈련, 구직, 근로 기술 증진을 위한 자발적 근로 등
	근로 관련 조사 면제
	- 아동 Carer Allowance(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지불하는 정부지원)를 받는 경우 - 조부모가 돌보는 아동 - 부모 중 1인이 장애인(다른 한부모는 근로 조건 충족하여야 함)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09). Child Care Service Handbook 2009-2010.

24시간 이상 50시간까지 지원 받기 위한 조건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찾고 있는 경우, 혹은 학업이나 연수 중인 경우, 일주일에 최소 15시간의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발과 관련된 정부 지원(Carer Allowance, Carer Payment)을 받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에 대한 일차적인 양육의 책임이 있고 소득보장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최근에는 조부모가 주 보호자인 아동을 위한 특별보호 필요성이 인정

되면서 2004년부터 50시간 이용 조건을 면제하여 주었다.<sup>32)</sup>

#### 나) 보육비 환급(CCR: Child Care Rebate) 제도

보육비 환급은 일하는 가족에게 보육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장에서 일하는 가족들에게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다. 2009년 1월부터 보육비 환급은 Child Care Tax Rebate는 Child Care Rebate로 개칭되어, 조세법이 아닌 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된다. 보육비 환급을 받기 위한 자격은 인가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육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 부모가 직장, 직업훈련, 학습 테스트를 충족할 경우 등이다. 그러나 등록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보육비 환급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모가 인가보육서비스에 지불한 보육 실비(out-of-pocket, 전체 보육비 중 수령한 보육지원금 공제)의 50%를 지원한다. 2008년 1월부터 보육비 환급은 사비지불경비의 30%에서 50%로 높아졌다. 가족은 인가보육을 이용하는 자녀 한 명당 연간 7,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2007~2008년은 4억6천만달러를 지출하였으나 2008~2009년 정부예산은 11억2200만달러까지 증가하였다. 2009~2010년 회계연도에는 자녀 한 명당 최대 7,778달러(물가지수에 따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수입한도액 이상의 가구라 보육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가족도 보육비 환급은 받을 수 있다. 가족의 보육 실비를 줄여 일하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2013 회계연도까지 44억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sup>33)</sup>

#### 다) 취업, 교육 및 직업훈련 보육비 지원(JETCCFA: Jobs, Education and Training child Care fee assistance)

취업, 교육 및 직업훈련 보육비 지원은 소득지원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취업 준비 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학업을 하거나, 갓 직장에 입사한 부모를 위한 추가적인 보육비 지원 제도이다. 이 지원은 인가보육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된다. 2008년 7월 1일부터 JET 보육비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되었다. JET 보육비지원 정부예산은 2013년까지 2390만달러이다.

32) 과거에는 20시간, 21~50시간, 50시간 초과로 구분하였음. 50시간 이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이나 학업, 연수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이 일주일에 50시간(출퇴근 시간 포함)을 넘을 경우에 허용하였음.

33) Australia Budget 2009-2010. Ministerial Statement on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 다. 교사 및 반구성

호주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교사 자격을 부여하며,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주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격취득 경로는 다양한데, 크게 대학에서 전공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영역(TAFE;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인가된 사립훈련원에서 훈련을 받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일부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업자격기준에 의하여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대학에서의 교육과정도 대학에 따라 보육대상연령 기준을 아동연령 0~8세, 3~8세, 0~15세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인 자격(formal qualification)은 3~4년제 영유아 관련 교수 학위(early childhood-related teaching degree), 아동보육 자격(child care certificate) 또는 2년제 학사 학위(associate diploma), 그 외의 관련 자격증이 있다. 종사자의 자격요건은 각 주와 지역별로 다른 편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와 직업교육을 받은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섞여있다. 종일제 보육기관에서도 자격이 있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다른 종사자(staff)가 함께 근무한다.

보육시설 인력은 2004년 조사결과 약 85,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종일제보육시설에 46,470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고, 방과후 및 방학 보육에 각각 1만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다. 가정보육 및 가정내 보육은 가정보육사의 수가 12,000명에 이르며 센터 직원의 수도 2,500명에 달한다. 이외에 일시보육 종사자도 1,000여명 수준이다. 종일제 보육시설의 경우 61%가 사립보육시설에 고용되어 있고, 39%가 공립보육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학급 및 아동수 대비 교사의 비율은 공립보육시설이 다소 높다.

2007년 12월 호주정부위원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 COAG)는 영유아기 발달을 위한 개혁을 추구하기 위하여 중앙 및 연방정부간 파트너십에 동의하고, 새로운 국가 수준의 질 어젠다(National Quality Agenda)를 실행하고자 보육·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수준의 질적 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를 내놓았다. 국가 수준의 질적 체계(National Quality Framework)은 종일제보육, 가정보육, 방과후보육,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육·교육 교사와 관련하여 새로운 자격조건을 마련하고, 교사대 아동비율을 개선하고 한다.

국가 수준의 질적 기준은 교사 및 종사자 자격 강화를 위하여 종일제보육시설과 유치원 교사는 25명 미만, 25~59명, 60~80명, 80명 이상에 따라 자격조건을 다르게 강화하여 제시하였다.

〈표 IV-2-8〉 교사대 아동비율

	연령그룹	교사대 아동 비율	적용
종일제보육시설	0~24개월	1:4	2012년 1월
	25~35개월	1:5	2016년 1월
유치원	36개월~학령전	1:11	2016년 1월
	혼합연령	비율적용	2012년 1월
가정보육시설	혼합연령	1:7 (학령전 아동은 최대 4명)	2014년 1월
방과후보육	국가 수준의 질적 기준은 방과후보육에도 적용되지만 교사대 아동비율과 교사 자격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자료: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2009). National Quality standard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d School Age Care.

〈표 IV-2-9〉 혼합연령 시 교사 비율

연령	교사대 아동비율	반에서의 아동수	필요한 교사비율
0~24개월	1:4	1명	25%
		2명	50%
		3명	75%
		4명	100%
25~36개월	1:5	1명	25%
		2명	50%
		3명	75%
		4명	100%
36개월~학령전	1:11	1명	25%
		2명	50%
		3명	75%
		4명	100%

자료: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2009). National Quality standard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d School Age Care.

보육·교육서비스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보육서비스 유형과 유치원에 따라 다르며, 주나 준주에 따라서도 다르다. 국가 수준의 질적 기준이 제시한 보육·교육 기관 유형에 따라 국가기준의 연령별 교사대 아동비율을 <표 IV-2-8>와 같다.

혼합연령일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은 아래의 계산에 의해 비율이 적용된다. 0~24개월반은 교사대 아동비율이 1:4이며, 반에 0~24개월 아동이 1명 있는 경우는 교사가 25%를 쏟게 되므로 75%만큼 쏟을 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25~36개월 아동 3명이나 36개월~학령전 아동 3명이 혼합반을 할 수 있다(표 IV-2-9 참조).

## 라. 보육과정 운영

2007년 12월 호주정부위원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 COAG)는 영유아기 발달을 위한 개혁을 추구하기 위하여 중앙 및 연방정부간 파트너십에 동의하고, 새로운 국가 수준 질적 아젠다(National Quality Agenda)를 실행하고자 보육·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수준 질적 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을 내놓았다. 이에 주된 요소가 조기학습체계(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이며, 호주 정부의 첫 번째 국가적 체계이다. 이는 첫 번째 시행으로 의의가 있다. 호주는 그동안 각 주나 준주에 근거한 커리큘럼을 사용하여 왔는데, 국가 수준 체계 시행으로 그동안 사용하였던 각 주나 준주의 커리큘럼을 점차 국가 수준에서 시행한 체계(Framework)로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기 학습체계(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은 교육·보육 환경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질과 일관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보육과정(curriculum framework)이다. 이는 출생부터 5세까지 영유아들의 학습을 향상시키는 원칙, 실제, 결과를 설명하며, 교사나 서비스 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놀이중심의 학습을 강조하며, 상호작용과 언어, 사회, 정서발달을 강조한다. 또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기관 교사를 위해 방향을 제시하고 아동의 발달을 촉진시켜준다. 교사가 커리큘럼을 정하고 실시하도록 도움을 주고, 기관의 질을 평가하고 해준다. 조기학습체계(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에서 기대하는 영유아의 발달은 정체성, 세계와 관계맺기, 행복감, 자신감, 효과적인 상호작용의 5가지이다.

아동보육의 질 보증(Child Care Quality Assurance) 제도는 모든 종일제 보육기관이 아동의 학습과 프로그램을 기록하여 서면으로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보육이나 방과후보육서비스에는 프로그램 계획과 기록 요구하지 않는다.

## 3. 정책시사점

스웨덴은 만 3세 이상의 아동 모두에 대해 반일제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이용에 대해 부모부담비율을 평균 10% 내외로 부모 부담 상한액 월 20만원 정도를 넘지않는 스웨덴의 보육비용지원은 많은 재원을 요하는 이상적인 북유럽복지모델로 간주된다(OECD, 1999). 스웨덴 보육정책의 발전 과정과 현재 진행중인 정책에서 몇몇 가지를 우리가 유용한 지침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운영시간과 이용시

간을 분리하고, 보육시설이 부모의 근무시간에 맞춰 하루 11시간 이상의 종일제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이용시간은 취업여부별로 차이를 둔다. 실제 이용시간대는 반일제에서 시간연장, 야간보육까지 부모의 근로시간에 맞춰 다양하게 분포한다. 둘째, 보육료는 실제 보육시간과 소득, 자녀수 대비로 부담액을 산정한다.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의 이념적 원칙에 근거하여 종일제 공보육시설 외 사적영역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셋째, 보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는 민주사회주의 국가운영철학을 바탕으로 아동중심의 교육적 특성이 강한 교육과정은 운영한다. 이외 교사의 다양한 배출경로, 유아교사 자격의 최소 3.5년의 대학 연한 요건, 교사의 8시간 근무시간 준수 및 안정된 대체교사 운용 등은 주요하게 참조해야할 정책사항이라 하겠다.

호주의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가 높은 국가는 아니다. 민간 위주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상황이 유사한 국가이다. 보육·교육과정도 최근에 구축하였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유형을 매우 다양하고, 부모는 취업 등 요건에 따라 아동 1인당 1주일에 최고 24시간, 50시간의 비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편적으로 주당 24시간까지 기본으로 보장하고, 그 이상은 취업 등 조건에 따라 50시간까지 지원을 보장한다. 24시간 이상 50시간까지 지원 받기 위한 조건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찾고 있는 경우, 학업이나 연수 중인 경우, 일주일에 최소 15시간의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발과 관련된 정부 지원(Carer Allowance, Carer Payment)을 받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에 대한 일차적인 양육의 책임이 있고 소득보장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최근에는 조부모가 주 보호자인 아동을 위한 특별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2004년부터 50시간 이용 조건을 면제하여 주었다.

## V. 보육시간에 따른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방안

제5장에는 앞에서 논의한 결과들은 토대로 먼저 정책 추진의 당위성과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어서 보육시설 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보육료를 추정하고, 보육료 지원 대상, 지원 수준 등 보육료 지원 관련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1. 정책의 당위성과 기본원칙

#### 가. 정책 추진의 당위성

보육료 지원체계의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에 앞서,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이유 즉 당위성에 대한 논의를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보고서의 개선방안은 지금껏 ‘보육시설은 12시간 운영’이라는 명문 아래 보육정책이 미처 구체화하고 반영하지 못했던 다양한 정책적 수요와 문제를 끌어내어 수요자인 부모와 아동, 교사 등 보육 종사자,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라는 보육의 세 주축이 보다 효율적으로 교류하고 운영되게 하기 위함이다. 앞서 논의된 대로(표 II-3-3 참조) 보육의 평균 이용시간은 약7시간 45분, 그 편차는 약 2시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이는 개별 가정이 자녀 양육을 하는데 있어 비모성(비모성) 보육서비스 이용의 실수요가 매우 상이함을 의미한다. 이제 보육의 기본 설계는 이와 같이 다양하고 상이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보육에서 가장 주요한 대상은 아동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보육의 제공이 자녀에 대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취업모와 특별한 돌봄을 요하는 취약가정의 요구에 의해 출발하였고, 이것이 보육 설계의 근간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실제 보육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주체는 영유아 아동들이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중시하는 협의의 보육에서 벗어나 영유아 아이들의 발달적 요구와 안정적 환경에의 권리를 적극 반영하는 광의의 보육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Kamerman, 1991).

수많은 연구(미국의 NICHD 보육종단연구, 영국의 EPPE 보육 프로젝트 등)와 이

론들(애착이론, 발달이론 등)이 생애 초기 부모-자녀 관계의 안정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안정적 관계를 통한 인간에 대한 기본적 신뢰감의 형성은 영유아기 아동들이 성인과 함께 보낸 상호작용 '시간'의 결과임을 보고해 왔다. 이러한 영유아기 발달적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의 실패는 이후 아동의 생애 전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Belsky, 1999, 2001; Lowe Vandell et al., 2010). 또한 보육의 질은 보육의 시작 시기 및 양과 같은 '시간'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NICHD\_ECCRN, 2000). 보육의 질 제고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보육은 시간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부모의 보육 가능성을 반영한 이용시간의 다양화는 부모의 수요와 아동의 권리를 최적으로 조율하도록 돕는 정책적 노력의 시작이며, 보육의 질을 담보하는 선행요건이다.

셋째, 이러한 보육 이용시간의 다양화는 실제로 '시간' 논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미래지향적 설계로, 향후 보육의 실질적 발전을 견인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보육은 이용시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시간내에 보육과정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구성, 교사의 자질, 보육과정 적용의 탄력성 및 프로그램의 경쟁력 확보 등 보육의 질을 필요로 하는 요구와 환경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게 될 것이다. 즉 영유아기 국가 인적 자원의 육성이라는 보육의 상위 목표를 견지한 보육의 변화·발전이 요구된다. 이는 12시간 운영으로 교사와 보육시설들이 모든 부모의 12시간 보육 요구에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는 불합리한 구조로부터의 개선의 기초 위에서 가능하다.

넷째, 보육은 가치지향적이어야 한다. 보육은 부모의 요구에 응대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측면 외, 영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보육 철학을 갖추어야 하는 영역이다. 미래의 보육은 부모가 원하는 것(예: 시간, 특정 교육 프로그램) 이상의, 해당 보육기관의 공급주체가 지향하는 인간상과 아동관을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보육이 부모의 자녀양육을 이끌어가는 상위개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보육 종사자의 위상과 역할이 교사, 보호자 이상의 전문가로 되어야 하는 현실적 요구가 내재되어 있음을 주지해야 하고, 아울러 이러한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아동을 물론 종사자에게도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육은 다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취약계층 가정과 영유아에 대한 예방(prevention) 및 중재(intervention)로서의 보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보육(community program)으로서의 역할과 기



능이 요구된다(Zigler & Styfco, 1999). 따라서 일정 시간의 프로그램은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이외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보육 이용시간의 다양화는 서로 다른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 각각에게 적합하게 보편적 보육과정과 특화된 과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정책 설계이기도 하다.

상기한 보육에 대한 미래지향적 관점은 이미 선진국의 보육 현장에서 매우 다양한 이용시간의 적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장기 관점의 당위성에 근거할 때, 현 시점 보육이용 시간의 다양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보육발전의 기초이다.

## 나. 개선방안 모색의 기본 원칙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시간과 이용시간 유형별로 보육료를 차등화하는 정책대안을 마련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다양성 보장이다.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종일제나 단축보육을 원하는 등 요구의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모들의 경우도 가족구조나 근로형태의 다양화와 더불어 이용시간 또한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 기관 이용시간 유형을 다양화하여 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이에 부합하는 비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편 발생을 최소화한다. 일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종일제 기준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경우 현재보다 기준 시간이 짧아지면 시설들이 이에 반응하여 운영시간을 줄이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장시간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용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용가능성은 열어두고 싶어 할 것이다.

셋째, 보육시설의 운영상 사정을 반영하여 탄력성 보장이 필요하다. 시설에 따라서는 차량 운행을 여러 차례 하여야 함으로 일찍부터 귀가하기 시작하여야 하고, 또한 계절별로 낮 시간 길이에 따라 일하는 시간의 차이가 나므로 보육 기준시간도 여기에 맞추어야 한다는 등, 상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보육시설의 운영 부담이 반영되어야 한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사 근로환경 개선의 우선순위는 낮았다. 하루 10시간 이상 보육시설에 머물고 점심식사, 휴식 등 개인이 사용하는 시간은 30분에 불과하다. 특히 민간시설 교사는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교사에게 근로기준법을 적

용하여 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 교사의 과중한 업무는 또한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다섯째, 아동의 입장에서 보육시설에서 장시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아동은 부모 등 보호자가 집에 있는 경우 일찍 귀가하여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시간을 보육시간으로 알고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장시간 보육을 희망하는 부모들에게 보육의 원칙적인 이용시간을 알려주고 그 이상은 연장보육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부 재정 소요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특히 보육비용에 교사의 근무시간 등 근로환경 개선 요인을 반영할 경우 보육비용의 증가로 부모와 국가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와 국가의 부담 능력을 고려한 정책적 선택을 필요로 한다.

## 2. 보육시설 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 가. 운영시간

보육시설 12시간 운영 원칙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상당수는 이용시간과의 격차 때문에 이용시간과 맞추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를 보육의 특성, 장점으로 인식하고 현행 유지를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향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보육시설 운영시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12시간을 유지한다.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단서 조항도 유지한다.

### 나. 이용시간 기준 제시

시설장, 교사, 부모, 전문가 모두 보육 이용시간에 대한 규정과 이용시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일하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의견과 위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모두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보육시설 이용시간이라 함은 보육시설에 인도되는 시간부터 다시 부모에 인도되는 시

간까지로 명시하고, 기준 이용시간을 종일제와 단축형으로 이원화하여 명시한다.

종일제 보육은 영유아보육법으로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용을 의미하고, 종일제는 모의 취업 이외에도 구직, 직업훈련 등 취업 관련 사유와 한 부모 가정, 보호자의 질병, 노인 등 간호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 가정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자녀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의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표 V-2-1 참조).

단축형 보육시간은 단축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으로 명시하고, 일하지 않는 부모 대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에 대하여 별도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부모와 어린이집이 협의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다. 이는 취업모의 자녀라도 무조건 12시간 보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반영한다.

〈표 V-2-1〉 종일제 보육 지원 기준(안)

단위: 천원

구분	기준	증명방법
취업중	- 정규직, 시간제, 비정규직, 자영업, 유급휴가, 무급병가 등	경기도 사례 <sup>1)</sup> 준용
직업훈련	- 보호자가 일이나 취업을 위한 훈련을 받는 경우 (방학 포함)	훈련기관 등록
보호자 부적절	- 모의 출산 - 보호자의 질병, 장애 - 보호자 부재 등	장애인 등록
돌봄 필요 가족	- 집안에 장애인/장애인, 노인 등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 진단서 등
기타	- 재해 등 기타	확인서

주: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을 도 특수사업으로 살사하는 경기도는 취업 증명으로 ① 상근근로자는 재직 증명서, 고용 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보험센터), 직장의료보험 지경취득, 상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지사) 제출, ② 자영업자(명의대여자 제외)는 사업자 등록증에 소득납부증명서 첨부, ③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는 고용 임금확인서를 3개월마다 제출, ④ 기타 취업여성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제출을 규정하여 실시

### 다. 고려사항

이러한 기준은 제3장 의견조사에서 조사된 시설장, 교사, 전문가 등의 다수 의견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등 8시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현재 시설이나 일

하는 엄마들이 인식하고 또한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종일제 보육시간 12시간 기준이 축소 조정되는 데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이용 가능한 시간 자체는 12시간으로 두고, 8시간 기준은 보육료 책정이나 지원 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부모는 기준시간이 짧아지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으며, 비용 추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고, 시설장과 보육교사는 종일제 기준 시간 축소는 운영의 수월성,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지역별 탄력적 운영 등의 장점이 있으나, 실제 적용의 어려움과 부모 반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 3. 보육료 기준

#### 가. 유형

보육료 기준은 평균 오후 6시 정도의 귀가 기준의 8시간 종일제를 중심으로 3시간 정도 일찍인 오후 3시 이전에 귀가하는 단축형과 1시간 30분 정도가 늘어나서 7시 30분까지 보육하는 12시간 종일제의 유형으로 나누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언급할 점은, 첫째, 종일제를 둘로 나누었다는 점이다. 이용 가능 시간은 12시간으로 명시하였으나 실제 이용시간은 보육료 책정시에 차이를 둠으로서 실제에 반영하였다. 종일제라도 보육교사가 6시 퇴근이 가능하도록 6시 이전 귀가 이동과 그 이후 귀가하여 교사의 연장근무나 별도 교사 배치를 필요로 하는 이동으로 구분한다. 둘째는 다수가 단축형으로 오후 2시를 선호하였으나 3시로 설정한 것은 2시 정도부터 귀가가 이루어짐을 전제로 귀가 시간 등을 감안하여 최대 3시로 설정한 것이다.

소요예산의 감축이나 추가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아동 규모를 추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현재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하원시간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하원 시각을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현재 하원시각에 부모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보육 요구가 이미 다 반영되었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취업모, 미취업모, 한 부모 등 동일한 부모 조건이라도 이용시간과 등하원시각이 일정하지 않다. 대상을 나누어서 분석하나, 전체를 하나로 보고 분석하나 대상의 특성별 분포 비중이 변하지 않으면 차이가 없는데, 집단 특성간 비율의 분포 차이가 일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현재 보육시설

이용에 부모 요인에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취업모, 미취업모, 한 부모 등 부모 조건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에 하등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보육 시설들이 대부분 종일제를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이용시간 미충족 요구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2009년 실태조사 자료 분석에서도 실제 이용시간과 희망 이용시간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에서 보육시설 하원시각 분포를 기준으로 아동의 연령구분별 이용시간을 구분하였다. 앞의 제2장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2009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결과<sup>34)</sup>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12시간 종일제 이용아동 비율은 18.4%로 추정하였고 단축형은 36.5%, 45.2%는 기준이 되는 일반 종일제로 추정하였는데, 이러한 분류를 정책대안 시 기준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연령별로는 0, 1세아의 하원시각이 늦은 비율이 2세 이상 유아보다 많다. 특히 0세아는 41.3%가 12시간제 보육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조사에서는 반일반인 오전과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시간 이용이 가능성 조사 결과는 오전 이용 16.9%, 2~3시에 귀가하는 시간 이용 56.8%이었는데(제2장 표 II-3-13 참조), 이와 비교하면 단축형 36.5% 추정치는 낮지만, 실제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표 V-3-1〉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아동 비율 추정(2010)

단위: 천원

구분	0	1	2	3	4	5	전체
아동수	107,525	198,831	268,038	227,966	193,934	152,380	
단축형	28.3	34.8	37.0	38.7	38.2	33.5	36.5
종일제	30.4	42.1	46.5	43.8	45.7	50.5	45.2
12시간제	41.3	23.0	16.5	17.6	16.1	16.0	18.4

## 나. 교사 배치

### 가) 근무시간

근로기준법과 3장에서 나타난 시설장, 교사, 부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교사 배치는 교사대 아동 비율이 정하는 교사의 기본 인원을 정규교사로 하고, 정규교사

34) 제II장의 〈표 II-3-2〉 참조.

의 근무시간은 평일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기본 근무시각은 9시부터 6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한다.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본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임을 고려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 나) 탄력근무, 연장 근무 및 교사 추가 배치

6시 이후 귀가하는 아동 보육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탄력근무를 하는 방법,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교사 추가 배치가 바람직한데, 이도 단시간교사와 정규교사를 고려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시간제 교사가 근무시간의 30~50%를 정교사와 함께 하며, 교사들의 병가 및 연수 등으로 인한 근무의 공백을 대체교사를 이용하여 보완하기도 한다.

제1안은 현재와 같이 탄력근무를 하는 방법이다. 현재 정부는 보육시설에서 야간보육으로 저녁 9시 30분까지 보육하는 아동이 매일 1명 이상일 경우에 야간보육교사를 1인 배치를 지원하고, 그 이외에는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탄력 적용과 초과근로 수당을 적용할 뿐, 일반적 교사의 추가 배치는 없다. 즉, 9시 30분 이전까지는 실제로 아동보육인력이 필요하여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실제로 7시 30분 이후 야간보육을 하면서도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sup>35) 36)</sup>

제2안은 보육교사에게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소요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현재도 보육교사에게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으나 이 비용이 보육료나 예산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

제3안은 추가로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으로, 교사는 우선은 제도 도입 단계에서는 제도 도입을 위한 방편으로 단기적으로는 단시간제교사의 배치도 고려한다. 의견조사에서 일부 시설장이나 교사가 책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으나, 현재는 대다수가 단시간 근로 교사 배치를 찬성하고 있다. 단시간제 교사는 보조교사 개념으로 하며, 단시간제 교사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후생복지를 보장하고, 경력 산정을 종일제 교사의 대비 일정 비율로 적용하는 등 적절한 근로조건이 함께 모색되어야

35) 야간보육을 매일 이용하는 아동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야간보육 수요는 일정하지 않고 간헐적이므로 소규모 시설에서는 정부의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36) 유치원은 종일제 운영 시 종일제 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함. 이러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교사 배치 기준의 차이는 보육료와 교육비 차이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나아가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급여는 물론 두 직종에 대한 사회적 위상으로까지 제반 근로여건의 차이를 가져옴.

한다. 그러나 시간제 교사보다는 근무시간에 시차를 두고 배치되는 종일제 정규 교사가 바람직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추가교사 배치 대상은 우선은 6시 이후 7시 30분 보육시에 적용하고 추후에 점차적으로 단축형 보육 이후 보육에 적용한다. 대부분 12시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하는 국공립보육시설부터 교사를 우선 배치한다.

다)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교사대 아동 비율은 보육시설의 경우 오후 3시 이전에 귀가하는 보육유형과 기본적인 8시간형 종일제 유형의 교사대 아동 비율은 현재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할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또한 실제로 시간단축형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반을 오전부터 별도로 구성하기도 어렵다.

8시간 이후 12시간 종일제 보육 시에는 반의 구성이나 교사대 아동비율에서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영아와 만 4, 5세 유아는 오전의 교사대 아동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만3세 유아가 만 4, 5세 유아와의 혼합반 가능성이 높음은 감안하여 1:20으로 조정한다.

〈표 V-3-2〉 비용 산출에 적용한 보육시설 이용시간 유형별 교사배치와 교사 1인당 아동수

이용시간	교사근무(배치)유형	교사대 아동비율
시간단축형	- 종일제	- 영유아보육법 적용
종일제	- 교사 배치방법 • 1안) 종일제교사 + 탄력근무 • 2안) 종일교사 + 연장근무 수당 • 3안) 종일교사 + 단시간 또는 종일제(시차) 교사 - 3안의 추가교사 배치 적용 대상 • 1안) 오후 6시 이후 보육시 • 2안) 단축형 이후 보육시	- 영유아보육법 적용 - 8시간 이후 보육시 3세아만 1:20

## 다. 비용

보육비용 산정은 기본가정에 따라 차이가 난다. 본 연구에서도 설정한 가정에 따라 기준이 되는 연령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보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은 현재 정부가 채택한 단가 산정 방식에 반영된 항목을 기준으로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로 제한하였다. 산출의 근거로는 인건비는 2010년도 월급여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이외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는 조세연구원(2005), 김현숙(2008), 서문희·박수연(2008) 연구 등 기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2차 작업으로 산출하였다. 산출방법은 항목별로 가정을 수정하여 적용하였고, 시설 규모는 2008년 연구와 동일하게 20인 미만 시설, 50인 시설, 97인 시설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2005년 대비 2010년 6월 기준 물가상승률은 15.5%(통계청, 2010)를 적용하였다.

### 1) 8시간 종일제 보육비용

#### 가) 추정 방법

보육비용 구성 항목별 추정방법은 인건비는 2010년 월급여액과 2009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이외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는 기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인데, 인건비 산정은 전체 보육비용과 마찬가지로 기본 가정을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육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먼저, 인건비 산출은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른 인력 배치기준을 적용하였다. 20인 시설에는 영유아보육법으로는 시설장이 교사를 겸임할 수 있고 취사부를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취사부는 두지 않고 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시설장 1인을 두는 것으로 단가에 반영하였다.<sup>37)</sup> 50인 시설과 97인 시설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장과 교사 이외에 취사부를 두는 것으로 하였다.

인건비의 경우, 교사와 시설장의 기준 호봉은 2009년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동 조사에서 교사의 평균 총 근무연수가 민간

37) 2009년 말 보육통계에 따르면 가정보육시설 수 17,359개소, 취사부 수 900명으로, 대부분의 가정보육시설이 취사부를 두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였음.



시설이 평균 3년 9개월, 가정시설이 평균 3년 2개월임을 반영하여(유희정·이미화 외, 2009) 보육교사 4호봉으로 설정하고 보육사업안내에 제시된 월 보수액을 적용하였다. 또한 시설장 경력은 민간시설의 경우 평균 7.8호봉, 가정보육시설은 원장은 3.4호봉으로 조사되어(유희정·이미화 외, 2009), 이를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8호봉으로 산정하였다.<sup>38)</sup> 가정보육시설은 시설장이 교사를 겸직하므로 교사 1인에게 시설장 8호봉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교사와 시설장 급여 차액을 보육 아동 전체에 분산하였다. 취사부에게는 1호봉을 적용하였다.

인건비에 4대보험료과 퇴직적립금의 사용자 부담금을 고려하였다. 이들은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는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공동으로 1/2씩 분담하여야 하고 퇴직적립금은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배려가 없을 경우 사용자는 월보수액에서 이를 제하여야 한다.<sup>39)</sup>

점심식사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고 수당으로는 반영하지 않았다.

둘째, 급간식비는 조세연구원이 산출한 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0세아의 경우 산출 단가의 1/2로 조정하였다.<sup>40)</sup> 0세아는 대부분이 분유나 이유식을 집에서 가지고 등원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였다. 한편 만2세 이상아의 급간식비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15%를 하향 조정하였다.

셋째, 교재교구비 역시 조세연구원이 산출한 단가에서 유아는 현장학습비를 제외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다. 보육시설은 현장학습비를 별도로 받고 있다. 시·도와 시·군·구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현장학습비 수납 지침을 제시하는데, 대체로 월 1회, 10,000원을 책정한다. 실험실습비는 보육시설에서는 적용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재료비를 반영하는 항목으로 포함하였다.

넷째, 관리운영비의 경우, 정부의 보육단가 산정이나 기존의 연구(변용찬 외, 2002; 삼성복지재단, 2000)들은 모두 보육시설 이용 아동 전원에게 균등 분할하여 책정하였고, 일본의 보육단가도 균등 분할 방식을 사용하였으므로(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 2008a), 조세연구원 산출 자료를 기초로 수정 적용하였다.<sup>41)</sup>

38) 교사가 시설장이 되기까지 민간보육시설 시설장은 2급 자격취득 후 최소한 5년이 소요되고, 가정보육시설 시설장은 2급 교사 이후 최소한 2년이 소요됨.

39) 4대 보험료과 퇴직금 사용자 부담금은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2.67%,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각각 0.7%, 노인요양보험 0.34%이며, 여기에 퇴직금 부담금은 월 급여의 8.33%로, 월급여 기준으로 총 17.25%가 됨.

40) 이는 2005년 여성가족부가 삭감한 바와 동일함.

41) 조세연구원(2005) 연구에서는 교사대 아동 비율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주는 방법으로 연령별 관리운영비를 차등 책정하였음.

다섯째, 시설설치비는 조세연구원의 산출한 결과를 수용하여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다. 현재 보육시설 설치자의 토지와 건축비 투자 환수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경우 재무회계규칙에서 기타 운영비를 10%까지 인정<sup>42)</sup>하고 있어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였다.

#### 나) 아동 1인당 보육비용

위와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한 방안의 연령별 시설규모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은 <표 V-3-3>과 같다.

〈표 V-3-3〉 종일제 보육비용(2010)

단위: 천원

구분	50인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이상아
<b>가정</b>					
인건비(1안)	612.3	381.1	282.0		
급식비	32.6	46.5	46.5		
교재교구비	17.3	17.3	15.0		
관리운영비	37.0	37.0	37.0		
시설설치비	14.0	14.0	14.0		
계(1안)	713.2	495.9	394.5		
<b>50인 민간개인</b>					
인건비(1안)	652.4	421.2	322.1	190.0	161.1
급식비	32.6	46.5	46.5	46.5	62.0
교재교구비	17.3	17.3	15.0	29.0	30.4
관리운영비	37.0	37.0	37.0	37.0	37.0
시설설치비	15.7	15.7	15.7	15.7	15.7
계(1안)	755.0	537.7	436.4	318.2	306.2
<b>97인 민간개인</b>					
인건비(1안)	616.3	385.2	286.1	154.0	125.1
급식비	27.8	39.7	39.7	39.7	52.9
교재교구비	17.3	17.3	15.0	29.0	30.4
관리운영비	37.0	37.0	37.0	37.0	37.0
시설설치비	14.7	14.7	14.7	14.7	14.7
계(1안)	713.2	493.9	392.5	274.4	260.1

이는 50인 시설은 0세아 755,000원, 만1세아 537,700원, 만2세아 436,400원, 만3세

42) 2008년부터 재무회계규칙에서 기타 운영비를 10%까지 인정함. 그 전에는 4%를 적용하였음.

아 318,200원, 만4세 이상아 306,200원이다. 97인 시설의 보육비용은 50인 시설 비용보다 다소 낮아서. 0세아 713,200원, 만1세아 493,900원, 만2세아 392,500원, 만3세아 274,400원, 만4세 이상아 260,100원이다. 20인 이하 시설 영아 보육비용은 내역 구성은 다르지만 총액은 97인 시설에 근접한다.

## 2) 시간단축형 보육

시간단축형 보육비용은 앞에서 산출한 8시간 종일제 보육단가를 기준으로 간식비와 관리운영비를 일부 삭감하여 산출하였다.

먼저 급간식비는 8시간 종일제 급간식비에서 두 가지 요인을 적용하여 하향 조정하였다. 시간단축형 보육의 경우 오후 간식이 제외되고, 또한 대체로 토요일에는 보육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전체 급간식비에서 70% 정도를 산정하였다. 이는 점심식사와 간식간의 열량 비율이 30:15(삼성복지재단, 2000)로 간식 1회가 보육시설에서 섭취하여야 하는 열량의 1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하고, 또 토요일이 보육 일수 평균 26일 중 4일임을 감안한 것이다.

관리운영비 또한 종일제 비용의 90%를 적용하였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의 보육활동을 감안하면 난방비나 전기세 등에 다소의 감소요인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10%의 변동을 두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인건비, 교재교구비, 시설설치비는 8시간 종일제 비용의 100%를 모두 인정하였다.

인건비의 경우, 보육 아동이 아침 9시부터 보육 받고 오후 3시 이전에 귀가한다고 하여도 종일제 교사, 시설장, 취사부 등이 있어야 하므로 인건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사에서도 많은 시설장이나 교사가 단축형 보육시간 제도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보육료가 이용시간과 정비례하여 감축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선택지이다.

교재교구비도 종일제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시간단축형의 경우 8시간 종일제에 비하여 약 3시간 먼저 귀가하므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의 보육활동을 고려하여 소요되는 교재교구비의 차이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은 보육프로그램 일과운영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내 자유선택활동, 정리정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다. 특기 중심의 특별활동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추가되는 실내 자유 선택활동에 소요되는 교재교구비는 오전활동에 필요한 교재교구이지 이 시간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되는 것은 아

니다. 따라서 시간단축형 보육의 교재교구비는 8시간 종일제 비용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시설설치비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추정된 보육비용을 <표 V-3-4>에 제시하였다.

시간단축형 보육비용은 8시간 종일제 보육비용과 비교하여 단지 급식비와 관리비에서만 차이가 나므로 사실상 차이는 최대가 만4세 이상아의 경우로 금액은 22,200 원 정도이다(표 V-3-5 참조).

<표 V-3-4> 단축형 보육비용(2010)

단위: 천원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이상아
<b>가정</b>					
인건비(1안)	612.3	381.1	282.0		
급식비	22.8	32.6	32.6		
교재교구비	17.3	17.3	15.0		
관리운영비	33.3	33.3	33.3		
시설설치비	14.0	14.0	14.0		
계(1안)	699.7	478.3	376.9		
<b>50인 민간개인</b>					
인건비(1안)	652.4	421.2	322.1	190.0	161.1
급식비	22.8	32.6	32.6	32.6	43.4
교재교구비	17.3	17.3	15.0	29.0	30.4
관리운영비	33.3	33.3	33.3	33.3	33.3
시설설치비	15.7	15.7	15.7	15.7	15.7
계(1안)	741.6	520.1	418.7	300.6	283.9
<b>97인 민간개인</b>					
인건비(1안)	616.3	385.2	286.1	154.0	125.1
급식비	19.5	27.8	27.8	27.8	37.0
교재교구비	17.3	17.3	15.0	29.0	30.4
관리운영비	33.3	33.3	33.3	33.3	33.3
시설설치비	14.7	14.7	14.7	14.7	14.7
계(1안)	701.1	478.3	376.9	258.8	240.5

<표 V-3-5> 종일제 대비 단축형 보육비용 차이(2010)

단위: 천원

구분	0	1	2	3	4
20인 이하	13.5	17.7	17.7		
50인	13.5	17.7	17.7	17.7	22.3
97인	12.0	15.6	15.6	15.6	19.6

### 3) 12시간 종일제

12시간 종일제 보육비용을 앞에서 산출한 8시간 종일제 보육단가를 기준으로 인건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첫째, 교사 인건비 문제이다. 이를 고려할 경우와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차이는 크다. 인건비를 반영할 경우, 인건비 산출에서 추가 교사 인건비는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인건비 적용 대상은 보육교사 인건비만을 반영하였고, 기타 인력과 시설장 인건비<sup>43)</sup>는 제외하였다. 교사 인건비 산출에서는 두 가지 방안을 적용하였다. 첫째는 오전에 근무한 교사의 시간 연장근무의 형태로 인건비를 산출하는 방안, 둘째는 시간제 정규 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이다.<sup>44)</sup>

다음으로는 교사대 아동 비율은 3세에 한하여 4~5세와 같이 1:20으로 조정하였다. 실제로 많은 보육시설에서 아동이 비교적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경우에 연령별 반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연령통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때 교사 대비 아동수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를 반드시 교사대 아동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의 아동 때문에 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둘째, 급간식비는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다. 현재 일부 보육시설에서는 저녁식사비로 추가비용을 받거나 아니면 무료로 저녁식사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식사 비용이 권정섭취 열량을 고려할 경우 급간식비의 66.6%로 추정되므로 이 정도의 비용이 추가되어야 하겠으나 점심식사를 고려할 때 규모의 경제 등을 반영하여 최소 수준으로 50%를 반영하였고, 취사부 인건비는 추가하지 않았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저녁식사 비용을 하루 1,000원을 기준으로 수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셋째, 관리운영비는 저녁식사 준비 등을 감안하여 가스비나 전기료, 난방비에서 추가 요인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비용이 관리운영비에 차지하는 비율은 삼성복지재단(2000)에서 추정한 관리운영비 구성항목별 분포 자료를 참고하여 약 10% 증액으로 가정하였다.

43) 보육시설이 운영되는 동안 시설장은 근무하여야 함.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장이 대표자로 운영자이고 피고용인이 아니므로 제외하였음.

44) 시차를 두고 근무하는 종일제 정규교사의 배치는 현실과 괴리가 커서 논의에서 제외하였음.

〈표 V-3-6〉 12시간 종일제 보육비용(2008)

단위: 천원

구분	50인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이상아
가정					
인건비(1안)	612.3	381.1	282.0		
인건비(2안)	720.2	445.9	328.3		
인건비(3안)	901.3	554.5	405.9		
급식비	48.9	69.8	69.8		
교재교구비	17.3	17.3	15.0		
관리운영비	40.7	40.7	40.7		
시설설치비	14.0	14.0	14.0		
계(1안)	733.2	522.9	421.5		
계(2안)	841.2	587.6	467.7		
계(3안)	1022.2	696.3	545.3		
50인 민간개인					
인건비(1안)	652.4	421.2	322.1	190.0	161.1
인건비(2안)	760.4	486.0	368.4	211.6	177.3
인건비(3안)	941.4	594.6	446.0	247.8	204.5
급식비	48.9	69.8	69.8	69.8	93.0
교재교구비	17.3	17.3	15.0	29.0	30.4
관리운영비	40.7	40.7	40.7	40.7	40.7
시설설치비	15.7	15.7	15.7	15.7	15.7
계(1안)	775	564.7	463.3	345.2	340.9
계(2안)	883.0	629.5	509.6	366.8	357.1
계(3안)	1064.0	738.1	587.2	403.0	384.3
97인 민간개인					
인건비(1안)	616.3	385.2	286.1	154.0	125.1
인건비(2안)	724.3	449.9	332.3	175.6	141.3
인건비(3안)	905.3	558.5	409.9	211.8	168.4
급식비	41.7	59.6	59.6	59.6	79.4
교재교구비	17.3	17.3	15.0	29.0	30.4
관리운영비	40.7	40.7	40.7	40.7	40.7
시설설치비	14.7	14.7	14.7	14.7	14.7
계(1안)	730.7	517.5	416.1	298	290.3
계(2안)	838.7	582.2	462.3	319.5	306.4
계(3안)	1019.7	690.8	539.9	355.7	333.6

교재교구비와 시설설치비는 8시간 종일제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일과운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내외 자유선택활동으로 오전 활동의 심화 활동, 특별히 계

획된 프로젝트 하기, 일과 평가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교재교구비의 추가 요인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시설설치비는 8시간 종일제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12시간 종일제 보육비용은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는 방안과 인건비를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후자의 경우 인건비 산정 방법으로 오전에 근무한 교사의 시간 연장근무의 형태로 인건비를 산출하는 방안과 시간제 정규 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 두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로서 총 세 가지가 산출되었다.<sup>45)</sup> 인건비 반영 시 전자의 경우 오후에 하루 1.5시간, 월 22일, 연장근무 가정치 0.5배를 적용하였으며, 후자는 4시간 근로에 4대보험을 보장을 적용하였다. 등원시간이 이른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자 하였다. 교사가 8시간 근로의 범주에서 돌아가면서 당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정한 세 가지안 중에서, 12시간 종일제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보육료는 50인 시설을 기준으로 보면 8시간제 보육료에 비하여 0세아는 12만8천원, 1세아는 9만2천원, 2세아는 6만3천원, 유아는 약 5만원 내외가 추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시간 교사를 둘 경우에는 50인을 기준으로 보면 0세아 31만원에서 4세이상아 7만8천원 정도까지 증가한다.

〈표 V-3-7〉 종일제 대비 12시간 종일제 보육비용 차이(2010)

단위: 천원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이상아	
	인건비	기타	인건비	기타	인건비	기타	인건비	기타	인건비	기타
20인 이하	108.0	20.0	64.8	27.0	46.3	27.0				
50인	108.0	20.0	64.8	27.0	46.3	26.9	21.6	27.0	16.2	34.7
97인	108.0	17.5	64.8	23.6	46.3	23.6	21.6	23.6	16.2	30.2

## 4. 일과 운영 및 프로그램

### 1) 기본 원칙

기본 종일제는 오후 6시 하원하게 되므로 8시간을 기본으로 일과가 운영되며, 단축형은 기본 종일제보다 3시간 정도 앞서 오후 3시까지로 구성된다. 12시간 종일제

45) 시차를 두고 근무하는 종일제 정규교사의 배치는 현실과 괴리가 커서 논의에서 제외하였음.

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구성된다. 따라서 유형별 일과운영을 살펴 보면, 단축형은 종일제 기준으로 오후간식 전까지의 활동으로 구성되며, 12시간 종일제는 기본 종일제 이후 저녁식사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시설 일과 운영 사례는 <표 V-4-1>과 같다. 단축형은 기본 종일제 보육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하원 시간만 앞당겨진다고 볼 수 있다.

<표 V-4-1>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 일과 운영 사례(만4세)

시간	기본 종일제	시간단축형	12시간 종일제
07:30~09:00	등원	등원	등원 및 통합보육
09:00~9:40	오전 간식 및 하루일과 계획하기	오전 간식 및 하루일과 계획하기	오전 간식 및 하루일과 계획하기
9:40~10:50	실내 자유선택활동	실내 자유선택활동	실내 자유선택활동
10:50~11:00	정리정돈	정리정돈	정리정돈
11:00~12:00	대소집단 활동	대소집단 활동	대소집단 활동
12:00~13:00	점심식사 및 이닦기	점심식사 및 이닦기	점심식사 및 이닦기
13:00~14:30	휴시 및 낮잠	휴시 및 낮잠	휴시 및 낮잠
14:30~15:00	낮잠/동화	하원	낮잠/동화
15:00~16:30	오후간식/실외활동		오후간식/실외활동
16:30~17:30	오후 자유선택활동		오후 자유선택활동
17:30~18:00	하원		동화
18:00~19:00			저녁식사
19:00~19:30			통합보육 및 하원

주: 여성가족부 보육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재구성.

기본 종일제와 단축형, 12시간 종일제 모두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반영한 표준 보육과정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표준보육과정은 종일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이를 기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부모의 요구와 아동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연령에 따라 특별활동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종일제 이용 영유아에게만 특별활동을 가능하게 할 경우, 단축형 이용 부모들의 불만이나 기타 사교육 이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활동은 단축형 이용 영유아들도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종일제와 단축형 모두 특별활동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



해서는 오전에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해서는 연령에 따라 특별활동 가지 수나 이용시간 등 특별활동 운영에 관한 정부의 기본 원칙과 지침이 마련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시간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됨에 따라 오후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운영하는 형태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유형별 일과 운영 및 프로그램

### 가) 종일제

기본 종일제는 현재와 같은 일과운영 및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오전활동 및 단축형 이용 영유아가 하원하는 오후 3시까지의 현재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볼 수 있다. 오후 프로그램은 단축형 이용 영유아가 하원한 후이므로 이용 영유아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집단 활동보다는 소집단이나 개별활동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따라서 오전에 참여했던 활동을 소집단을 중심으로 심화·확장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면 1~2개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단축형 이용 영유아 하원 후 연령혼합반을 구성할 경우, 혼합반 연령 영유아 모두가 활동 가능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며 담당 교사는 연령에 따라 적절히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단축형

단축형은 오후 3시까지 종일제 보육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하원 시간만 앞당겨진다. 따라서 단축형도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축형의 경우에도 특별활동에 대한 수요가 있으므로 표준보육과정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연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특별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심층면접이나 전문가조사에서도 단축형에서도 부모들의 특별활동 요구가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운영시간을 고려한다면 단축형의 경우 유아의 경우에만 1개 특별활동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다) 12시간 종일제

12시간 종일제는 기본 종일제 이용 영유아가 오후 6시에 하원한 후, 저녁식사와 통합보육하는 오후 7시 30분까지로 구성된다. 오후 6시까지는 기본 종일제와 같은 일과 및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진다. 저녁식사후 통합보육시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추가 구성하기보다는 남은 영유아들을 편안하게 보육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담당교사는 연령에 따라 적절히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표 V-4-2〉 이용시간 유형별 운영

구분	기본 종일제	단축형	12시간 종일제
원칙 대상	- 맞벌이 가정아동 - 부모가 근로 중인 한부모 가정아동 - 조손가정 아동 등 종일제 보육이 필요한 아동	- 종일형 대상이 되지 않는 아동 (전체 이용 가능)	- 맞벌이 가정아동, - 부모가 근로 중인 한부모 가정아동 - 조손가정 아동 등 종일제 보육이 필요한 아동
이용 시간	오전 7: 30 ~오후 6:00	오전 9:00 ~ 오후 3:00	오전 7: 30 ~오후 7:30
반 구분	현행 연령별 반 정원을 준수하며 종일형과 단축형 아동을 함께 보육 * 단축형 아동이 먼저 귀가		
보육료	- 현행 유지	- 종일형 아동에 비해 낮은 보육료 적용	- 종일형 아동에 비해 높은 보육료 적용 - 인건비는 별도 지원
프로그램	- 표준보육과정에 근거 - 1~2개 특별활동 가능 - (연령 혼합반 구성시) 연령혼합 프로그램	- 표준보육과정에 근거 - 연령에 따라 1개 특별활동 가능	- 표준보육과정에 근거 - 1~2개 특별활동 가능 - (연령 혼합반 구성시) 연령혼합 프로그램

5. 보육료 지원체제개편 모형 및 비용 추정

보육료 지원체제개편 모형 및 비용은 세 가지 방안으로 추정하였다. 제1안은 이용시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교사의 근무형태는 현실을 그대로 두는 방안이다. 제2안은 1안과 기본 구조는 동일하지만 교사의 근무환경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모형이다. 한편 제3안은 공통적 보육시간 이외 시간부터는 시간제 바우처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 가. 제1안

### 1) 이용시간 유형

보육 이용시간은 평균 오후 6시 정도의 귀가 기준의 8시간 종일제를 중심으로 3시간 정도 일찍 오후 3시 이전에 귀가하는 단축형과 1시간 30분 정도가 늘어나서 7시 30분까지 보육하는 12시간 종일제의 유형으로 나누고자 하였다.

종일제라도 보육교사가 6시 퇴근이 가능하도록 6시 이전 귀가 아동과 그 이후 귀가하여 교사의 연장근무나 별도 교사 배치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구분한다. 기본적으로 이용가능한 시간과 실제 아동의 이용시간을 구분하자는 것이다.

### 2) 교사 배치

#### 가) 근무시간

교사 배치는 교사대 아동 비율이 정하는 교사의 기본 인원을 정규교사로 하고, 정규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기본 근무시각은 9시부터 6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한다.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본다.

#### 나) 교사 탄력근무

6시 이후 귀가하는 아동 보육을 위해서는 탄력근무로 8시간 근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앞에서 제시한 교사 배치 방안 제1안을 적용하는 것이다. 보육시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오전 당직을 두는데 저녁에도 이른 아침시간과 마찬가지로 당직제를 통하여 교사 개개인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

#### 다)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교사대 아동 비율은 보육시설의 경우 오후 3시 이전에 귀가하는 보육유형과 기본적인 8시간형 종일제 유형의 교사대 아동 비율은 현재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3) 보육료 책정 및 분담

일반 종일제를 기준으로 보육비용의 증감 정도를 추정하고, 정부와 부모가 증감되는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 가) 단축형

##### (1) 지원단가의 조정과 분담

시간단축형 보육비용은 8시간 종일제 보육비용과 비교하여 급식비 30%, 일반관리비 10%의 감축 요인이 있다. 인건비는 동일하고 단지 급식비와 관리비에서만 차이가 나므로 사실상 비용 차이는 최대가 만4세 이상아의 경우로 금액은 22,200원 정도이다.

종일제 기본시간보다 짧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단축형을 둘 경우, 보육료 지원 정책은 비교적 간단하다. 다소 낮아진 단축형 보육료를 지원 단가에 반영하자는 것으로, 보육료 지원단가가 최대 22,000원 낮아지게 된다.

즉, 보육료의 하향조정이 보육지원단가에 반영되므로 보육료 정부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정부와 부모의 부담도 다소 낮아진다. 정부의 보육예산에서도 큰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재정 지원이 다소 줄어든다.

부모 입장에서도 개별적으로는 비용이 줄어드는 정도가 미미하다. 그러나 보육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다소 보육료 수입 감소 요인이 된다. 특히 단축형 이용아동이 많을 경우에 수입 감소요인이 되므로 단축형 아동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종일제 대비 단축형 비용의 차이를 지원단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는 두 가지 부가적 효과를 갖는다. 우선 부모들이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차이를 체감하도록 하고, 또한 이러한 기준은 지방정부의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보육료 상한선 고시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2) 예산 감축 추정

그러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예산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가? 연령별 지원단가 감액 비용, 추가 연령별 보육료 지원 아동 중 해당아동 비율, 연령별 보육료 지원 비율별 아동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2009년 보육통계 기준으로 감축되는 비용은 월 51억 9639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623억원이 된다. 연령별로는 보육아동 규모가 많은 만 2, 3세아가 각각 10억 이상으로 가장 많다(표 V-5-1 참조).

〈표 V-5-1〉 종일제 대비 단축형 보육지원금 월 절감 효과(2010)

단위: 천원

구분	전체	0	1	2	3	4	5
보육료 지원 아동수	795,121	72,730	138,265	175,710	148,448	129,914	130,054
적용아동비율	36.5	28.3	34.8	37	38.7	38.2	33.5
차액(50인시설 기준)	-	13.5	17.7	17.7	17.7	22.3	22.3
전액 지원아동 비율	83.8	88.6	84.6	80.4	77.6	75.8	100.0
60% 지원아동 비율	9.4	6.6	9.0	11.2	12.9	14.1	0.0
30% 지원아동 비율	6.9	4.8	6.4	8.4	9.6	10.2	0.0
감축 비용	5,196,389	341,686	905,497	1,203,596	1,003,716	770,325	971,568

〈표 V-5-2〉 종일제 대비 단축형 보육비용 차이(2010)

단위: 천원

구분	0	1	2	3	4
20인 이하	13.5	17.7	17.7		
50인	13.5	17.7	17.7	17.7	22.3
97인	12.0	15.6	15.6	15.6	19.6

나) 12시간 종일제

(1) 추가 비용 분담 방안

12시간 종일제의 경우 저녁식사와 관리운영비 증가분은 보육료 지원 상태에 따라 정부와 부모가 분담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겠으나, 이를 모두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저녁식사비는 일반 종일제 급간식비의 50%를 적용하고 관리운영비는 10%를 적용한다. 현재 정부가 저녁 식사 비용은 1,000원을 추가로 받도록 하고 있는데, 기타 명목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이 정도 수준이다.

오후 6시 이후 보육을 정부가 저녁 식사 비용은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취업모에게 추가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더러 제도 도입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오후 6시 이후 보육을 연장보육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연장보육 시작 시간을 1시간 30분 앞당기는 방안이다. 교사 문제는 야간 연장보육교사도 이 시간에는 대부분이 출근해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전액 지원 대상 이외 부모 보육료 추가 부담이 있다.

## (2) 추가 소요 예산 추정

먼저 지원단가 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추정하였다. 이는 지원단가 추가액, 추가 보육료 지원 아동 중 해당아동 비율, 보육료 지원 비율별 아동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 비용은 09년 보육통계 기준으로 추가비용은 35억 826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430억원이 된다. 연령별로는 0세아가 가장 비중이 높다(표 V-5-4 참조).

〈표 V-5-3〉 종일제 대비 12시간 종일제 보육비용 차이(2010)

단위: 천원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이상아
20인 이하	20.0	27.0	27.0		
50인	20.0	27.0	27.0	27.0	34.7
97인	17.5	23.6	23.6	23.6	30.2

〈표 V-5-4〉 종일제 대비 12시간 종일제 보육지원금 월 추가 (2010)

단위: 천원

구분	전체	0	1	2	3	4	5
보육료 지;원 아동수	795,121	72,730	138,265	175,710	148,448	129,914	130,054
적용아동비율	18.4	41.3	23.0	16.5	17.6	16.1	16.0
차액(50인 기준)1	-	20.0	27.0	27.0	27.0	34.7	34.7
전액 지원아동 비율	83.8	88.6	84.6	80.4	77.6	75.8	100.0
60% 지원아동 비율	9.4	6.6	9.0	11.2	12.9	14.1	0.0
30% 지원아동 비율	6.9	4.8	6.4	8.4	9.6	10.2	0.0
추가 비용	3582610	240009	657035	760982	641295	561228	722060

만약에 6시 이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보육 비용을 모두 정부가 부담할 경우에 월 44억원, 년 528억원이 소요된다.

## 4) 결론 및 고려사항

교사의 오전 및 저녁 당직 등 탄력근무를 전제로 단축형 보육과 12시간 종일제 보육료 조정을 통하여 개편하는 방안이다. 인건비 증가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정부의 추가 재정 소요는 없고, 오히려 약간의 비용이 절약될 수 있다. 단축형 아동

보다 오후 7시기 반 귀가 아동비율이 낮기 때문에 일찍 가는 아동 간식비를 절약하여 늦게 가는 아동 저녁식사 비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육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리 선호할 것 같지는 않다. 이 방법은 단축형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보육시설에 따라서는 운영비 수입에 감소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의 반발이나 단축형 기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특별활동 명목으로 줄어든 비용을 보충하고 아동을 늦게까지 보육시설에 두려는 경향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단축형 아동만큼 정원 외로 시간제 보육 아동을 보육하게 하는 방안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들은 일부 아이들의 빠른 귀가로 반 운영에 다소의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늦게 귀가하는 아동이 있는 한 실질적으로 근무환경의 개선을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실상 저녁 탄력근무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부모는 일하는 엄마의 경우 정부가 추가 소요 비용을 부모와 나누고자 할 경우 전액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취업모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므로 저항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 부분을 담당해야 제도가 무리 없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하지 않는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인데, 특히 보육시설 특별활동에의 참여가 어렵다고 불평할 소지가 있다.

아동의 경우는 가정에서 오후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낸다면 가장 좋겠으나 특별활동을 위하여 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 공무원 입장에서는 종일제 보육 대상 여부를 구분하여 종일제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된다. 우선은 모의 취업 등 종일제 보육 자격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나. 제2안: 중장기 방안

### 1) 이용시간 유형

이용시간 유형은 제1안과 동일하다. 평균 오후 6시 정도의 귀가 기준의 8시간 종일제를 중심으로 3시간 정도 일찍 오후 3시 이전에 귀가하는 단축형과 1시간 30분 정도가 늘어나서 7시 30분까지 보육하는 12시간 종일제의 유형으로 나누고자 하였다.

## 2) 교사 배치

### 가) 근무시간

교사 근무시간은 제1안과 동일하다. 교사대 아동 비율이 정하는 교사의 기본 인원을 정규교사로 하고, 정규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기본 근무시각은 9시부터 6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한다.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본다.

### 나) 교사 연장근무 수당 또는 단시간교사 배치

6시 이후 귀가하는 아동 보육을 위해서는 교사에게 저녁 1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거나 4시간 정도의 단시간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이다. 제1안과 달리 앞의 교사 배치에서 제안한 제2안과 제3안의 일부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 다)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교사대 아동 비율은 보육시설의 경우 오후 3시 이전에 귀가하는 보육유형과 기본적인 8시간형 종일제 유형의 교사대 아동 비율은 현재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오후 연령혼합반은 만3세아에 한하여 1:20을 적용하였으며, 6시 이후 교사 배치시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적용하였다.

## 3) 보육료 책정 및 분담

### 가) 단축형

단축형 보육은 보육료나 예산 등은<제1안>과 동일하다. 연령별 지원단가 감액비용, 추가 연령별 보육료 지원 아동 중 해당아동 비율, 연령별 보육료 지원 비율별 아동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2009년 보육아동수 기준으로 감축되는 비용은 월 51억 9639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623억원이 된다(표 V-1-2 참조).

### 나) 12시간 종일제

#### (1) 추가 비용 분담 방안

12시간 종일제는 8시간 종일제에 비하여 오전과 저녁 각각 1시간 30분씩 보육시간이 길다. 그런데 아침시간은 보육료에 반영하지 않고, 저녁 시간만 반영하였는데,



기본 이용시간인 종일제보다 1.5시간 더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건비만 반영하여도 추가되는 비용의 규모는 적지 않다. 야간 및 연장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급여의 1.5배로 정하고 있다.

이 비용을 모두 기본 보육료에 포함할 경우 취업모 등 장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부담의 증가가 가시화되므로 제도 개선의 결과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렵다. 종일제 보육 및 유아교육은 모의 취업, 직업훈련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을 적절하게 돌보아 어려운 경우에 한하므로 그 비용을 부모에게 부담시키기 어렵다. 모의 취업여부 등 조건 없는 아동의 보육과 교육 서비스 이용 비용의 전액 지원을 확대하면서 취업 등으로 종일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를 지원하지 않을 명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12시간 종일제의 경우 추가 비용 중 인건비와 기타 비용을 분리하여 기타 비용만을 보육료 지원단가에 반영하고, 이외 인건비 증가분은 별도의 지원체제로 처리한다. 즉, 저녁식사와 운영관리비 증가분은 보육료 지원 상태에 따라 정부와 부모가 분담하거나 정부가 모두 부담한다.

한편 인건비 증가분은 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계별로 초기에는 보육교사연장근무 수당 형태로 지원하고, 이후 정규 단시간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2) 추가 소요 예산 추정

먼저 지원단가 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추정하였다. 이는 지원단가 추가액, 추가 보육료 지원 아동 중 해당아동 비율, 보육료 지원 비율별 아동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12시간 종일제의 경우 저녁식사와 운영관리비 증가분은 제1안과 마찬가지로 보육료 지원 상태에 따라 정부와 부모가 분담한다. 지원단가 추가액, 추가 보육료 지원 아동 중 해당아동 비율, 보육료 지원 비율별 아동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이 비용은 35억 826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430억원이 된다(앞의 표 참조).

다음은 6시 이후 교사에게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를 추정하였다. 이는 두 가지 대안을 적용하였다. 첫째는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4시간짜리 단시간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이다.

첫째, 시간당 단가로 바우처 지원 방법이다. 만1세아 보육료의 시간당 단가를 산출한 후에 22일간 1.5시간 연장보육, 근로기준법 상 1.5배를 하여 산출한 비용이 64,8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 때 만1세아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12시간 종일제 아동 비율이 전체 18.4%에 불과하므로 50인 시설을 기준으로 할 때 6명 정도이므로 교사 1인당 5명을 기준으로 본 것이다. 이 경우에 소요비용은 보육아동 1,170,040명의 18.4%에 월 64,800원을 지원하면 월 137억, 연간 1643억원이 소요된다. 만약에 연장근무에 따른 50% 가중분을 제외한다면 비용은 약 2/3으로 줄어서 월 91억원, 연간 1100억원이 소요된다.

둘째, 인건비 증가분은 직접 인건비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체 보육시설 70%에 4시간 단시간 교사를 1인을 배정하면 월 215억 4200만원, 연간 2585억원이 소요된다.

〈표 V-5-5〉 종일제 대비 단축형 보육지원금 추가 1(2010)

단위: 천원

구분	1안	2안
보육 아동수(0~5세)	1,148,674명	35,500개 시설
적용아동, 시설비율	18.4%	70.0%
월 지원 단가	64,800원-	8,669,000원
월 추가 비용	13,695,870	21,542,465

#### 4) 결론 및 고려사항

제2안은 교사의 연장근무 수당이나 단시간 근무 교사 추가 배치를 전제로 단축형 보육과 12시간 종일제 보육료 조정을 통하여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단축형으로 감소되는 정부의 재정 규모는 월 51억 정도인데 비하여 12시간 종일제에는 식사비등 정부 분담으로 35억원과 교사 연장근무 수당 지급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월 137억원이므로 결과적으로 약 120억원의 비용이 더 소요된다.

교사는 단축형 아이들의 빠른 귀가로 반 운영이 약간 수월해 질 수는 있을 것이고, 연장근무 수당도 받을 수 있어서 근무환경의 개선을 기대한다. 단시간 교사 배치 시에는 정규교사들은 훨씬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근로자로서의 단시간 교사에 대한 근무조건이나 경력 반영 등에 대한 상세한 고용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재정적 운영은 개선될 소지가 있고 12시간 종일제를 선호할 수 있으나, 6시 이후 보육아동에게 저녁식사 제공이 공식화되므로 운영상 부담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부모와 공무원들은 제1안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측면을 느끼게 될 것 가능성이 높다. 일하는 엄마들은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비용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또한 일하지 않는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녀의 보육시설 특별활동에의 참여가 어렵다고 불평할 소지가 있다.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종일제 보육 대상 여부를 구분하여 종일제 보육료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된다.

## 다. 제3안: 시간제 바우처 부분 적용

제3안은 시간제 바우처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제3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다수의 전문가, 시설장, 교사, 부모들은 모든 보육시간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반대하였으나 일정 시간 이후는 바우처 방식의 도입을 어느 정도 찬성하였다. 우리나라 보육의 특성과 근로형태 특성 상 전면 시간제 바우처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3안으로 시간제 바우처 부분 적용을 검토하였다.

### 1) 이용시간 유형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정도의 귀가 기준의 8시간 종일제를 중심으로 3시간 정도 일찍 오후 3시 이전에 귀가하는 단축형까지는 모든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육시설에 있고 3시를 기준으로 귀가하여 7시 30분까지 모두 부모의 보호에 놓이도록 인도한다.

### 2) 교사 배치

#### 가) 근무시간

교사의 근무시간은 <제1안> 및 <제2안>과 동일하다. 교사대 아동 비율이 정하는 교사의 기본 인원을 정규교사로 하고, 정규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기본 근무시각은 9시부터 6시까지로 규정하며,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본다.

#### 나) 교사 탄력근무, 연장근무 수당 또는 단시간교사 배치

교사 배치는 <제1안>과 <제2안> 적용 모두 고려할 수 있다. 탄력근무를 통하여 8시간 근무를 유지하거나 교사에게 저녁 1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거나 4시간 정도의 단시간교사를 배치하는 방안 모두 대안이 된다.

#### 다)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교사대 아동 비율은 보육시설의 경우 오후 3시 이전에 귀가하는 보육유형과 기본적인 8시간형 종일제 유형의 교사대 아동 비율은 현재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오후 혼합반은 3세만 1:20을 적용한다.

### 3) 보육료 책정 및 분담

#### 가) 비용 책정

본 연구에서는 부분적으로 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모든 아동에게 단축형 보육 비용을 적용한 후에 오후 3시 이전 단축형 보육 이후의 시간을 한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단축형 이후 간식비, 저녁식사비, 시간당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산출하면 <표 V-5-6>과 같다. 여기서 인건비는 교사 인건비 시간당 비용이다.

이를 기준으로 시간단위로 귀가시 일일 추가비용을 책정하였다. 추가 비용은 두 가지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 하나는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인건비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즉,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귀가할 경우에 만2세아 및 50인 시설을 기준으로 3시에 귀가하는 아동 보육료와 비교하여 2,800원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월 22일을 기준으로 하면 61,800원이다. 인건비를 제외할 경우에는 하루 900원으로 월 19,800원이 된다. 저녁을 먹고 오후 7시경에 귀가하면 연장근무 교사 인건비 포함시 하루 9,600원, 인건비 미포함시 2,000원이다(표 V-5-7 참조).

다음으로 종일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경우는 6시 이후와 7시 30분 귀가 아동의 보육비용 차이는 대부분이 저녁식사 비용이고, 시간당 관리운영비 차이는 얼마 되지 않으므로 7시에 귀가하나 7시 30분에 귀가하나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교사의 인건비를 반영하면 비용 차이가 커진다. 여기에 적용한 인건비는 오후 추가 보육 인건비와 동일하다. 단축형 보육 이후 교사를 추가로 채용하여 보육할 경우에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이 보육료가 되어야 한다.

〈표 V-5-6〉 단축형 이후 6시까지 시간 연장시 추가 보육료 기준

단위: 천원

구분	0	1	2	3	4세 이상
20인 이하				-	-
간식비	0.6	0.8	0.8	-	-
저녁식사비	0.7	1.1	1.1	-	-
인건비(시간)	3.1	1.9	1.4	-	-
관리운영비(시간)	0.1	0.1	0.1	-	-
50인					
간식비	0.6	0.8	0.8	0.8	1.0
저녁식사비	0.7	1.1	1.1	1.1	1.4
인건비(시간당)	3.1	1.9	1.4	0.8	0.6
관리운영비(시간)	0.1	0.1	0.1	0.1	0.1
97인					
간식비	0.5	0.7	0.7	0.7	0.9
저녁식사비	0.6	0.9	0.9	0.9	1.2
인건비(시간당)	3.1	1.9	1.4	0.8	0.6
관리운영비(시간)	0.1	0.1	0.1	0.1	0.1

〈표 V-5-7〉 단축형 이후 연장시 일일 추가 보육료(인건비 포함)

단위: 천원

구분	인건비 포함					인건비 미포함				
	0	1	2	3	4세 이상	0	1	2	3	4세 이상
20인 이하										
4시	3.8	2.8	2.3	-	-	0.7	0.9	0.9	-	-
5시	7.0	4.8	3.8	-	-	0.8	1.0	1.0	-	-
6시	10.2	6.8	5.3	-	-	0.9	1.1	1.1	-	-
7시	14.1	9.9	7.9	-	-	1.7	2.3	2.3	-	-
50인										
4시	3.8	2.8	2.3	1.7	1.7	0.7	0.9	0.9	0.9	1.1
5시	7.0	4.8	3.8	2.6	2.4	0.8	1.0	1.0	1.0	1.2
6시	10.2	6.8	5.3	3.5	3.1	0.9	1.1	1.1	1.1	1.3
7시	14.1	9.9	7.9	5.5	5.2	1.7	2.3	2.3	2.3	2.8
97인										
4시	3.7	2.7	2.2	1.6	1.6	0.6	0.8	0.8	0.8	1.0
5시	6.9	4.7	3.7	2.5	2.3	0.7	0.9	0.9	0.9	1.1
6시	10.1	6.7	5.2	3.4	3	0.8	1.0	1.0	1.0	1.2
7시	13.9	9.6	7.6	5.2	4.9	1.5	2.0	2.0	2.0	2.5

## 나) 비용 부담

취업 등으로 자녀를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오후 7시 30분까지 시간단위로 달리 설정된 보육료를 지원 기준 보육료로 적용하여 소득수준별로 지원한다. 취업하지 않은 등 자녀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단축형 보육시간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축형 이외 추가 시간 보육은 취업하지 않은 부모 이용시 추가 비용은 모두 부모 부담이 된다.

한편 취업모 등은 원칙적으로 저녁 7시 30분까지 보육이 가능하며 이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가 이용시간을 선택할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정부와 부모가 그 보육료를 부담한다. 따라서 정부의 부담은 최대 교사 배치에 따라 제1안과 제2안과 동일하게 되며, 취업모 자녀 중 일찍 귀가하는 아동 발생시 약간의 예산 절감 요인이 생기겠지만, 그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 4) 결론 및 고려사항

이상과 같은 단축형 이후 시간제 바우처 방안은 단축형까지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일반아동에게 이외 시간 추가 보육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취업모 자녀도 이용시간 단위로 보육료 기준을 달리 작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과 보육료와의 관련성에 정교함을 더했다는 점이 특성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의 귀가 기준시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이는 어린이집에서 담당하여야 하므로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게 된다.

정교하게 시간단위로 보육비용을 달리하는 제도가 일본 등 외국에서는 수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수용이 가능한 지, 행정적 업무 부담 증가를 고려한 편익이 발생하는 지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 6. 보육료 지원바우처 적용 방안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라 비용 지원체계를 개편할 경우 보육전자바우처 적용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앞서 기술된 비용 지원체계 개편 형태에 따라 현행 보육바우처 적용에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점검하여 보도록 하겠다.

## 가. 제1안과 제2안의 적용

### 1) 단축형과 기본종일제, 12시간 종일제 아동의 구분

기존 종일서비스가 단축형과 기본종일제, 12시간 종일제로 변경될 경우 국비 보육료 지원단가가 상이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이들 아동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단축형 이용아동과 종일제(기본 또는 12시간) 이용아동을 구분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다.

첫째, 보육료 지원자격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부터 구분하는 방법이다.

보육료 지원자격 판정시 종일형 대상 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각 시·군·구 담당자는 이를 근거로 지원자격을 결정한다. 이 방법을 취할 경우 현행 보육료 지원자격과 비교해 2배의 자격 종류가 발생하게 되고 보육료 지원자격의 종류가 증가하게 되면 자격변경 관련업무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자격변경은 익월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자격 오책정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자격 변경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2배의 자격이 생겨날 경우 이런 사례는 더욱 잦아져 관리업무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보육료 지원자격은 현행 자격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육통합시스템에서 단축형 이용아동과 종일제(기본 또는 12시간) 이용아동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기존 자격만을 통지받고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아동을 구분하여 각각 상이한 보육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중 두 번째 방식을 바우처에 적용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 2) 서비스별 구분 적용

현재 보육통합시스템 내 바우처관리시스템에서 보육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업예산에 따라 차등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로 지원사업이 구분되어 있으며 각 사업에는 해당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차등보육료 사업에서는 종일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시간연장, 휴일보육, 방과후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차등보육료 사업을 통해 기존 종일보육 서비스를 단축형, 기본종일제, 12시간 서비스로 구분해 지원하고자 할 경우 [그림 V-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 목록에서 기존 종일보육 서비스를 삭제하고 세가지의 신규 서비스를 등록해 저장하

면 된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사업과 만5세아 무상보육료 사업 등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지원 사업별로 서비스를 변경 등록한 후에는 서비스별 단가를 입력하여야 한다. [그림 V-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별, 지원자격별로 해당 서비스의 단가를 입력하게 된다. 단축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적용되는 보육료 단가를 사업별 및 지원자격별로 입력하고 기본종일제, 12시간 종일제 아동에 대해 적용되는 보육료를 같은 방식으로 입력한다.

**서비스등록**

사업구분: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 사업년도: 2010 | 사업명: [검색]

사업명	사업약칭	구분	시작일	종료일
차등보육료	차등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2009.01.01	
두자녀이상 보육료	두자녀이상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2009.01.01	
만5세아 무상보육료	만5세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2009.01.01	
장애아 무상보육료	장애아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2009.01.01	

삭제	서비스명	지원시작월	지원종료월	상태
<input type="checkbox"/>	종일보육	2009.05	9999.12	Y
<input type="checkbox"/>	야간보육	2009.05	9999.12	Y
<input type="checkbox"/>	24시보육	2009.05	9999.12	Y
<input type="checkbox"/>	시간제	2009.05	2009.06	Y
<input type="checkbox"/>	시간연장	2009.05	9999.12	Y
<input type="checkbox"/>	휴일보육	2009.05	9999.12	Y
<input type="checkbox"/>	방과후	2009.05	9999.12	Y

[그림 V-6-1] 서비스등록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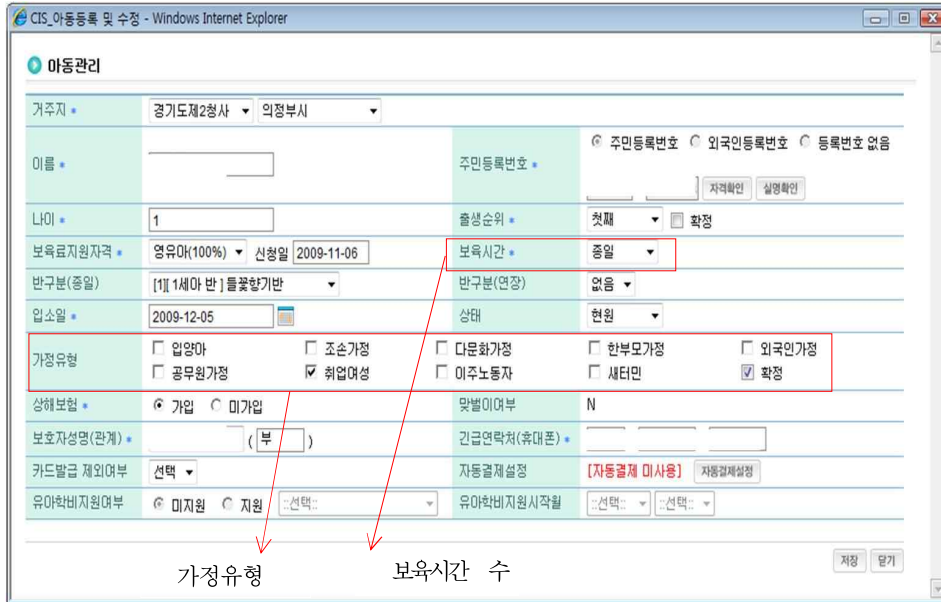
분류	기준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차등보육료	영유아(100%법정)	383,000	337,000	278,000	191,000	172,000	0	0	0	0	0	0	0	0
	영유아(100%)	383,000	337,000	278,000	191,000	172,000	0	0	0	0	0	0	0	0
	영유아(60%)	229,800	202,200	166,800	114,600	103,200	0	0	0	0	0	0	0	0
	영유아(30%)	114,900	101,100	83,400	57,300	51,600	0	0	0	0	0	0	0	0
	두자녀(60%)	229,800	202,200	166,800	114,600	103,200	0	0	0	0	0	0	0	0
	두자녀(30%)	114,900	101,100	83,400	57,300	51,600	0	0	0	0	0	0	0	0
	영유아(방과후법정)	0	0	0	0	0	0	86,000	86,000	86,000	86,000	86,000	86,000	86,000
	영유아(방과후)	0	0	0	0	0	0	86,000	86,000	86,000	86,000	86,000	86,000	86,000
두자녀이상 보육료	두자녀(60%)	153,200	134,800	111,200	76,400	68,800	0	0	0	0	0	0	0	0
	두자녀(30%)	268,100	235,900	194,600	133,700	120,400	0	0	0	0	0	0	0	0
만5세아 무상보육료	영유아(만5세아법정)	0	0	0	0	0	172,000	0	0	0	0	0	0	0
	영유아(만5세아)	0	0	0	0	0	172,000	0	0	0	0	0	0	0

[그림 V-6-2] 서비스별 단가 입력 화면

### 3) 이용 아동의 등록

기본종일제나 12시간 종일제 대상 아동이 시간연장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보육료가 지원되지만 단축형 아동은 시간연장 서비스를 이용하여도 정부보육료가 지원되지 않고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종일제 대상이 되는 아동 자체를 바우처 시스템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그림 V-6-3]의 아동관리 화면 내 가정유형을 활용할 수 있다. 기본종일제나 12시간 종일제 대상이 되는 아동의 기준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확정되면 기존 가정유형을 변경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 아동에 대해 종일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이에 대한 항목을 개발하고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표시하도록 한다. 맞벌이 가정 아동으로 표시된 경우는 보육시간 항목에서 기본종일제나 12시간 종일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시간연장 보육료도 지원받지만 그렇지 않은 아동은 단축형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고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은 받지 못한다.



[그림 V-6-3] 아동관리 변경

현재 가정유형은 각 지자체 시책보육료를 적용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으므로 국비 시간연장 보육료에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기본 종일제나 12시간 종일제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과 단축형 이용 아동을 구분하고 각각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마치게 되면 단축형으로 보육시간이 저장된 아동은 단축형 서비스 단가가 적용되어 바우처가 생성되고 종일제 이용 아동은 종일제 보육료 단가가 적용되어 바우처가 생성된다.

### 나. 제3안의 적용

제3안은 기존의 종일 서비스를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단축형으로 일괄변경하고 이후 시간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모두 시간연장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이다. 제3안의 바우처 적용은 다음과 같다.

#### 1) 서비스의 변경

서비스의 변경은 제1안 및 제2안과 동일하게 기존 종일보육 서비스를 삭제하고

단축형 서비스를 신규 등록해 저장한다.



[그림 V-6-4] 이용현황 관리

단, 현재 바우처시스템에 등록 되어있는 시간연장 서비스는 오후 7시 30분 이후부터 자정까지의 단가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시간연장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 서비스로 등록하고 보육료 지원단가도 별도로 입력하여야 한다.

오후 7시 30분 까지의 시간연장 비용과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의 시간연장 서비스 지원단가가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바우처 결제를 위한 이용현황 확정도 각각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 [그림 V-6-4]의 이용현황관리 화면의 변경이 요구된다. 현재 일반, 시간연장, 휴일보육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용현황관리가 일반, 시간연장1(오후 7시 30분까지 적용), 시간연장2(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적용), 휴일보육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 2) 이용 아동의 등록

제1안 및 제2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간연장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보육료가 지원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구분하여야 하므로 아동관리 화면 내 가정유형을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다. 바우처 적용 이전의 선결사항

기술한 바와 같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아동별로 이용서비스를 구분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몇 가지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아동관리 변경의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한다.

첫째, 어린이집 원장이 이를 구분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모의 취업여부나 조손 가정 여부 등을 확인해 종일형 이용가능 아동으로 판단하여 보육통합시스템 내 아동관리에 등록하고 관련서류는 어린이집에 비치하여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둘째, 시·군·구 담당공무원에 의해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이 역시 관련 서류를 통해 종일형 이용가능 아동으로 판단하여 보육통합시스템 내 아동관리에 등록하고 담당공무원 이외에는 이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결되어야 할 사항은 월 중 서비스 변경에 따른 보육료 산정 방식이다.

단축형을 이용하던 아동이 월 중 모의 취업으로 종일형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경우 보육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한다.

서비스 변경도 자격변경과 마찬가지로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고<sup>46)</sup> 자격 변경과 달리 서비스 변경은 월 중 가능하게 하도록 할 수도 있다.

월중 서비스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서비스별 이용일자를 근거로 일할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바우처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지 않아 시스템 변경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보육바우처는 입소 결제나 퇴소 결제를 제외하고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않고 출석일수를 3구간으로 분류한 결제 방식을 택하고 있어 근본적인 시스템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둘째, 현행 보육료 지원은 출석일수에 따른 구간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용일수가 많은 서비스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축형을 15일 이용하고 종일형을 9일 이용한 아동의 경우는 단축형 서비스로 이용현황을 확정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최종 이용한 서비스로 이용현황을 확정하게 하여 보육료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46) 예를들어 단축형을 이용하던 재원아동의 모가 7월 중 취업 증빙을 하였더라도 종일서비스는 8월부터 가능하며 7월 중 시간연장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이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택할 경우 시간연장 비용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외 종일제 혜택을 받고 있던 아동 모의 취업상태에 변동이 있더라도 부모가 고지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종일제로 등록된 아동의 6개월 혹은 1년 주기로 초기화 하여 모의 취업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 VI. 맺는 말

본 연구는 보육서비스의 시간유형을 다양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이용하는 서비스 시간에 부합되도록 수납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제공 현황을 조사해 보면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크다. 보육은 시설 운영시간과 아동의 이용시간 개념이 분리되지 않은 채 제도가 12시간 종일제로 획일화되어 있고 재정 지원 역시 이를 기준으로 한다. 장시간 보육이 저출산, 여성 취업 증진 등 모든 문제의 대안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운영자들도 편의상 획일화된 제도에 맞추어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종일 비용을 받고 단시간 보육을 할 수는 없다.

수요자들의 요구도 제도에 맞추어져 가는 경향이다. 보육아동 중 60% 정도가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고 있다. 이 지원금이 종일제 기준임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취업을 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종일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부모들이 증가한다.

아동도 불필요하게 긴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들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아동뿐 아니라 부모와 가정의 역할 차원에서 우려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용 하에서 한편에서는 오후 2~3시경에 귀가하는 아동이 있고 영아의 단시간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는 가정에서의 보육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데서 오는 현상이다.

보육교사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상 8시간 근로를 준수하여야 한다. 교대 탄력근무제로 8시간 근로를 준수하라고 하지만 여유 인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초과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8시간 근무하는 내내 아동을 돌보아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러한 근로조건은 곧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로 연결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도되는 연구이다. 먼저 기존자료 분석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보육료와 소요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용시간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보육비용을 산정하고 그 비용의 부모와 정부의 분담을 고려하여 정부 예산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복수안을

제시하였다. 보육료 지원체제개편 모형 및 비용은 세 가지 방안으로 추정하였다. 제1안은 이용시간을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교사의 근무형태는 현실을 그대로 두는 방안이다. 이 경우, 오후 6시 이후 보육을 연장보육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부분적 대안이 된다. 제2안은 1안과 기본 구조는 동일하지만 교사의 근무환경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모형이다. 한편 제3안은 공통적 보육시간 이외 시간부터는 시간제 바우처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소요 비용 추정에서 가정 문제가 되는 것이 교사의 처우이다. 근로자로서 8시간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실 오후 2~3시에 귀가하거나 5시경에 귀가하나 교사의 추가 배치가 없으면 소요 비용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2~3시에 귀가한다고 보육료가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12시간 종일제를 이용하여야 하는 아동은 교사 추가 배치에 따라 추가 비용부담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곧 예산의 증가요인이 된다.

안건바 추가 투입 없이 교사의 오전 및 저녁 당직 등 탄력근무를 전제로 단축형 보육과 12시간 종일제 보육료 조정을 통하여 개편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정 수용 가능성이 높는데, 인건비 증가 요인이 없는 경우 정부의 추가 재정 소요는 없고, 오히려 약간의 비용이 절약될 수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 요인이 없는 안은 선호할 것 같지는 않다. 이 방법은 단축형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보육시설에 따라서는 운영비 수입에 감소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의 반발이나 단축형 기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특별활동 명목으로 줄어든 비용을 보충하고 아동을 늦게까지 보육시설에 두려는 경향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단축형 아동만큼 정원 외로 시간제 보육 아동을 보육하게 하는 방안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들은 일부 아이들의 빠른 귀가로 반 운영에 다소의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늦게 귀가하는 아동이 있는 한 이외에 실질적으로 근무환경의 개선을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실상 저녁 탄력근무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일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보육료 미지원인 경우에 종일제 비용을 추가로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취업모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제도 개선의 명분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추가 비용을 모두 정부가 부담하고 취업모에게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여야 해야 한다. 한편 일하지 않는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육시설 특별활동에의 참여가 어렵다고 불평할 소지

가 있다.

아동의 경우는 가정에서 오후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낸다면 가장 좋겠으나 특별 활동을 위하여 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 공무원 입장에서는 종일제 보육 대상 여부를 구분하여 종일제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된다. 우선은 모의 취업 등 종일제 보육 자격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야간보육 이용자는 대부분이 취업모이므로 국가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이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일하는 여성에 한하여 12시간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취업 여부를 가려낼 기제가 마땅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이용시간 관련 제도적 변화는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취업여부나 종일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도 단기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어렵지만 시행될 경우 이용시간 유형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정부 지원 비용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취업모와 미취업모 등 가정 형편과 필요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고, 또한 합리적 기준 제공으로 재정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표준비용 적용 방식이 다른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통일된 기준 적용 방안의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명순 외(2009).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운영기준 합리화 방안. 보건복지가족부·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 김현숙(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박기백·김현숙·김우철·김형준(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조세연구원.
- 변용찬·임유경(2002). 표준보육단가 평가와 단가산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삼성복지재단(2000). 서울특별시 보육시설의 표준보육단가 산출 및 재정지원제도에 관한 제언.
- 서문희 외(2006).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분석. 여성가족부.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나정·최혜선(2006).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적정 분담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박수연(2008).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별 비용 차등 적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최혜선(2008). 영아보육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유희정·강정희(2002). 영유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유희정·이미화 외(2009). 2009년도 전국실태조사 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여성정책연구원
- 이성진·김지영·황영자·전숙희·이기우(1990). 한국의 탁아사업시행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이진숙·박은숙·한유미·오연주·이영환(2004). 스웨덴의 아동 안전을 위한 정책. 스칸

디나비아연구, 5, 397-416.

정영숙(1996). 보육료 책정의 문제 및 합리적 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7.

한유미·오연주·권정윤·강기숙·백석인(2005).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학지사  
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2008).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9).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June 2008(Reissue).

Australian Govern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2004). Census of Child Care Services.

Belsky, J. (1999). Quantity of nonmaternal care and boys' problem behavior/adjustment at ages 3 and 5: Exploring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Psychiatry*, 62, 1-20.

Belsky, J. (2001). Emanuel Miller lecture: Developmental risks (still) associated with early child car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 845-859.

Bjornberg, U., & Dahlgren, L. (2003). Policy: the case of Sweden. UK: York University. (<http://www.york.ac.uk/inst/spru/research/nordic/swedenpoli.pdf>)

Bradshaw, J., & Hatland, A. (2006). Social policy, employment, and family change in comparative perspective: Globalization and welfare. Edward Elgar Publishing, Inc.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2009). National Quality standard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d School Age Care.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09). Child Care Service Handbook 2009-2010.

Göteborg Kommun(2004). Bilaga 3 Resursfordelning SDV 2004. Göteborg, Sweden.

Khan, G. B. (1984). Child care programmes in Sweden for children with shift-working parent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 307-317.

Kamerman, S. B. (1991). Child care policies and programs: An international overview. *Journal of Social Issues*, 47, 179-196.

- Lowe Vandell, Belsky, J., Burchinal M., Steinberg, L., Vandergrift N., & NICHD\_ECCRN (2010). Do effects of early child care extend to age 15 years? Results from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81, 737-756.
-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2009). Top of the class: New teacher education programmes. Fact sheet on the Swedish government's bill for 2010. (<http://www.sweden.gov.se/content/1/c6/14/09/51/1748713e.pdf>)
- Ministry of Finance(2005). Local government in Sweden: Organization, activities, and finance. (<http://www.sweden.gov.se/content/1/c6/03/86/64/58543c32.pdf>)
- Nacka Kommun(2004). Nacka Kommun (Internal document). Nacka, Sweden.
- NAE(2003): Descriptive data on childcare, schools and adult education in Sweden. Skolverket.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0). Characteristics and quality of child care for toddlers and preschooler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4, 116-135.
- OECD(1999). OECD Country not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h in Sweden, Paris: OECD.
- OECD(2002).
- Pestoff, V. & Strandbrink, P. (2002). The Politics of Swedish Child Care. Final version of National report.
- Report on Government Service(2010).
- SCB(Statistiska centralbyran) (2009). Yearbook of Educational statistics 2010. Official Statistic of Sweden 2009.
- Skolverket(2003). Uppföljning av reformen maxtaxa, allman förskola m.m (<http://www.skolverket.se>).
- Skolverket(2004/2009). An overview of the Swedish education system. Stockholm, Sweden: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http://www.skolverket.se/sb/d/2649>).
- Skolverket(2005).
- Sverigies officiella statistik(2005/2006). Official statistics for child care, schools, and adult education. Stockholm, Sweden: Swedish Institute.

Swedish Institute(2004).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Fact sheets on Sweden). Stockholm, Sweden: Swedish Institute.

Zigler, E. F., & Styfco, S. (1999). Head Start and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The changing course of social science and social policy. In E. F. Zigler, S. L. Kagan, N. W. Hall (Eds.), *Children, Families, and Government: Preparing for the Twenty first Century* (pp. 132-15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부 록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 보육시설 운영 및 이용시간에 대한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지원체계 개편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수행의 기초 작업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운영 및 이용시간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오니,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5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 질문지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서문희 연구위원 02-398-7711, suhnh@kicce.re.kr  
 최윤경 부연구위원 02-398-7706, ykchoi@kicce.re.kr  
 최혜선 연구원 02-398-7705, seestem@kicce.re.kr

※ 귀하의 간략한 인적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이름	
성별	남 ( )      여 ( )
소속기관	
직위	

※ 각 질문에 대해 해당하는 응답에 √표해 주십시오.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운영시간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원칙으로 하고, 운영시간과 구분된 이용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운영시간과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동일시되면서 정부가 책정한 보육료도 12시간 보육비용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료는 8시간 이용과 교사의 8시간 근무를 전제로 책정되어 있어 시설과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아동도 부모의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필요 이상으로 오래 보육시설에 남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육시설 운영 및 이용시간과 보육료 지원기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책방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I. 보육시설 운영시간**

1. 영유아보육법으로 정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보육시설 운영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1-1 질문으로)

※ 응답하신 이유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1-1. 아니라고 응답하신 경우, **적절한 운영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전 \_\_\_ 시 ~ 오후 \_\_\_ 시 / 총 \_\_\_ 시간

**II. 종일제 보육 이용 기준시간**

2. 실제 다양한 보육시설 이용시간, 교사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종일제 이용시간 기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전 \_\_\_ 시 ~ 오후 \_\_\_ 시 / 총 \_\_\_ 시간

2-1.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

※ 응답하신 이유와 기타 의견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6. 현재 오후 9시 30분을 기준으로 야간연장보육을 인정합니다. 야간연장보육의 기준으로 이 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7시반을 기준으로 하면 2시간 연장입니다.)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

※ 응답하신 이유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III. 단축형 보육 이용 기준시간**

7.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종일제를 기본으로 하고, 종일제보다 짧은 시간동안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단축형(일명 반일제)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

※ 응답하신 이유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8. 보육시설을 짧게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을 위하여 단축형을 둔다면, 단축형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전 \_\_\_ 시 ~ 오후 \_\_\_ 시 / 총 \_\_\_ 시간

9. 8번에 작성하신 단축형 하원시간은 일과활동을 고려했을 때 어떤 활동을 한 후까지(혹은 하기 전까지)를 의미하니까?

(예. 오후 간식전, 오후간식후, 낮잠 자기 전, 낮잠 잔 후 등)

10. 단축형을 둘 경우, 표준보육과정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단축형은 표준보육과정 중심의 프로그램을, 단축형 이후 종일제 오후 프로그램은 특별 활동으로 운영한다.

\_\_\_ ② 단축형도 표준보육과정 중심의 프로그램과 특별활동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단축형 이후 종일제 오후는 별도의 표준보육과정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단축형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심화/보충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_\_\_ ③ 기타( )

※ 응답하신 이유나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11. 단축형을 둘 경우, 반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현재와 같이 연령에 따라 종일제 이용아와 단축형 이용아를 함께 한 반에 구성하여, 단축형 이용아가 하원해도 담당 교사는 해당 반을 계속 담당한다.
- \_\_\_ ② 현재와 같이 연령에 따라 종일제 이용아와 단축형 이용아를 함께 한 반에 구성한 후, 단축형 이용아가 하원하면 이후 시간은 연령혼합반을 구성한다.
- \_\_\_ ③ 종일제반과 단축형반을 따로 구성한다.
- \_\_\_ ④ 기타

※ 응답하신 이유나 기타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IV. 보육료 지원 시간 차등 적용: 모 취업 등 보육 요구도 차이 반영

12. 우리나라는 종일제 이용을 기준으로 한 보육료 지원체계로, 지원 기준은 소득수준에 의합니다. 반면에 스웨덴과 호주 등에서는 보육료 지원 기준이 시간 단위이며,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 사례에서와 같이 **모 취업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기준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웨덴 사례: 취업모 등 주당 40시간, 미취업모 주당 15시간 등)

- \_\_\_ 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_\_\_ ②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응답하신 이유나 기타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13. 아래의 문항은 종일제 기본시간보다 짧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단축형을 둘 경우, 가능한 보육료 지원 방법들**입니다. 각 지원방법들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 표해 주시고 그 이유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보통임	조금 반대	매우 반대	응답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1) 영아, 유아 모두 미취업모는 단축형 지원, 취업모는 종일제 지원						
2) 영아만 취업모/미취업모 구분하여 지원하고, 유아는 모두 종일제 지원						

14. 13번에 응답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단축형을 둘 경우 누구를 우선 대상으로 어떻게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신 이유나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V. 시간제 바우처 도입

15. 월 또는 주 단위로 정부에서 비용지원이 가능한 이용시간을 바우처로 주고 그 시간 범위까지를 지원하는 **시간제 바우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보육료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 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_\_\_ ②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응답하신 이유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16. (15번과 달리) 종일제 기본이용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이용시간인 **종일제보다 더 이른 혹은 늦은 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추가 이용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제 바우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 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_\_\_ ②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응답하신 이유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VI. 교사 배치 등

17. 현재는 보육시설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을 기본으로 운영·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근무시간도 그 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당직교사를 두어 교대근무를 통해 12시간 운영에 맞추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운영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등을 고려하여 귀하가 생각하실 때 **보육교사의 기본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전 \_\_\_\_\_ 시 ~ 오후 \_\_\_\_\_ 시 / 총 \_\_\_\_\_ 시간

18. 교사가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할 때, 교사가 실제로 **아동을 돌보며 보육하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시간

19. 종일제 보다 짧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본인 종일제와 함께 **단축형을 들 경우, 교사 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보육시설 내에서 단축형 근무교사와 종일제 근무교사를 교대근무식으로 배치한다.

\_\_\_ ② 단축형 시간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는 추가로 교사를 배치한다.

\_\_\_ ③ 기타

※ 응답하신 이유나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20. 12시간 보육시설 운영 및 야간보육의 경우,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4~6시간 정도의 단시간 근무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 ① 찬성                      \_\_\_ ② 반대                      \_\_\_ ③ 기타

※ 응답하신 이유나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21. 종일제와 함께 단축형을 둘 경우, 교사대 아동 비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단축형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있더라도 종일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단축형 이용 영유아와 종일제 이용 영유아를 합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적용한다.  
 \_\_\_ ② 단축형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일찍 하원하므로, 단축형 이용 영유아수를 고려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좀더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_\_\_ ③ 기타

※ 응답하신 이유나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VII. 종합적 의견

22. 종일제를 기본으로 하고 단축형을 둘 경우, 재정, 교사배치와 반 구성, 전반적 관리, 표준보육과정 운영, 특별활동 등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문제점) 및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장점>

<단점 및 과제>

23. 종일제를 기본으로 하고 단축형을 둘 경우, 보육시설 **이용**하는 입장에서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문제점) 및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장점>

<단점 및 과제>



연구보고

---

---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지원체제 개편 방안**

---

**발행일** 2010년 8월  
**발행처**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전화: 129                      팩스: 02)2023-8921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062-01